

파주출판도시 관리방안 연구

파주출판도시 관리방안 연구진

총괄연구원	이기웅(사단법인 국제문화도시교류협회 이사장)
책임연구원	이규동(문화기획가)
연구원	김영준(건축가, 파주출판도시 2단계 건축 코디네이터) 정진백(아시아문화커뮤니티 대표, 사단법인 국제문화도시교류협회 이사) 유도열(전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사업협동조합 상무이사) 정세현(부원비엠에스 대표) 최훈(연장통 대표)
자문위원	이상(파주북소리 사무총장) 류승한(국토연구원 연구위원) 정동채(전 문화부장관, 사단법인 국제문화도시교류협회 이사) 이강백(선교장 관장, 사단법인 국제문화도시교류협회 이사) 이환구(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사업협동조합 상무이사) 전기석(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사업협동조합 기획실장) 김춘식(사단법인 출판도시입주기업협의회 사무국장) 임형석(사단법인 출판도시입주기업협의회 차장)

과주출판도시 관리방안 연구

이천십사년 십이월 삼십일일

문화체육관광부

사단법인 출판도시입주기업협의회

제출문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귀하

본 보고서를 '출판도시 관리방안 연구' 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14년 12월 31일

사단법인 출판도시입주기업협의회

사단법인 국제문화도시교류협회

차례

요약 _ 009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_ 021

1. 과제 제기 배경 _ 021
2. 연구 필요성과 목적 _ 022

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_ 023

1. 연구 내용 _ 023
2. 연구 방법 _ 023

제2장, 단지 현황 및 문화적 성과

제1절, 조성 목적과 현황 _ 027

제2절 단지 개발 주요 과정과 입주기업협의회 운영 실적 _ 030

1. 연도별 개발 과정과 출판도시 운영 주요 사항 _ 030
2. 입주기업협의회 연도별 주요 사업 실적 _ 033
3. 2015년도 주요 사업 계획(입주기업협의회, 조합) _ 038

제3절, 파주출판도시의 독창적 성과 _ 040

1. 책 문화와 건축 예술이 만난 문화도시 _ 040
2. 문화공동체로서의 자율적 계약으로 만드는 도시 _ 040
3. 출판 가치사슬의 집적화 실현 _ 042
4. 출판도시의 발전 방향과 기대효과 _ 043

제3장, 단지 관리체계 현황과 구조적 문제점

제1절, 파주출판도시 관리의 문제점과 한계성 _ 047

1. 개요 _ 047
2. 관리체계상의 문제 _ 048
3. 관리체계 개선 방향 _ 049

제2절, 현 관리체계와 관리권한 _ 052

1. 국가산업단지의 관리체계 _ 052
2. 관리권한의 위탁, 위임 _ 056
3. 관리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할 내용 _ 057

제3절, 입주기업체 전환 절차 _ 058

1. 파주출판도시의 관리체계 _ 058
2. 입주기업체협의회(관리공단 포함) 설립절차 _ 058

제4장, 결론—창조적 산업단지를 위한 관리체계 방안

제1절, 파주출판도시의 비전과 발전방향 _ 063

1. 산업단지 조성 개념의 변화 _ 063
2. 산업단지 관리 정책의 변화 _ 063
3. 파주출판도시의 비전과 발전방향 _ 064

제2절, 관리체계 전환 요건과 당위성 _ 068

1. 파주출판도시 관리기관 지정 배경 _ 068
2. 관리기관 전환의 전제와 요건 _ 068
3. 현 관리기관의 한계와 관리업무의 변화 _ 070
4. 입주기업체협의회 전환의 당위성 _ 073

제3절, 관리기관 전환 방안과 운영 계획 _ 076

1. 법적근거와 추진 방안 _ 076
2. 입주기업체협의회 관리기관 전환에 필요한 조치사항 _ 076
3. 입주기업체협의회 관리기관 전환과 대안 _ 076
4. 전환 시기 검토 _ 077
5. 관리기관 전환시 운영(설립) 계획 _ 077

제4절, 입주기업체협의회 가입 성향 분석 __ 079

1. 입주기업체협의회 가입 대상 기업 현황 __ 079

2. 입주기업체 가입 동의 업체수 분석 __ 080

3. 임대 입주기업 현황 __ 080

4. 임대입주자 분류 기준 문제 검토 __ 081

부록

산업단지 관리지침 __ 085

과주출판문화정보국가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2014. 11월 현재) __ 095

출판도시입주기업체협의회 결성 및 관리기관화를 위한 방안 __ 107

관리체계 결정을 위한 문체부 1998년도 검토 의견(당시) __ 112

위대한 계약서 __ 114

선(善)한 계약서 __ 116

과주출판도시 건축심의위원회 운영 자료 __ 118

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과주출판도시는 운영 철학 및 관리 체계의 한계와 구조적 여건에 의해 창조산업단지, 문화산업단지로서 기능적 활성화가 지체되고 있으며, 지속가능한 문화도시로 발전해가는 전략과 창의적 관리 철학이 요청되고 있음.

본 연구는 과주출판도시가 자생력을 갖춘 문화산업도시로 발전해갈 수 있는 관리와 운영전략을 중심으로, 현행 법규와 산업진흥 정책의 테두리 안에서 필요한 통제와 규제를 하되, 행정의 재량권을 획일적으로 남용하지 않고, 창조적 문화산업단지 완성을 위한 합목적적 발전적 통제, 요령있는 운영과 선도(先導)적인규제를 할 수 있는 관리 방향과 방안을 도출하는 데에 있다.

2. 연구 내용 및 방법

과주출판도시의 조성 목적과 배경, 사업의 성과를 분석하고, 아울러 과주출판도시가 안고 있는 구조적 문제점이 무엇인지 현황 분석을 토대로 과주출판도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관리체계 개선 방안 제안을 위한 과주출판도시에 적용되고 있는 산업단지 관련 법률과 제도를 검토해 과주출판도시의 단지 활성화를 위한 정책대안을 마련하는 데 있다.

본 연구는 2013년에 발간한 ‘창조경제의 롤 모델 : 과주출판도시 활성화전략 조사 연구’의 후속 단계 연구 차원에서 출판도시를 만들고 운영해 온 기관이 중심이 되어 수행하는 것으로서 출판도시의 현실을 가장 잘 아는 주체 및 이해관계자에 의한 실제적 연구이다. 한편 연구 결과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실천력을 갖도록 하기 위해 다년간 산업단지 관련 연구를 수행해 온 관련기관 전문가 의견 수렴과 관련 법규와 연구 논문 조사, 설문 및 면담, 등으로 이루어졌다.

현재 입주기업체 및 관련 단체가 겪고 있다고 생각하는 불이익과 피해, 불만에 대한 사례와 원인을 조사하고, 또한 역지사지(易地思之)의 차원에서 관리기관은 위 사례와 불만에 대해 어떤 입장이며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입주기업체가 이해하고 수용해야할 사안은 무엇인지를 파악하여 객관적인 상황을 근거로 관리방안 연구 결론에 밑받침이 되도록 함.

제2장, 출판도시 현황 및 성과

1. 조성 목적과 현황

‘책을 위한 도시’를 만들겠다는 발상 아래 출판인들이 조합을 결성한 지 20여 년이 지난 오늘에 이르기까지 파주출판도시는 한국 출판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새로운 패러다임의 도시 건설이라는 측면에서 뚜렷한 궤적을 그려왔다. 단순히 출판사들이 물리적으로 집적된 산업클러스터가 아니라 출판과 건축, 도시와 문화에 대한 의미있는 활동과 생산해 내는 특수한 문화지구로, 이상적인 계획도시의 모델로 자리매김해 온 것이다. 그동안 경제성장 및 도시화를 견인해온 정부주도형 도시 개발 드라이브와 부동산 개발논리에 함몰되지 않으면서 중소 규모의 출판사 사이의 결속력을 토대로 민간 조합을 구성하여 도시건설 기획단계에서부터 운영방안에 이르기까지 스스로 주체가 되어 청사진을 그려 나갔다.

2. 파주출판도시의 성과

가. 책 문화와 건축 예술이 만난 문화도시

파주출판도시를 기존의 산업단지와 가장 뚜렷하게 구분시키는 차이점은 선구적인 도시 마스터플랜과 건축설계지침, 실험적 성향의 건축가들을 대거 영입시킨 점이었다. 기존의 도시 설계 문법과는 전혀 다른 접근의 입체적이고 혁신적인 실험이었기에, 오늘날 출판도시가 국내외적으로 높은 관심과 평가를 받을 수 있었다.

파주출판도시의 공간과 건축물들은 독창적인 스토리와 설계로 지어져 한국의 도시개발 및 건축문화사에 신기원을 열었으며, 입주 기획자들이 주도적으로 선도하여 단지 개발을 수행한 유일한 사례이면서 도시적, 산업적 측면에서 세계적 명소로 평가받고 있다. 베니스 비엔날레를 비롯한 세계 유수의 전시공간에서 출판도시의 도시 개발 사례와 건축물들이 전시되었을 뿐 아니라, 국내는 물론이고 해외에서까지 출판도시를 찾는 건축 투어의 물결이 끊이지 않고 있다. 또한 말레이시아의 쿠알라룸푸르 북시티는 파주출판도시를 벤치마킹해 건설되고 있으며, 중국과 대만 등지에서도 파주출판도시 같은 공간을 조성하려는 계획이 시도되고 있다. 파주출판도시가 아시아 출판시장에서 우리 출판문화의 위상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음을 여실히 증명해주는 사례다.

파주출판도시는 문화공동체를 지향하고 있을 뿐 아니라 방문자들에게 다양한 교육 및 문화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그리하여 ‘책’을 통해 독자와 젊은이들이 미래를 향한 꿈을 키우도록 지혜를 주는 교육도시의 기능을 아울러 수행하고 있다. 출판도시 방문자들은 파주출판도시를 ‘책을 중심으로 한 문화공간’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압도적으로 높았다.

나. 문화공동체로서의 자율적 계약으로 만드는 도시

과주출판도시의 가치는 첫째로 ‘공동성의 실현’이다. 공동성이란 개별적인 욕망이 고립된 개체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통합된 전체로 이행하는 것이며 그 과정 속에서 개인과 전체가 비로소 유기적이고 조화로운 힘을 얻어내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공동성이란 단순히 그 의미를 해석하는 데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실천될 때만이 비로소 그 뜻이 살아난다.

과주출판도시를 조성하면서 입주기업들이 건축물을 설계하고 시공하기 전에 과주출판도시의 산업적 조성 목적을 이루는 것은 물론 단지 전체의 건축물들이 문화도시의 면모를 갖추기 위해 자율적으로 입주기업간의 약속이자 건축 설계자들과의 약속을 만들고 이를 대내외적으로 공시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따라 수행한 것은 높이 평가되어야 할 것이다. ‘위대한 계약서’ 일부를 인용한다.

과주출판도시의 건축물들은 이와 같이 개발계획에서부터 대상부지 선정, 기반시설, 건축설계지침, 간판 규정, 관리운영지침은 물론이고 입주 후의 운영에 이르기까지 미래의 입주자들이 능동적으로 나서 공동체로서의 자율적 약속과 계약에 따라 도시 개발을 수행한 드문 사례이자, 국내외의 대표 건축가들을 참여시켜 현대건축의 세계적 명소로 만들었다.

다. 출판 가치사슬의 집적화 실현

1단계가 완성된 현재 과주출판도시에는 출판사, 인쇄소, 제본소, 저작권 에이전시, 출판유통회사, 디자인 회사 등 각종 출판관련 회사 3백여 업체가 입주하여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출판산업 클러스터를 형성하고 있으며, 협업과 경쟁을 통해 활발한 지식생산을 이루어내고 있다.

창조경제의 핵심인 지식과 정보를 창출하는 중심지로서 현재 고용인원 6천 명, 연매출 1조7천억 원을 달성하고 있으며(2단계 완공시 고용인원 1만1천 명, 연매출 3조3천억 원 예상), 연관산업의 집적화를 통해 1단계에서 절감하고 있는 연간 생산 및 물류 비용만도 2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평가된다.

대부분의 산업단지가 국가정책과 주도에 의해 하향식으로 건설되는데 반해, 출판인들의 자발적이고 창의적인 협동화 사업으로 순수 민간 차원에서 건설되었음에도 그 성과와 국가경제에 대한 기여가 남다른 것을 알 수 있다.

라. 출판도시의 발전 방향과 기대효과

과주출판도시는 출판산업의 구조적 기능적 특성을 담아내기 위해 기획 초기부터 ‘박물관 도시’라는 개념을 도입해 책을 만드는 행위의 기능적 과정과 구성 요소를 박물관 프로그램으로 설정하였으며, 궁극적으로 책의 소비자인 독자들이 와서 보고 즐길 수 있는 공간을 지향하고 있다.

출판산업단지는 뜻 그대로 단지이기도 하지만, 울타리를 두르고 출입을 통제하는 보통의 단지와는 다른 환경적 국면을 보유한다. 특히 일산 신도시와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할 뿐 아니라, 활성화를 위해서 수도권 일대의 시민 및 전국의 방문자들을 상시 유치하는 개방적 환경이 되고 있으며, 풍성한 조경과 다양한

행사 개최 등을 통하여 옥내 공간 뿐 아니라 옥외 공간의 쾌적성이 최대한 보장되는 일종의 “문화공원”(culture park)라는 형식을 보유하고 있다.

이상과 같이 파주출판도시가 지향하고 성취해 온 성과는 앞으로 국내 여타 산업단지가 지향해야할 발전 방향의 모델이 되는 한편, 출판도시가 지속성장을 위해 추구해야할 새로운 가치와 역할을 보여 주고 있다.

즉 출판도시는 ‘창조산업도시’, ‘건축문화도시’, ‘생태환경도시’, ‘문화축제도시’, ‘인문교육도시’, ‘미래창의도시’를 지향함으로써 창조산업과 문화예술, 일상이 문화와 조화를 이루는 자족자급 도시를 지향하고 실현할 수 있는 가능성과 기대를 보여주고 있다.

제3장, 단지 관리체계 현황과 구조적 문제점

1. 출판도시 관리의 문제점과 한계성

가. 개요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은 시대와 사회의 변화에 대응하며 보완되고, 입주기업의 발전적 의견이 반영되고, 불필요한 규제가 있다면 수정되고 철폐되어야 하며 일부 입주기업의 이기적 악용이 있다면 이를 유효성있게 제어하고 방지할 수 있는 제도가 출판도시의 특성에 맞게 보강이 되어, 단지 발전의 원동력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 대부분 입주기업들의 의견이자 공통적 정서이다.

파주출판도시 관리기본계획은 단지조성과 집적화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국가 전체 산업단지 관리의 틀을 그대로 원용한 것이다. 1단계 단지조성이 완성되고 2단계 단지의 분양이 완료되어 건축공사가 진척되며 2015년에는 완성 단계에 이르게 되는 현 시점에서,이제는 출판도시 조성의 강력한 목표였던 문화산업의 집적거점 및 문화중심지 형성을 위해 관리기본계획에서 부터 관리기관 주체까지 혁신적인 변화가 필요한 시점인 것이다.

나. 관리체계상의 문제

파주출판도시의 중앙정부의 문화체육관광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및 국토해양부와 연계되어 있으며, 우리나라의 대표적 문화산업 집적지라는 점에서 경기도와 파주시 또한 그 발전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또한 파주출판도시의 그 사업의 추진이 출판인들이 구성한 협동화조합에 의해 시작되었다는 점에서 다른 국가산업단지와의 다른 특성을 지니고 있으며, 출판도시 발전에 대한 입주기업의 관심도가 높은 지역이다.

근본적인 문제점은 문화산업단지를 기존 제조업 중심의 산업단지와 동일한 기준으로 관리하고 있어 문

화산업이 갖는 변화성, 다양성, 유연성 등을 반영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한국산업단지공단은 제조업 중심의 국가산업단지에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관리체계를 유지하고 있어 파주출판산업단지의 특수성을 감안한 관리업무를 수행하기에는 부적절한 측면이 있다. 특히, 입주기업협의회는 법적인 권한의 부족으로 산업단지 운영에 있어 입주업체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다. 관리체계 개선 방향

파주출판도시가 단일의 산업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제도 개편을 통해 관련지원기관이나 산업진흥기관을 관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가령 환경부에서 개발하는 재활용단지의 경우 개발절차는 「산업입지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정한 국가·일반산업단지 개발기준을 따르나 관리권은 산업단지를 조성한 자가 가지며, 환경부 장관이 조성한 단지의 경우 지자체나 한국환경공단 등에 관리를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파주출판도시의 경우 출판산업뿐만 아니라 영상산업 등 다수의 산업이 함께 입주하고 있으며, 또한 현재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관리권을 지닌 국가산업단지이기 때문에 관리기관의 변경이나 기업수요에 부합하는 관리기능의 수행을 위해서는 부처간 협의를 통한 제도개편이 필요하다. 따라서 관리기관의 개편이나 기능재편에 대해서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2. 현 관리체계와 관리권한

가. 국가산업단지의 관리체계

국가산업단지의 관리 체계는 다음과 같이 3단계 체계로 운영되고 있다.

- 지정권자 : 국토해양부장관-단지개발 계획 수립 및 실시권
- 관리권자 :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위탁받은 자-산업단지 관리권
- 관리기관 : 한국산업단지공단, 입주기업체협의회-산업단지 관리업무

나. 관리권한의 위탁, 위임

문화체육관광부 관리권한 위탁과 함께, 산업단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한국산업단지공단을 관리기관으로 지정하여 관리업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의견에 산업통상자원부가 동의하는 절차에 따라 관리기관은 한국산업단지공단으로 위탁되었다. 관리권한 위탁에 관한 산업집적법의 근거 조항은 다음과 같다.

- 산업집적법 제51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이 법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관리기관 또는 공단에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동법 시행령 제59조(권한의 위임·위탁)

③ 법 제31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4항 또는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산업단지에 대한 법 제2조제15호에 따른 관리업무를 공단에 위탁한다.

④ 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에 따라 지정된 국가산업단지에 대하여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로서 그가 직접 관리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국가산업단지에 대한 관리권한을 그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3. 현 관리체계와 입주기업체 전환 절차

가. 파주출판도시의 관리체계

파주출판도시의 관리권은 지난 1998년 7월15일에 산업통상부장관이 문화관광체육부장관에게 그 관리권한을 위탁함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관리권자가 되었다. 그러나 단서 조항으로 산업단지 관리에 기본 골격이 되는 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시에는 산업통상자원부와 사전 협의하여야 하고, 이와 관련된 고시 권한은 위탁의 범위에서 제외하였다.

-관리에 관한 고시권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관리권자 : 문화체육관광부 단, 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시 산업통상자원부와 사전 협의하여야 함

-관리기관 : 한국산업단지공단(서울지역본부 파주시사)

나. 입주기업체협의회(관리공단 포함) 설립절차

-산업단지관리업무를 위탁받기 위하여 입주기업체로 구성된 입주기업체협의회를 설립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립요건을 갖추어 관리권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관리권자는 입주기업체협의회 설립인가를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산업단지의 관리업무를 위탁하거나 관리기관을 입주기업체협의회로 변경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입주기업체협의회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세부 사항은 본문 참조

제4장, 결론-창조적 산업단지를 위한 관리체계 방안

1. 관리기관 전환의 전제와 요건

-현 입주기업협의회 및 관련 조직(조합)의 관리업무 역량 보유 여부 확인

- 법적 공적 수탁업무를 담당할 투명성과 도덕성 확보 여부 검증
- 단지 조성 목적과 기능을 저해, 훼손할 경우의 사전사후 통제 장치 구축
- 창조산업단지로서 국가문화정책을 수용하고, 중장기 마스터플랜과 미션을 수행할 역동성과 비전 보유
- 지속성장 가능한 단지로 관리, 운영할 입주기업체의 공동체 의식 보유

2. 입주기업체협의회 관리기관 전환의 당위성

1) 사업 완성 단계에서 관리기관 전환 시기성(時機性) 도래
2006년 1단계 완성에 이어 2단계 사업도 완성 단계에 이르면

2) 현 관리체계의 한계성(限界性)을 극복할 민간 주도형 관리기관 전환
관리와 행정 중심의 경직된 체제로, 창조적 문화산업단지 완성에 저해(沮害)

3) 자율적 관리 능력, 인력과 노하우 축적으로 성숙성(成熟性)
1991년 설립한 1,2단계 사업협동조합의 단지 조성 실적 및 2003년에 설립한 출판도시문화재단의 활동, 2007년에 설립한 입주기업체협의회의 공동체적 활동 등 관련 법규 및 국가정책 이해 수용과 운영, 사후관리 등에 노하우 축적 및 전문인력 보유 등 단지 공동체로서 자율성이 형성되어 있음.

4) 지속성장 미래 지향성(志向性) :
변화하는 사회 구조에 대응하고 최초 단지 조성 목적을 실현할 수 있는 사업 발의자 주도형의 지속성장이 가능한 운영이 요청되고 있음.

협동화사업으로 단지 개발과 조성을 발의한 조직이, 조성, 분양 등 법적 통제와 지원이 필요했고 법적 조직체의 관리가 불가피했던 단계에서 진척되어 이제 완성 시점에서는 위에서 말한 관리업무체제에서 변화하여 운영 체제로 전환되어야 하는 단계에 이르렀으므로 사업 발의자가 최초 개발 목적을 더 성숙시키고 발전시킬 당연한 권리와 의무를 가져야 하는 것이다.

3. 입주기업체협의회 관리기관 전환과 대안

(제안) '과주출판도시 입주기업체협의회' 설립 인가
산업집적법 제51조 및 동법 시행령 제59조 3항과 4항에 의거하여 관리권자가 관리기관을 현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법 제30조2항 및 법 제31조 2항에 따라 인가할 과주출판도시 입주기업체협의회(현 입주기업체협의회 정관 변경 인가)에 관리권한을 위임하여 관리기관으로 지정하고자 함을 요청. 단, 입주기업체협의회 설립 동의/가입 90% 이상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대안)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문화산업단지관리공단' 설립

문화산업진흥법에 파주출판도시를 문화산업단지로 규정하고, 문화관광체육부장관이 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권한을 산업집적법 제51조 및 동법 시행령 제59조 3항과 4항에 의거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위임받는 것으로 규정하여 문화산업단지관리공단 설립. 단, 협의회와의 차이점은 입주기업 90%이상 가입 조건이 없으나 관련 법률에 설치 근거 규정이 필요함.

4. 전환 시기 검토

입주기업체들의 공동체 의식을 확고히 하고 효율적인 도시관리와 공공시설 및 지원시설 유치 등 단지관리계획을 목표대로 수행하려면 빠를수록 바람직하며(늦어질 경우 조합 협동화 의식 해이 및 자사 이해관계 위주로 참여하려는 경향이 우려됨), 특히 2단계 완성 이전에 법적 관리기관으로 전환되어야 결속력 이탈 등을 방지할 수 있으므로 2015년말 이내에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함

5. 관리기관 전환시 재정자립계획 계획

가. 문화체육관광부가 관리권자로서 국가산업단지 관리와 발전 운영을 위한 국가 예산 지원 및 문화창조산업 단지 지원 예산 확보

나. 입주기업체협의회의 합병할 예정인 조합 자산 운용(임대 사업등)등 수익 사업과 입주기업협의회 예산 통합

다. 단지시설관리공사 설립하여 수익자부담 원칙하에 시설 관리 전담.

6. 관리기관 전환시 조직, 인력 계획

현 입주기업협의회와 협동조합의 조직과 업무를 통합하여 입주기업체 업무 별로 재 구성함을 원칙으로, 추후 별도의 조직별 직무 분석과 경영성과 평가를 통해 적합한 조직 계획을 수립함.

- 회장 : 관리권자의 승인 사항(공적 업무 지휘에 적합한 인사/특별회원 영입)
- 이사회 : 관련 전문가 다수를 사외이사로 보강
- 감사 : 1인은 외부 관련 전문가 영입
- 출판도시성장위원회 : 정책 자문과 도시 마스터플랜 수립 등(국토개발, 산업집적화, 문화전략, 도시계획, 건축, 문화사업 등 관련 전문가 10인 내외 구성)
- 업무 조직 : 3개 본부 및 실무 팀제 구성

7. 입주기업체협의회 가입 성향 분석

가. 입주기업체협의회 가입 대상 기업 현황

〈1단계 현황〉

- 입주기업 총계 : 138개사 (자가입주기업 131개사, 임대입주기업 7개사)
- 입주기업협의회 가입 현황 : 122개사(88.4%)가입, 미가입 : 16개사

〈2단계 현황〉

- 입주기업 총계 : 107개사 입주계약 (2014.11월말 현재)
- 입주기업협의회 가입 계획 : 현재 협동 조합원 자격이며 적정 시점에 총회 의결로 입주기업협의회에 전사 가입 예정

가입 근거 : 2단계 협동화사업 추진 이행 계약서 제17조(기타사항) 2항 “을”(협동화 사업자 조합원)은 출판도시의 성공적인 건설을 위해 조합 총회 및 이사회 의 결정 사항을 준수한다.

나. 입주기업체 가입 동의 업체수 분석

- 동의/가입 대상기준 기업 총수 : 245개사(1단계 138개사 + 2단계 107개사)
- 입주기업체 설립 요건 동의 최소 업체수 : 221개사 이상(245개사 x 90%)
- 가입 동의 입주기업 산출(예상) : 229개사 가능(1단계 122개사 + 2단계 107개사)

현 상태에서 2단계 입주기업의 경우 조합 총회나 이사회 결의에 의해 전 입주기업의 동의를 구할 수 있으며, 1단계는 이미 입주기업체협의회 설립을 전제로 가입하였던 입주업체이므로 입주기업 총 245개사 중 229개 사의 동의를 얻어 전체 대상 기업의 90% 이상(93.5%)의 법적 요건을 갖출 수 있으므로, 2단계 입주기업 조합 총회 결의를 거치면, 별도의 동의 절차를 구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1. 과제 제기 배경
2. 연구 필요성과 목적

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1. 연구 내용
2. 연구 방법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1. 과제 제기 배경

과주출판도시의 공식 명칭은 「과주출판문화정보국가산업단지」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해 지정·개발되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해 관리되는 법률상의 국가산업단지이다.

과주출판도시는 1997년 3월 31일 문화체육관광부의 요청에 따라 건설교통부에 의해 국가산업단지로 지정되었으며, 같은 날 산업단지 개발기본계획이 확정되었다. 이후 1998년 7월 산업자원부는 문화체육관광부를 관리기본계획의 변경시 사전 협의와 고시권을 제외한다는 조건으로 관리권자로 위탁하였고, 1998년 8월 26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지정에 의해 산업단지 관리업무가 한국산업단지공단에 위탁, 지정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과주출판도시는 어느 국가산업단지와 다르게 출판인들과 인쇄 기업들이 중심이 되어 사업협동조합을 조직, 최초 사업 발의에서 단지 개발과 조성, 분양과 입주에 이르기 까지 민간 주도의 사업공동체가 추진해 온 산업단지로서 세계적으로도 유일하며 국내에서도 가장 성공적인 산업단지로 평가받고 있다. 이 같은 성과는 사업 발의 당시에 조합이 밝힌 다음과 같은 메시지에서 출발하고 있다.

“우리는 지혜로운 선인(先人)들의 공동체 문화를 오늘에 되살리고, 그 위에 책이라는 매체로 새롭고 혁신적인 문화를 창출하기 위한 복시티라는 문화공동체를 소망했습니다. 오랜 세월 잊혀 왔던 향약(鄕約)의 정신과 원리를, 우리의 흐트러진 정신과 육체 속에 희미하게 남아있는 유전자를 찾아내어 복원하는 심정으로 이 도시에 구현하고자 합니다“ -과주책마을 이야기(2008.5)

그러나 2007년 1단계 완성에 이어 2단계도 분양이 끝나 입주가 시작되고 2015년 말에는 완성 단계에 이르게 될 현시점에서 평가해 보면, 높은 성과에도 불구하고 구조적 문제점에 의해 도시적 활성화가 지체되고 있으며 지속가능한 도시로 발전해가는 데 한계를 노정하고 있다. 많은 입주사들이 출판계의 불황과 문화산업의 변화 환경에 적응이 지연되면서 경영적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 특히 산업구조가 디지털 콘텐츠를 중심으로 빠르게 재편되고 정보와 지식의 소비 형태가 급변하는 출판 환경의 변화에도 적극 대응해 나가야 하나 이는 입주기업들만의 자구책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출판도시라는 거시적 차원에서 도시의 특성화와 이를 통한 입주기업의 기능적, 생산적 경쟁력 강화를 지원할 수 있는 정책적, 제도적 방안이 요구되고 있으며, 특히 단지의 관리라는 측면보다 단지의 운영이라는 측면에서 정부의 혁신적인 지원 정책이 요구되고 있다.

파주출판도시는 운영 철학 및 관리 체계의 한계와 구조적 여건에 의해 창조산업단지, 문화산업단지로서 기능적 활성화가 지체되고 있으며, 지속가능한 문화도시로 발전해가는 운영 전략과 창의적 관리 철학이 요청되고 있는 현실인 것이다. 출판도시는 우리 사회의 다양한 이해당사자들과 문화자본이 얽혀 있는 공공의 영역으로서, 창조문화산업의 원형이자 바탕이 되는 출판에 대한 국가 차원의 인식 전환과 출판, 영상 등 지식정보서비스 산업이 집적화해 있는 출판도시를 창조문화 산업의 거점으로 만들어가는 전략이 긴요함.

본 연구는 파주출판도시가 자생력을 갖춘 문화산업도시로 발전해갈 수 있는 관리와 운영전략을 중심으로, 현행 법규와 산업진흥 정책의 테두리 안에서 필요한 통제와 규제를 하되, 행정의 재량권을 확일적으로 남용하지 않고, 창조적 문화산업단지 완성을 위한 합목적적 발전적 통제, 요령있는 운영과 선도(先導)적인 규제를 할 수 있는 관리 방향과 방안을 도출하는 데에 있다.

2. 연구 필요성과 목적

파주출판도시의 조성 목적과 배경, 사업의 성과를 분석하고, 아울러 파주출판도시가 안고 있는 구조적 문제점이 무엇인지 현황 분석을 토대로, 파주출판도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관리체계 개선 방안 제안을 위한 파주출판도시에 적용되고 있는 산업단지 관련 법률과 제도를 검토해 파주출판도시의 도시 활성화를 위한 정책대안을 마련하는 데 있다.

파주출판도시는 우리 사회의 다양한 이해당사자들과 문화자본이 얽혀 있는 공공의 영역으로서, 창조문화산업의 원형이자 바탕이 되는 출판에 대한 국가 차원의 인식 전환과 출판, 영상 등 지식정보서비스 산업이 집적화해 있는 출판도시를 창조문화 산업의 거점으로 만들어가는 전략이 긴요하다. 본 연구는 파주출판도시가 자생력을 갖춘 문화산업도시로 발전해갈 수 있는 문화전략을 중심으로 한 관리와 운영 방안을 제시하는 한편, 현실적인 발전의 걸림돌인 관리체계의 개선을 위한 정책을 제안하고자 한다.

파주출판도시가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은 출판산업과 영상, 정보산업의 특성을 살린 창조적 문화산업단지로 변화하는 발전전략의 부재를 들 수 있다. 출판도시 조성 목적으로 문화 산업의 집적 거점과 문화중심지 형성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전략은 사실상 보이지 않는다. 조성 이후 산업 환경의 급격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조성 당시 수립된 관리기본계획이 현재까지 확일적 통제 차원에서 발전적 변경없이 유지되고 있다는 점은 전략 부재의 한 단면을 보여 준다고 할 수 있다. 출판도시의 목적 달성을 위한 차별화된 발전전략의 수립과 그 집행 수단의 확보에는 긴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우선적으로 제도적 제약 요인을 분석하여 관리체계 구조에서 개선되어야 할 과제를 살펴보고자 한다.

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1. 연구 내용

파주출판도시의 조성 목적과 배경, 그리고 1단계 사업의 성과를 분석하고, 아울러 파주출판도시가 안고 있는 구조적 문제점이 무엇인지 다양한 출판도시 구성원들과 단지관계자의 의견 수렴을 토대로 도출해 낼 것이다. 도출된 문제점들을 조합에서 2단계협동화사업계획서에 설정하고 있는 2단계 사업의 기본 추진 방향 중심으로 파주출판도시가 풀어야 할 과제를 제시하고, 이 같은 기초조사와 국내외 사례에 대한 연구 분석을 토대로 파주출판도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방안을 창조산업 클러스터 전략, 문화도시 전략 측면에서 탐색해 보고자 하였다.

문화산업의 집적 거점이나 문화 활동의 중심지로 파주출판도시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동종업종간의 교류나 이업종간의 교류만으로는 부족하다. 일반적으로 문화산업은 기획자와 재화의 생산자 및 최종소비자 사이의 긴밀한 교류를 통해 산업발전이 이루어진다. 「문화산업진흥기본법」제2조1항에서 문화산업을 문화상품의 기획·개발·제작·생산·유통·소비 등과 이에 관련된 서비스를 하는 산업으로 규정하는 것은 이러한 특징을 반영한 것이다. 대표적 문화산업으로서 출판산업 또한 그러한 특징을 지닌다. 출판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은 작가 등 창조적 활동에 종사하는 자의 역량에 의해서만이 아니라 아이디어의 창출자에서부터 디자인, 유통, 최종소비자 등의 긴밀한 교류와 공감대 형성을 필요로 한다.

문화산업의 집적 거점이자 문화 활동의 중심지로서 파주출판도시는 기업과 지역사회에 이를 위한 공간과 기회를 제공하는 장(場)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파주출판도시가 당면하고 있는 상황은 아직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본 연구는 폭넓게는 출판도시의 발전을 위한 문화전략을 포괄하고 있지만, 현실적 목표는 파주출판도시에 적용되고 있는 산업단지 관련 법률과 제도를 검토해 파주출판도시의 도시활성화를 위한 정책과 관리체계 대안을 마련하는 데 있다.

2. 연구 방법

파주출판도시 구성원의 대부분은 출판도시의 관리가 출판산업의 육성과 지원이라는 측면에서 원활하지 못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협동화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해옴으로써 업종의 성격과 현황, 문제점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입주기업들의 자율적 조직이 관리조직이 되기를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과주출판도시 입주사들은 출판도시의 장점으로 '책을 중심으로 특성화된 문화공간'이라는 항목을 최우선에 두고 있으며, 출판문화 관계자 및 일반인들도 출판도시가 문화예술의 일상적 향유가 가능한 도시, 그리고 보유한 문화자원을 다양하게 체험할 수 있는 '책을 중심으로 한 문화도시'가 되기를 소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본 연구는 2013년에 발간한 '창조경제의 롤 모델 : 과주출판도시 활성화전략 조사 연구'의 후속 단계 연구 차원에서 출판도시를 만들고 운영해 온 기관이 중심이 되어 수행하는 것으로서, 출판도시의 현실을 가장 잘 아는 주체 및 이해관계자에 의한 실체적 연구 결과가 될 것이다. 한편 연구 결과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실천력을 갖도록 하기 위해 다년간 산업단지 관련 연구를 수행해 온 관련기관 전문가 의견 수렴과 관련 법규와 연구 논문 조사, 설문 및 면담 등을 토대로 이루어졌다.

현재 입주기업체 및 관련 단체가 겪고 있다고 생각하는 불이익과 피해, 불만에 대한 사례와 원인을 조사하고, 또한 역지사지(易地思之)의 차원에서 현관리기관 한국산업단지공단은 위 사례와 불만에 대해 어떤 입장이며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입주기업체가 이해하고 수용해야 할 사안은 무엇인지를 파악하여 객관적인 상황을 근거로 관리방안 연구 결론에 밑받침이 되도록 하였다.

제2장, 단지 현황 및 문화적 성과

제1절, 조성 목적과 현황

제2절 단지 개발 주요 과정과 입주기업협의회 운영 실적

1. 연도별 개발 과정과 출판도시 운영 주요 사항
2. 입주기업협의회 연도별 주요 사업 실적
3. 2015년도 주요 사업 계획(입주기업협의회, 조합)

제2절, 파주출판도시의 독창적 성과

1. 책 문화와 건축 예술이 만난 문화도시
2. 문화공동체로서의 자율적 계약으로 만드는 도시
3. 출판 가치사슬의 집적화 실현
4. 파주출판도시의 발전 방향과 기대효과

제1절 조성 목적과 현황

과주출판도시 조성의 목적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21세기 고도 정보화사회에 대비하여 출판, 영상 등 지식 정보산업을 중심으로 한 출판문화산업을 집적화하여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한다.

둘째, 첨단 정보 영상산업의 고부가가치 극대화로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고, 출판문화 창달을 위한 공간을 조성함은 물론 유통구조를 현대화한다.

셋째, 국제적 문화정보 교류 및 공연, 전시가 이루어지는 ‘통일한국시대의 문화중심지’ 이자 ‘세계적인 문화 관광명소’ 로 개발한다.

‘책을 위한 도시’ 를 만들겠다는 발상 아래 출판인들이 조합을 결성한 지 20여 년이 지난 오늘에 이르기 까지 과주출판도시는 한국 출판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새로운 패러다임의 도시 건설이라는 측면에서 뚜렷한 궤적을 그려왔다. 단순히 출판사들이 물리적으로 집적된 산업클러스터가 아니라 출판과 건축, 도시와 문화에 대한 의미있는 활동과 생산해 내는 특수한 문화지구로, 이상적인 계획도시의 모델로 자리매김해 온 것이다. 그동안 경제성장 및 도시화를 견인해온 정부주도형 도시 개발 드라이브와 부동산 개발논리에 함몰되지 않으면서 중소 규모의 출판사 사이의 결속력을 토대로 민간 조합을 구성하여 도시건설 기획단계에서부터 운영방안에 이르기까지 스스로 주체가 되어 청사진을 그려 나갔다.

위 세가지 과주출판도시 조성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 목표는 다음과 같이 설정되었다.

—산업 경제적 측면: 세계 최초의 금속활자 발명국이자 세계적 수준의 출판물 제작량과 출판 종수를 생산하는 출판 대국의 면모를 신장시키기 위한 산업 기반을 조성한다.

—산업 경영적 측면: 기획, 편집, 디자인 같은 연성(軟性)업무와 제작, 유통 같은 경성(硬性)업무가 유기적으로,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출판산업의 생산성 향상은 물론 공동체적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바, 이를 위한 토대를 마련한다.

—문화 매체적 측면: 출판은 국민 교육의 수단이자 학문 발전의 바탕이 되며, 문학과 지성을 전달 창달하는 최고의 매체이다. 또한 뉴미디어 사회 속에서도 콘텐츠 생성의 기초 및 원천 매개자로서 기능하므로, 이를 신장시킬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한다.

2단계 사업이 완성되면 출판도시는 활자와 영상, 콘텐츠와 미디어, 디지털과 아날로그, 원천과 응용의 융합을 통해 종합 미디어시티로 거듭날 것이며, 이와 같은 문화산업 인프라, 클러스터는 우리의 문화적 정체성과 경쟁력을 한층 강화시켜 국가 문화 성장 동력력의 토대가 될 것이다.

2단계 협동화사업계획서에서 약속하고 있는, “도시 내부에 거주하는 사람은 물론 외부인들까지” 출판도

시에서 이루어지는 문화와 예술을 상시 향유하고, “도시 내부에서 삶에 필요한 모든 의식주와 문화예술 활동이 동시에 충족”되는 자족도시를 기본방향으로 제시하면서 밝힌 ‘21세기형 정보지식 창출 산업 클러스터의 완성’, ‘문화예술의 일상적 향유가 가능한 문화도시의 완성’, ‘단순 산업시설을 넘어, 거주민의 일상생활이 가능한 주거도시의 완성’이라는 단지 조성 목표를 중심으로 3, 4장에서 출판도시의 관리체계의 발전 과제를 살펴보기로 한다.

〈파주출판도시 1단계 조성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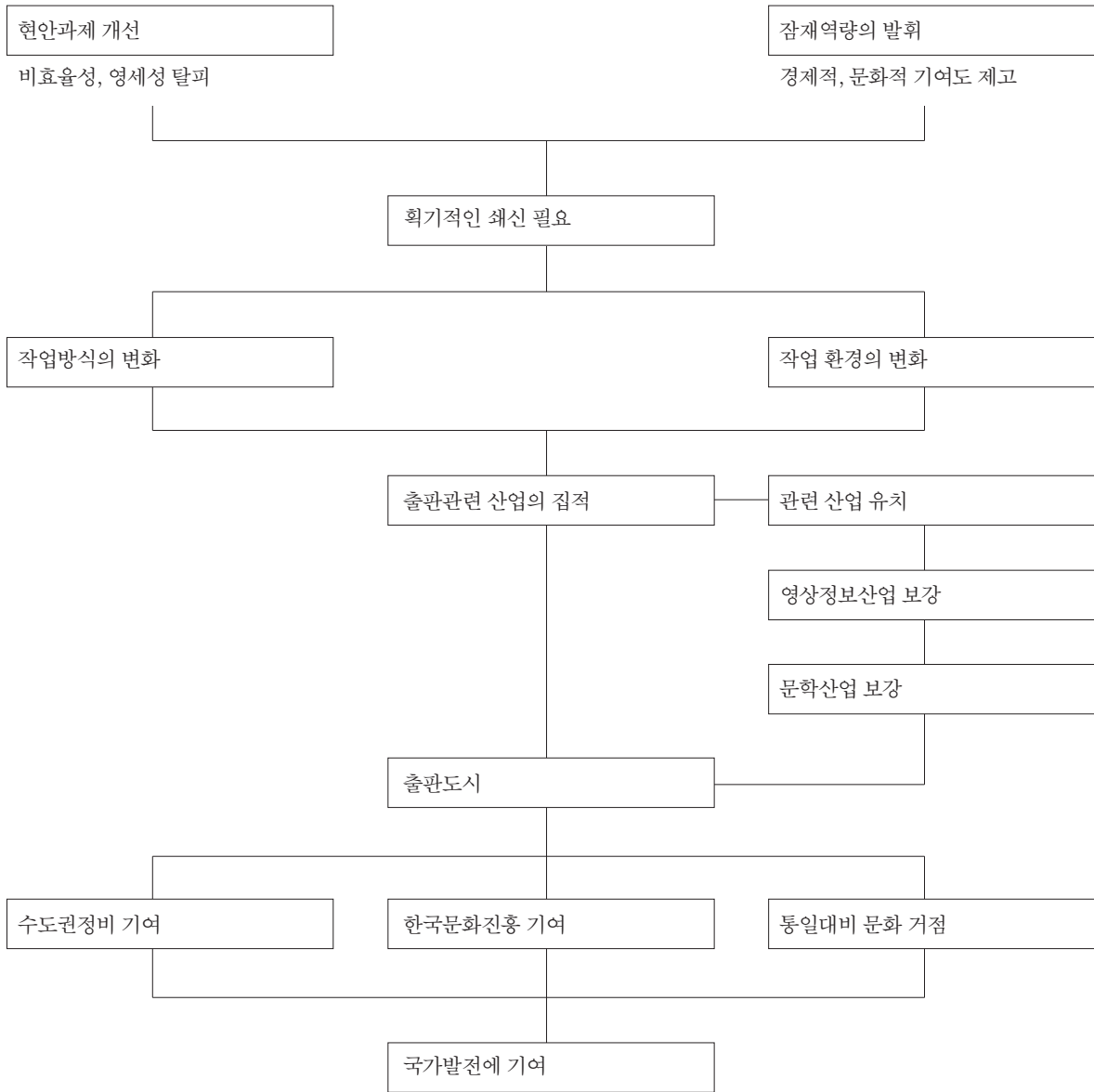
성격	파주출판문화정보국가산업단지(지정고시 : 1997년 3월)
위치	파주시 교하읍 문발동 일대
면적	총 874,089㎡
개발기간	1997-2007
사업기간	1989(출판문화산업단지 사업협동조합 발기인대회)-현재
투자비용	약 6,000억 원
주요 유치업종	출판, 인쇄, 출판유통, 기타
건축물 준공 및 입주 시작	2002년
입주업체 수	300여 사(출판사 168개, 인쇄 및 출판관련 지원사 76개, 기타 등)
근로자수	약 6,000명
매출액	1조 7천억
사업추진	문화체육관광부, 국토해양부
사업시행	한국토지주택공사
상설기구	사단법인 출판도시입주기업협의회, 재단법인 출판도시문화재단
특징	출판인들이 협동조합을 결성해 정부와 파트너십으로 개발

〈파주출판도시 2단계 조성 현황〉

성격	파주출판문화정보국가산업단지
위치	파주시 교하읍 문발동 일대(1단계 북서쪽 자유로변)
면적	총 686,666㎡
개발기간	2007-2015
투자비용	약 8,000억 원
주요 유치업종	출판, 인쇄, 영상, 소프트웨어, 기타
건축물 준공 및 입주 시작	2011년(2013년 4월 현재 8개동 준공)
예상 입주업체수	250(출판 57, 인쇄 19, 영상 34 등 건축물 110동 건축 예정)
예상 근로자수	약 5,000명
예상 매출액	1조 6천억 원

사업추진	문화체육관광부, 국토해양부
사업시행	한국토지주택공사
출판도시 사업주체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사업협동조합

〈파주출판도시 조성 배경과 필요성〉



제2절 단지 개발 주요 과정과 입주기업협의회 운영 실적

1. 연도별 개발 과정과 출판도시 운영 주요 사항

1988년 국내 출판산업계의 중추적인 민간 출판인들이 뜻을 모아 과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를 조성하기로 발의, 사업협동조합을 결성하여 오늘에 이르기까지 단지 개발과 조성에 이르는 주요 과정과, 2007년 1단계 완성 시점에 효율적인 단지 관리와 운영을 위해 설립한 출판도시입주기업협의회와 사업협동조합이 문화산업단지로의 지속적인 발전과 입주기업의 생산성 증대 및 경영 역량을 높이기 위해 추진하여온 주요 추진 실적은 다음과 같다.

1991	01. 08	과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사업협동조합 설립
1994	07. 01	대통령 지시사항 사업으로 과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조성계획 확정
1997	03	국가산업단지 지정 및 개발계획 확정
1998	07	과주출판도시 관리권자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으로 위탁
2000	04. 26	출판도시 1단계 건축을 위한 '위대한 계약' 체결
2003	12. 17	출판도시문화재단 설립
2004	06	아시아출판문화정보센터 완공
2005	09-10	베를린건축전시회, 프랑크푸르트도서전시회에 특별 초대 참가
2007	02. 28	출판도시입주기업협의회 설립
	03. 10	노무현 대통령 내방
	04. 16	출판도시내 도로명제정위원회 설치, 마을신문에 공모
	05	출판도시 1단계 협동화사업 완료
	05. 28	경기도 김문수 지사 내방 (대중교통문제, 남측진출로 확포장 건의)
	07. 23	길 이름 확정, 과주시 통보(직지길, 광인사길, 문발로, 회동길)
	09. 03	문화산업단지법제화 위원회 설치
	10. 15	출판도시 미관심의위원회 구성
	11. 02	2007 협의회 주관 가을책잔치 개최(2-4일)
2008	03. 05	출판도시 내 셋강 갈대 정비사업 실시(공사비 22,000,000원)
	03. 10	출판도시 합정간 직행 대중교통 신설 및 대화역 셔틀버스 운행 개시
	04. 25	출판도시 남측진출로 확포장 공사 시행(왕복 2차선)
	05. 31	과주심학산돌꽃이꽃축제 개막(5. 31-6. 8)
	09. 23	기업맞춤형 전문취업교육 실시 (경기도와 협약사업, 9.23- 11.28)
	10. 17	출판도시 2008 '가을책잔치' 개최
	10. 18	KBS 북쇼 개막식 진행(10. 17-11. 16)

- 11. 05 자유로 휴게소 내 출판도시 홍보관 약정 체결
- 2009 02. 24 파주시 공공디자인 기본계획 수립 주민설명회.
- 03. 24 파주시장 면담. 가로수, 미술가 작품공간 제공, 생태공원 추진, 심학산꽃축제 프로그램 등에 관해서 논의
- 04. 24 경기도 지원 기업채용맞춤교육 위수탁 협약 체결.
- 05. 01 제1회 어린이책잔치 개막(5.1-5.30)
- 06. 16 경기도지사 간담회 개최. 활성화 사업계획 건의, 추진키로 함.
 - Paju Book City Artist Project(미술가 등 예술인 창작 공간 제공)
 - 결계그림막 예술축제, 파주 국제도서전, DMZ 다큐 영화제 개최 등
- 09. 03 경기도 후원 기업맞춤형 여성채용교육 개강
- 2010 05. 04 출판도시 책방거리 조성 토론회
- 05. 04 제2회 어린이책잔치 개막
- 06. 10 출판도시 레지던시 프로그램 작가전시회
- 07. 13 공동직장보육시설 추진 회의
- 09. 10 2010년 파주출판도시 가을책잔치 개최
- 10. 01 파주시 평생학습축제 참가
- 12. 08 매월 넷째주 토요일을 '북샵데이'로 지정
- 2011 01. 06 일본책방거리 방문(방문단 21명, 3박4일).
- 01. 19 '파주북소리 2011' 책축제 기본계획 결정.
- 04. 28 출판도시 2단계 건축을 위한 '선(善)한 계약' 체결
- 05. 16 경기도 기업맞춤형여성채용교육사업 개강
- 08. 21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내방
- 08. 25 파주시 2011 무한돌봄희망센터 협력기관 협약
- 10. 01 '파주북소리 2011' 개최
- 10. 06 대통령 영부인 내방.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동행
- 2012 04. 25 입주기업협의회 워크샵. 파주북소리 축제의 바람직한 방향, 책방거리 활성화 방안, 옥외광고물 규제 정도, 공동직장보육시설 설치 등 출판도시 활성화 방안 논의
- 08. 29 베이징 국제도서전에 주빈국으로 참가
- 09. 15 '파주북소리 2012' 개최. 경인일보 히트상품 선정
- 09. 21 DMZ다큐멘터리영화제 개최
- 10. 25 제6회 '셰이크 자이예드 도서상' 수상(문화기술부문 최고상)
- 10. 25 2012 한국디자인 대상 대통령상 수상(책방거리 조성)
- 11. 14 출판도시 쓰레기 수거관련 파주시청 건의
- 11. 23 김황식 국무총리 내방
- 12. 12 '북콘서트' 개최
- 2013 04. 02 출판도시 투어 프로그램 개발 착수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조성계획 확정(1994. 07. 01)



출판도시 1단계 건축을 위한 '위대한 계약' 체결(2000. 04. 26)



출판도시문화재단 설립(2003. 12. 17)



프랑크푸르트도서전시회 참가(2005. 09-10)



아시아출판문화정보센터 완공(2006. 06)



노무현 대통령 내방(2007. 03. 10)



경기도 김문수 지사 내방(2007. 05. 28)



출판도시 2단계 건축을 위한 '선(善)한 계약' 체결(2011. 04. 28)



제6회 셰이크 자이예드 도서상 수상(2012. 10. 25)



박근혜 대통령 내방(2013. 09. 30)



- 05. 01 출판도시 어린이책잔치 개막
- 05. 14 ‘울곡교육연수원’ 과 협약 체결
- 05. 16 회동길 조형물 설치(아름다운 책방거리화를 위한 조형물)
- 06. 26 ‘에텐복지재단’ 과 협약 체결
- 07. 13 도교 국제도서전에 주빈국으로 참가
- 08. 06 출판도시 공동직장보육시설 운영위원회 설치
- 09. 04 ‘파주경찰서’ 업무협약(범죄예방 및 교통안전 등 치안 공동 협력)
- 09. 28 파주북소리 책잔치
- 09. 30 박근혜 대통령 내방
- 10. 08 서울시교육청과 함께하는 ‘출판도시 행복독서버스’ 제1호차 방문
- 10. 18 2단계 책과 영화의 도시 건설본부 인포룸 ‘서축공업(書築共業)기념관’ 개관
- 2014 02. 06 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원장 내방(산업통상자원부 실장, 산단공 이사장 등)
- 03. 01 출판도시 체험학교 개설(10개월간 41회 개최)
- 06. 01 출판도시 외국어 해설사 양성과정 개설(2개월 과정)
- 06. 16 출판도시 안내센터 개소
- 09. 17 출판도시 직장어린이집 개원
- 10. 03 파주북소리 2014 개최
- 10. 13 강서교육지원청 업무협약 체결
- 11. 05 한국영상자료원 제2보존센터 착공
- 11. 17 서울시교육청 서울학생배움터 인증
- 12 한국관광공사, 청소년을 위한 전국산업관광지 지정

2. 입주기업협의회 연도별 주요 사업 실적

- 2007년도 **파주 심학산 돌곶이 꽃축제(05. 26-30)**
출판도시 길이름 공모(06. 12) *
파주북시티 책잔치(11. 02-04)
- 2008년도 **파주 심학산 돌곶이 꽃축제(05. 31-06. 08)**
2008 파주북시티 가을 책잔치(10. 17-11. 16) *
 - “책을 읽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 행사내용 : 전시, 체험, 문화, 공연, 강연, 대회 등
 - 행사참여업체 : 총 78개사
기업맞춤형 여성전문취업 교육(09. 23-11. 28, 3개월 10주)
 - 수료인원 : 17명 수료
갈대셋강 생태공원 추진위원회 구성

- 2009년도 **어린이책잔치 사업(05. 01-05. 31), 거리문화행사(05. 01-05) ***
 - “우리 가족, 우리 집, 우리 도시”
 - 사업비 : 3억8천만 원(국고 1억8천만원, 지방비 1억원, 민자 1억원)
- 2009 심학산 돌곶이꽃축제 책문화잔치(05. 30-06. 07)**
2009 파주출판도시 가을책잔치(10.23-25)
 - 출판도시의 여러 건축물에 모자이크 걸개 그림 전시와 제1회 DMZ 다큐멘터리영화제 동시 진행
 - “읽고, 생각하고, 꿈꾸다/이야기와 이미지”
- 2009 파주출판도시 기업맞춤형 전문취업교육(09. 03-10. 09)**
‘파주출판도시 책방’ 사업(총 26개사 참여)
- 2010년도 **파주출판도시 어린이책잔치 2010(05. 05- 07. 04)**
2010 출판도시 여성취업 교육(05. 14-7. 1, 주 5회, 총 47회)
 - 40명 수료(최초 40명 선발, 100% 수료), 30명 취업
- 제1, 2회 전자책세미나 개최(07.08, 12. 01)**
 - 전자출판 관련 동향 및 전망 관련 전문가 발제
 - 태블릿 PC 산업현황 및 멀티미디어 콘텐츠 제작 중요성 주제 발표
 - 태블릿 PC 산업에 따른 출판사의 대처 및 대응 방안
- ‘출판도시 행복학교’ 2회 실시 ***
 - 문화적 소외계층을 위한 보상교육프로그램
- 2010 파주출판도시 가을책잔치, 제2회 DMZ다큐멘터리영화제(09. 10-12)
 - 슬로건 : 책과 영화의 만남
 - 내용 : 전시, 체험, 문화공연 등
 - 참여 : 출판사, 문화단체 등 총 70여개
 - 참여인원 : 관람객 10,000명으로 추산
- 2011년도 **2011 출판도시 기업맞춤형 채용교육 사업**
 - 사업기간 : 4. 15 ~12. 20. (8개월)
 - 출판사 근무 희망 예비출판인(여성) 교육 → ‘도서제작 프로젝트’ 참여
 - 출판업계에서 원하는 실무형 인력 양성 → 취업연계
 - 수료자 17명 중 10명 정규직 전환(전년도 수료자 30명 중 14명 전환)
- 책방거리 조성사업 ***
 - 명칭 : ‘파주출판도시 책방거리 만들기 위원회’
 - 책방거리 디자인 디렉터 선정 : 김현선디자인연구소 + 포스코A&C
 - 가로환경 공공디자인 개념 : 하나로 읽히는, 소통하는 파주출판도시 만들기
 - 책방거리 상징 조형물 : 갈대숲과 함께 어우러져 책방거리를 알리는 랜드마크 조형 사인물(인포메이션부스, 버스쉘터, 아트벤치 등 설치)
- 파주북소리 2011(10. 01-10. 09)**

2012년도 **책방거리 조성에 따른 책방코디 및 문화해설사 양성(02-12)**

- 책 읽는 사람, 책 쓰는 사람, 책 만드는 사람이 함께하는 아시아 지식의 축제
- 교육기간 : 2012. 4. 26-7. 26.(3개월), 주3일, 총 242시간
- 인턴쉽기간 : 2012. 08-12(5개월)
- 교육대상 : 출판도시 책방코디 및 해설사 활동을 희망하는 여성 40명

2012 기업맞춤형 여성채용 교육 사업(05. 24-12. 15, 1, 2차 8개월)

- 출판단지 전문가 과정(기업맞춤형 취업교육)
- 출판사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20명)
- 실무교육 : 도서제작 프로젝트 참여→취업연계 실무형 인력 양성
- 현장견학 : 출판사, 출판제작/유통 현장 견학→출판산업 이해 고취
- 총 15명 정규직 전환

출판도시 체험학교 사업(4. 1-12. 31) *

- 지원, 수혜대상 : 수도권 초·중·고학생
- 사업결과 : 총 27개 교육반, 총 1,040명 참가
- 사업내용 : 출판도시 인프라 활용 출판도시 체험 및 견학
- 총 14개 출판사, 책방 참가

과주북소리 2012 사업

- “책으로 소통하는 아시아 (One Asia Through Books)”
- 과주북소리 2012 행사기간중 45만명의 관람객 방문

책방거리 조성 사업(01. 01-12. 31)

- 사업비 : 900백만원(보조금200, 시발주500, 자부담200)
- 각 출판사 유휴공간 활용하여 특색 있는 책방 조성
- 가로 환경정비와 보행자 중심의 특화거리 조성
- 책방을 중심으로 한 출판도시 연중 프로그램 기획 및 홍보

2013년도 **과주북소리 2013 책축제 지원 (9. 28-10. 06)**

- “책으로 소통하는 아시아 (One Asia Through Books)”
- 과주북소리 2013 행사기간 중 50만 명의 관람객 방문
- 문화체육관광부, 문화관광 유망축제로 선정
- 경인히트상품 지자체 부문 최우수상 수상

책방거리 조성 지원사업(01. 01- 12. 31)

- 위치 : 과주출판도시 내 광인사길 외
- 사업비 : 900백만원(보조금200/시발주500/자비200)
- 보차도 혼용 기존도로를 일방 통행화하여 쾌적한 보행공간과 녹지 확보
- 광인사길 테마거리 조성 1, 2단계 사업 시행

출판도시 투어, 견학 사업 *

- 투어 방문 현황(총계) : 433회, 총 16,192명 방문

-어린이책잔치 및 파주북소리, 출판도시 투어 연계 프로그램 운영

-출판도시 체험학교(문화부 후원) 운영 : 총 25회

-서울시 교육청 연계 <행복 독서 버스> 실적 : 총 4145명

출판도시 체험학교 사업 (05. 01-12. 31)

-지원, 수혜대상 : 수도권 초중등학생

-사업규모 : 25개교육반, 매주1회 약40명, 총 약1,000명 참가

-출판도시 인프라 활용 출판도시 체험 및 견학 22개 프로그램(공연5, 전시6, 체험8 견학 3)

파주라이트페스티벌 지원(08. 26-10. 06)

-워크샵, 세미나, 점등식, 점등(09. 01-10. 06)

파주시 행복나무 갖기 운동 지원(04. 12)

-식수장소 : 출판도시 문발로 주변 녹지

-행복나무 갖기 운동 총 60그룹 식수입주사 명의 표찰 부착

2014년도 **‘파주북소리 2014’ 책축제 지원(10.03-10.12) ***

-전시 : 7인 7색의 고서들, 책에 관한 모든 것, 2014 파주평화발전소

-국제교류 : 스토리텔링 아시아/국제 인문학 콘서트 <아시아 신화 : 아주 오래된 미래>, 국제 콘서트 <파주, 아시아 신화와 놀다>, 영국문화원과 함께하는 북콘서트 : 한-영 작가, 서로에게 묻다, 노마 히데키 특별 강연 <지(知)와 한글: 한국의 지(知)를 읽다>

-강연 : 독(讀)한 습관, 시인이 읽어주는 가을, 북콘서트 평화의 책, 인문학 콘서트, 파주삼현의 삼현수간 이야기

-관객참여 : 행복나눔프로젝트, 파주북소리 글짓기 한마당, 파주북소리 독서콘서트, 문학 열차, 책 읽는 파주, 아동발달과 그림책을 통한 독서습관, 우리아이와 책 속에 풍덩!, 파주 북소리 유아독서캠프, 선데이마켓 등

-공연 : 노름마치 뮤직 콜라보레이션 비단길, 러시아안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한국춤 동인회 공연/파주 아리랑, 국악방송 공개방송/책이좋은밤 등

출판도시 견학 투어 사업

-2014년 투어 방문현황 : 총 436회 15,584명

-출판도시 해설사 운영 : 총 27명(한국어 13, 영어 7, 중국어 4, 일어 3)

-외국어해설사 11월부터 정식 해설사 전환(ID 카드/ 명함 제작 배포)

-서울 서울교육청 행복독서버스 운영 : 초·중학교 총 8000명

출판도시 안내 센터 설치 운영(03. 01-12. 31)

-출판도시 안내 센터 설치, 투어 콘텐츠 개발, 해설사 교육, 홍보물 및 홍보영상 제작, 투어 홍보

-대외 및 출판도시 방문객 대상 입주사 소개 및 홍보

-출판도시 투어 연계 프로그램 공동 개발/운영

-출판도시 방문객 대상 입주사 홍보 및 방문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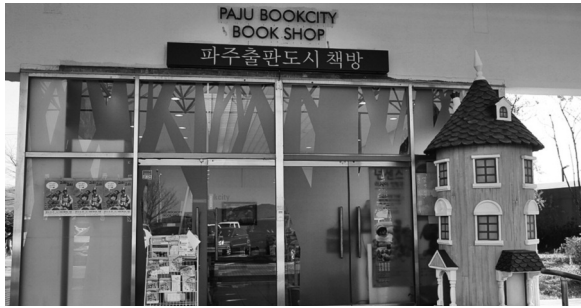
-해설사 인력 파견 지원(행사, 북샵운영, 프로그램 운영 등 필요시)



출판도시 길이름 공모(2007. 06. 12)



2008 파주북시티 가을 책잔치(2008. 10. 17-11, 16)



출판도시 홍보관 오픈(2009. 05. 23)



기업 맞춤형 채용 교육(2009-2013)



책방거리 조성 사업(2011-2014)



파주북소리 2011(2011. 10. 1-10, 9)



출판도시 체험학교 (2012. 5-)



출판도시 투어, 견학 개시 (2012. 8-)



파주출판도시 행복나무심기 행사 (2013. 4. 12)



출판도시 공동직장보육시설 개원(2014. 09. 17)

-관람객 대상 프로그램 운영시 입주사 공간 제공 요청

출판도시 투어 홍보 *

- 국회숲속도서관 조성 책나눔 축제 참가(4.18~20)
- 한국관광공사 이달의 가볼만 한 곳 선정
- 한국관광공사 대한민국 구석구석 사이트(<http://korean.visitkorea.or.kr>)
- 추천! 가볼만한 곳 소개(책으로 꿈꾸는 도시, 파주출판도시 체험)
- 강서교육지원청 체험학습 관련 상호 협약 체결
- 서울시교육청 서울학생배움터 인증(11. 17)
- 한국관광공사, 청소년을 위한 전국 산업관광지 101곳 수록

출판도시 체험 학교 운영(03. 01-12.31)

- 사업 목적 : 주5일 수업제 시행에 따른 청소년 등의 독서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해 출판 제작 체험 및 독서 교육 추진
- 지원, 수혜대상 : 수도권 초·중·등학생 총 41회 개최, 1322명 참가

출판도시 공동직장보육시설 개원(09. 17)

- 출판도시 근로자를 위한 어린이집 신축
- 지상 3층, 건축면적 : 495.62㎡, 연면적 1001.28㎡
- 위탁 운영 : 한국아동보육복지협회(이숙희)
- 교직원 총11명(원장 1, 교사 9, 조리사 1) 입소 아동수 총 46명

3. 2015년도 주요 사업 계획(입주기업협의회, 조합)

도시관리/입주기업 지원 분야

- 입주기업협의회를 관리기관으로 전환->입주기업협의회 설립 추진
- 중소기업지원센터 설립 및 보육시설, 의료기관, 체육시설, 주차시설 유치
- 셔틀버스 연장 운행 및 2단계 지구 대중교통 노선 신설(강남-파주)
- 입주사 시설관리, 영선, 미화 공동서비스 체계 구축

도시시설 및 관리분야

- 사옥건축 설계, 시공 지원, 건축정보 제공 및 건축심의위원회 운영
- 사옥 건축자금 금융지원정책 안내 및 업무 지원
- 블록별 공동사업추진(공공보행통로, 가로환경, 옥외사인물 관리 등)
- 대체 입주사 모집 및 처분사 후속관리 및 난개발 방지를 위한 파주시 대관 업무

출판도시 문화사업 및 특성화 사업

- ‘파주북소리’, ‘어린이 책잔치’ 계속, 2단계 영상관련 축제프로그램 기획, 개발

- 출판산업 체험센터 설치, 파주출판도시 체험학교 운영(외국인 및 다문화가족)
- 출판도시 조성 각종 기록 제작 및 사업 다큐멘터리, 홍보자료 제작
- 출판도시 투어 및 견학, 외국인 체험프로그램 개발 및 관광상품 제작

특별사업

- 출판도시 가상도시 구축(안내표지판, 스마트 허브, 간이상설무대 등)
- 상업, 주거(행복주택), 주차시설등 각종 기반시설의 합목적적 개발 유도
- 생태하천/수로, 폐기물시설, 교통체계 확충등 인프라체계 정립
- 출판역사박물관, 한국영화박물관, 영화스튜디오 등 문화시설 적극 유치

입주사 및 조합원 유대강화 사업

- 출판도시 입주기업의 일체화를 위한 공동체 문화마인드, 정보공유 기회 확대
- 출판과 영상 입주사별 특성을 고려한 공동 문화사업 개발 및 커뮤니티 조성

제3절 파주출판도시의 독창적 성과

1. 책 문화와 건축 예술이 만난 문화도시

우리나라 대부분의 산업단지가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주도하에 설립된 것과 달리, 파주출판도시(1단계)는 출판, 인쇄, 제본, 유통 등 다양한 인접 분야와 출판과 관련을 맺는 다양한 인맥과 이해관계, 사상을 가진 조합원들에 의해 현실화되었다. * 파주출판도시를 기존의 산업단지와 가장 뚜렷하게 구분시키는 지점은 선구적인 도시 마스터플랜과 건축설계지침, 실험적 성향의 건축가들을 대거 영입시킨 점이었다. 기존의 도시 설계 문법과는 전혀 다른 접근의 입체적이고 혁신적인 실험이었기에, 오늘날 출판도시가 국내외적으로 높은 관심과 평가를 받을 수 있었다.

파주출판도시의 건축물들은 독창적인 스토리와 설계로 지어진 공간과 건축물들은 한국의 도시개발 및 건축문화사에 신기원을 열었으며, 입주 기획자들이 주도적으로 선도하여 단지 개발을 수행한 유일한 사례이면서 도시적, 산업적 측면에서 세계적 명소로 평가받고 있다. 베니스 비엔날레를 비롯한 세계 유수의 전시공간에서 출판도시의 도시 개발 사례와 건축물들이 전시되었을 뿐 아니라, 국내는 물론이고 해외에서까지 출판도시를 찾는 건축 투어의 물결이 끊이지 않고 있다. 또한 말레이시아의 쿠알라룸푸르 북시티는 파주출판도시를 벤치마킹해 건설되고 있으며, 중국과 대만 등지에서도 파주출판도시 같은 공간을 조성하려는 모색이 시도되고 있다. 파주출판도시가 아시아 출판시장에서 우리 출판문화의 위상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음을 여실히 증명해주는 사례다. * 인용, 정리: 「파주출판도시와 공공성의 경계」 배형민(2009)

파주출판도시의 건축물들은 산업단지임에도 건축법상 대부분 공장이 아닐뿐더러, 건물마다 연구실, 집필실, 전시장, 공연장, 북카페, 서점 등의 문화공간이 들어서 독자들과 찾아와 책 문화를 즐기는 곳으로 변모하고 있으며, 뿐만 아니라 파주북소리를 비롯한 굵직한 문화행사가 진행되는 문화도시이자 방문자들에게 인문학 강좌 등 다양한 교육 및 문화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는 교육도시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파주출판도시의 출판문화공동체를 지향하고 있을 뿐 아니라 방문자들에게 다양한 교육 및 문화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그리하여 ‘책’을 통해 독자와 젊은이들이 미래를 향한 꿈을 키우도록 지혜를 주는 교육도시의 기능을 아울러 수행하고 있다. 출판도시 방문자들은 출판도시를 ‘책을 중심으로 한 문화공간’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압도적으로 높았다.

2. 문화공동체로서의 자율적 계약으로 만드는 도시

파주출판도시의 가치는 첫째로 ‘공동성의 실현’이다. 공동성이란 개별적인 욕망이 고립된 개체로 머무

는 것이 아니라 통합된 전체로 이행하는 것이며 그 과정 속에서 개인과 전체가 비로소 유기적이고 조화로운 힘을 얻어내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공동성이란 단순히 그 의미를 해석하는 데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실천될 때만이 비로소 그 뜻이 살아난다.

다음은 출판도시를 조성하면서 입주기업들이 건축물을 설계하고 시공하기 전에 출판도시의 산업적 조성 목적을 이루는 것은 물론 단지 전체의 건축물들이 문화도시의 면모를 갖추기 위해 자율적으로 입주기업간의 약속이자 건축 설계자들과의 약속을 만들고 이를 대내외적으로 공시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따라 수행한 것은 높이 평가되어야 할 것이다. ‘위대한 계약서’ 일부를 싣는다.

〈위대한 계약서〉

우리 출판인과 건축가는 열두 해 전, 매우 미래지향적인 뜻으로 발의된 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던 과주 출판도시의 도시적 목표를 존중하며, 이의 성공적인 완성을 향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기 위하여 여기 모였다.

우리는 이땅에 건강한 출판문화와 건축문화를 세우는 데 최선을 다하려 한다. 이땅의 민족과 국가 앞에 숭고한 책의 가치를 드높이며 자랑스런 우리 건축문화의 전통을 되살려, 우리의 도시가 추진-건설되는 과정이나 완공된 이후의 현장과 시설이 출판문화의 중흥과 국민교육의 마당으로 쓰이기를 희망하는 것이다.

이러한 희망을 구체화하기 위해 우리는 다양한 건축가의 건축방식이나 여러 입주자의 다양한 산업형태-시설양식이 존중되면서, 이들이 조화롭게 완성되도록 기법과 지혜를 성실히 짜낼 것이다.

이런 일들을 수행함에 있어 우리는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 항목을 정중히 서약하면서 설계에 임하고자 한다.

첫째, 건축가와 출판인은 신뢰를 바탕으로 서로 존중하며, 각기 가지고 있는 좋은 생각을 허심탄회하게 교환하여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최선을 다한다.

둘째, 출판도시의 바탕은 하나의 건축이다. 공동성과 개체성이 조화를 이루지 않는 한 이 도시는 성공될 수 없다는 인식을 새로이 다짐한다.

셋째, 출판인은 이 기회를 스스로 좋은 건축주로서의 위상을 세우는 계기로 삼는다. 참다운 건축가의 이상을 받들어야 위대한 책의 생산공간은 마련될 수 있다는 신념으로 임한다.

넷째, 건축가는 참다운 건축가로서의 소명을 생각한다. 그리하여 우리시대의 새로운 건축이 이곳에서 역사 되어야 한다.

다섯째, 설계에 따르는 비용은 합리적이고도 공정하게 산출되어, 건축가와 건축주 모두의 명예와 이익에 도움이 되도록 한다.

우리 모두는 역사적 소명과 시대정신의 이름 아래 이 계약서를 “위대한 계약서”라 칭한다. 이 “위대한 계약서”는 출판도시의 모든 건축 행위의 기본적 계약이며 개별적 계약은 이와 더불어서만 유효하다. 이를 위하여, 출판인 대표 이기웅과 건축가 대표 승효상이 앞장서 서명하고, 모든 입주자와 건축가가 연기명

으로 서약한다. (2000년 12월 2일)

과주출판도시의 조성 이념과 목적을 실현하고자 조합과 입주기업협의회에서 역점을 두고 실행한 여러 분야 중에서도 특히 자율적인 건축심의위원회*를 두어 건축·조경·옥외광고물 계획이 디자인이 우수할 뿐만 아니라 공공적 가치를 증대하고 과주출판도시 협동화사업 이념에 기여할 수 있는 건축물이 건축될 수 있도록 심의기준*을 만들어 이를 준수해 왔다는 점을 높이 평가할 수 있다. 이런 공동체로서의 자율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도시를 건설한 단지는 국내에서는 유일하며, 이런 심의 기준은 최초 건축 단계에서뿐 아니라 이후 설계변경이나 증, 개축 시에도 계속 준수하여 지켜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입주기업협의회에 관리기관의 역할과 임무가 주어져야 한다. 과주출판도시가 산업단지로서의 기능적 우수성 뿐 아니라 공간적 건축적 차원에서 세계적 명소가 되고 있는 바탕은 이같은 섬세하고도 헌신적인 운영 철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부록 과주출판도시 건축심의위원회 심의기준 참조

과주출판도시의 건축물들은 이와 같이 개발계획에서부터 대상부지 선정, 기반시설, 건축설계지침, 간판 규정, 관리운영지침은 물론이고 입주 후의 운영에 이르기까지 미래의 입주자들이 능동적으로 나서 공동체로서의 자율적 약속과 계약에 따라 도시 개발을 수행한 드문 사례이자, 국내외의 대표 건축가들을 참여시켜 현대건축의 세계적 명소로 만들었다. 출판도시의 건축에 대한 국내외의 높은 평가에도 불구하고, 단지계획이 기존 도시 개발의 문법을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산업단지라는 획일적 규제와 관리에 머물고 있는 것은 조속히 개선되어야 할 과제로 제기되고 있다.

3. 출판 가치사슬의 집적화 실현

1단계가 완성된 현재 과주출판도시에는 출판사, 인쇄소, 제본소, 저작권 에이전시, 출판유통회사, 디자인 회사 등 각종 출판연관 회사 3백여 업체가 입주하여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출판산업 클러스터를 형성하고 있으며, 협업과 경쟁을 통해 활발한 지식생산을 이루어내고 있다.

창조경제의 핵심인 지식과 정보를 창출하는 중심기지로서 현재 고용인원 6천 명, 연매출 1조7천억 원을 달성하고 있으며(2단계 완공시 고용인원 1만1천 명, 연매출 3조3천억 원 예상), 연관산업의 집적화를 통해 1단계에서 절감하고 있는 연간 생산 및 물류 비용만도 2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평가된다. 인쇄 및 인쇄 관련산업의 경우 전국 매출액의 9.8%, 기록매체복제업의 경우 전국 매출액의 20.0%, 일반도서와 학습서적을 합한 출판시장의 경우 전국 매출액의 33.4%(2010년 기준 정부 통계에 의하면 출판업, 인쇄업을 합한 출판관련업종 총매출액 12조 5,456억 원 가운데 신문, 정기간행물, 인쇄업을 제외한 출판시장 매출액은 3조 8,946억 원임. 출판도시에서 발생한 출판업 매출액을 1조 3천억 원으로 추정해 산출하였음)가 과주에서 발생한다. 과주시 매출액의 대부분이 출판도시의 성과임은 두말할 나위 없다.

대부분의 산업단지가 국가정책과 주도에 의해 하향식으로 건설되는데 반해, 출판인들의 자발적이고 창의적인 협동화 사업으로 순수 민간 차원에서 건설되었음에도 그 성과와 국가경제에 대한 기여가 남다른 것을 알 수 있다.

4. 파주출판도시의 발전 방향과 기대효과

파주출판도시는 출판산업의 구조적 기능적 특성을 담아내기 위해 기획 초기부터 ‘박물관 도시’라는 개념을 도입해 책을 만드는 행위의 기능적 과정과 구성 요소를 박물관 프로그램으로 설정하였으며, 궁극적으로 책의 소비자인 독자들이 와서 보고 즐길 수 있는 공간을 지향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파주출판도시 전체 차원에서 파주북소리, 출판도시어린이책잔치, 국제출판포럼, 동아시아 책의 교류 등 굵직한 연간 행사를 진행해 책과 문화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즐겨 찾는 문화도시로 발돋움하고 있다. 2011년부터는 문화도시로서의 면모를 일신하기 위해 책방거리 조성사업을 의욕적으로 진행함으로써 2013년 초 현재 40여 곳의 책방과 문화시설이 들어서 상시적으로 문화를 즐길 수 있는 곳으로 변모하고 있다.

출판산업단지는 뜻 그대로 단지이기도 하지만, 울타리를 두르고 출입을 통제하는 보통의 단지와는 다른 환경적 국면을 보유한다. 특히 일산 신도시와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할 뿐 아니라, 활성화를 위해서 수도권 일대의 시민 및 전국의 방문자들을 상시 유치하는 개방적 환경이 되고 있으며, 풍성한 조경과 다양한 행사 개최 등을 통하여 옥내 공간 뿐 아니라 옥외 공간의 쾌적성이 최대한 보장되는 일종의 “문화공원”(culture park)라는 형식을 보유하고 있다.

이상과 같이 파주출판도시가 지향하고 성취해 온 성과는 앞으로 국내 여타 산업단지가 지향해야 할 발전 방향의 모델이 되는 한편, 출판도시가 지속성장을 위해 추구해야 할 새로운 가치와 역할을 보여 주고 있다.

즉 출판도시는 ‘창조산업도시’, ‘건축문화도시’, ‘생태환경도시’, ‘문화축제도시’, ‘인문교육도시’, ‘미래창의도시’를 지향함으로써 창조산업과 문화예술, 일상이 문화와 조화를 이루는 자족자급 도시를 지향하고 실현할 수 있는 가능성과 기대를 보여주고 있다.

파주출판도시 구성원들은 전통 제조업의 시각에서 마련된 출판도시 관련법이 ‘문화산업의 특수성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어야’ 하고, 창조산업 융복합 시대에 맞게끔 입주 업종의 범위 등 관리기본계획이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제3장, 단지 관리체계 현황과 구조적 문제점

제1절, 파주출판도시 관리의 문제점과 한계성

1. 개요
2. 관리체계상의 문제
3. 관리체계 개선 방향

제2절, 현 관리체계와 관리권한

1. 국가산업단지의 관리체계
2. 관리권한의 위탁, 위임
3. 관리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제3절, 입주기업체 전환 절차

1. 파주출판도시의 관리체계
2. 입주기업체협의회(관리공단 포함) 설립절차

제1절 파주출판도시 관리의 문제점과 한계성

1. 개요

파주출판도시는 도시의 내재적 발전이 가능한 구조에서 큰 한계를 안고 있다. 그것은 산업단지라 조성이라는 법적 정책적 근거와 지원으로 태생하였으나 분양과 입주가 성공적으로 완성되어가는 현 시점에서 법적 규제와 획일적 관리라는 틀에 갇혀 오히려 지속적 변화와 발전에 제약을 받으며, 한편으로는 최초 단지 조성 목적이 일방적 통제에 의해 훼손될 수 있는 단면도 보여지고 있다.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은 시대와 사회의 변화에 대응하며 보완되고, 입주기업의 발전적 의견이 반영되고, 불필요한 규제가 있다면 수정되고 철폐되어야 하며 일부 입주기업의 이기적 악용이 있다면 이를 융통성있게 제어하고 방지할 수 있는 제도가 출판도시의 특성에 맞게 보강이 되어, 단지 발전의 원동력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 대부분 입주기업들의 의견이자 공통적 정서이다.

출판산업이 문화산업이라는 점에서 볼 때, 또 세계적으로 문화창조산업 클러스터들이 도심을 기반으로 자유로운 공기를 호흡하며 제도적 제약 없이 발전해가는 트렌드에 비추어볼 때, 출판도시의 산업단지 관련제도는 문화산업의 특성을 살린 개성있는 발전전략은 커녕 오히려 발전을 가로막는 저해 요소로 나타나는 실정이다.

파주출판도시 관리기본계획은 단지조성과 집적화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국가 전체 산업단지 관리의 틀을 그대로 원용한 것이다. 1단계 단지조성이 완성되고 2단계 단지의 분양이 완료되어 건축공사가 진척되며 2015년에는 완성 단계에 이르게 되는 현 시점에서,이제는 출판도시 조성의 강력한 목표였던 문화산업의 집적거점 및 문화중심지 형성을 위해 관리기본계획에서 부터 관리기관 주체까지 혁신적인 변화가 필요한 시점인 것이다.

입주기업 지원과 관련하여 파주출판도시의 딜레마 가운데 하나는 출판산업의 육성과 지원에 관한 시책 사업이 문화체육관광부에 의해 주관됨에 비해 관리기관은 한국산업단지공단이라는 사실이다. 그리하여 관리기관이 정부를 대행하여 출판도시내 입주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역할에 한계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 파주출판도시의 관리는 입주기업 관리, 공급처리시설 관리 등 제조업 중심의 다른 산업단지와 유사한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출판도시의 특성 및 입주기업들의 다양한 요구에는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

〈파주출판문화정보국가산업단지 2단계 협동화사업계획서〉는 2단계 사업의 목표를 “출판도시는 단순한 산업 클러스터의 단계를 넘어, 가장 고등한 형태로 진화한 첨단 문화예술 도시를 꿈꾼다”며 모두(冒頭)를 시작하고 있다. 이어 “낮에만 활용되는 산업단지를 넘어, 365일, 24시간, 원하는 사람 누구나 자연과

문화와 지식을 향유할 수 있는 도시,” “문화와 예술이 상존하고, 도시 내부에 거주하는 사람은 물론 외부인들까지 언제나 이를 향유할 수 있는 도시를 만들자는 것이 출판도시 건설의 기본 이념”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같은 야심찬 목표의 제시는 역설적으로 1단계 사업에서 설정한 “국제적 문화정보 교류 및 공연, 전시가 이루어지는 ‘통일한국시대의 문화중심지’ 이자 ‘세계적인 문화 관광명소’ 로 개발한다”는 목표에 크게 미달한 것으로 느끼게 한다.

이제 출판도시는 질적 변모를 요구받고 있다. 보유한 문화적 자원을 외형적으로만 보여주는 데 만족할 게 아니라 문화를 창조해내고 발신하는 베이스가 되어야 한다. 지식 생산과 유통, 교육의 플랫폼으로 창조적 산업단지로 발전해가야 하며, 지성적 문화공간으로 변모해 나아가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치밀한 문화전략과 유연한 관리와 정부의 정책과 예산 지원이 요구되는 것이다.

2. 관리체계상의 문제

과주출판도시는 중앙정부의 문화체육관광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및 국토해양부와 연계되어 있으며, 우리나라의 대표적 문화산업 집적지라는 점에서 경기도와 과주시 또한 그 발전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또한 과주출판도시는 그 사업의 추진이 출판인들이 구성한 협동화조합에 의해 시작되었다는 점에서 다른 국가산업단지와 다른 특성을 지니고 있으며, 출판도시 발전에 대한 입주기업의 관심도가 높은 지역이다.

그러나 이러한 다양한 주체의 참여가 과주출판도시의 성장을 위한 자원이라기보다는 제약 요인이 될 수도 있다. 최근 이루어진 한 연구*에서는 과주출판도시의 약점 중 하나로 3개 단체가 관여하는 사업주체의 복잡성을 지적한 바 있다. 실제로 입주기업의 다수는 형식적 관리에 그치고 있는 현행 관리기구인 한국산업단지공단을 대체하여 입주기업협의회에서 관리를 담당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일 수 있다고 지적한다.

산업단지의 관리는 관리권자가 관리업무를 위탁한 기관이 담당하는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외에도 한국산업단지공단, 산업단지관리공단, 입주기업체협의회 등이 관리기관이 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국가산업단지의 경우 포항 등 특정기업용으로 개발된 경우나 자원비축기지를 제외하고는 한국산업단지공단이 관리하고 있으며, 일반산업단지의 경우 지방자치단체나 입주기업협의회 및 관리공단이 관리하고 있다.

* 이상훈 외 (2012), 「과주출판도시 활성화 방안」, 경기개발연구원.

한편, 앞서 지적하였듯이 산업단지 입주기업은 대부분 관리기관을 기업지원기관과 동일한 것으로 간주한다. 그러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나 「산업단지관리지침」에서 확인할 수 있듯

이 이들의 기능은 토지이용 및 시설관리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즉, 현재 관리기관의 역할이 기업의 요구를 충족하지 못하는 것은 대부분 법률적·재정적 문제에 기인하며, 이는 입주기업협의회에서 관리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이러한 문제점 외에도 입주기업협의회와 한국산업단지공단 업무가 중복 수행되고 있다는 문제점을 지적할 수가 있다. 법적인 관리주체인 한국산업단지공단 파주시사와 입주기업체의 대표기관인 입주기업협의회가 각각 독립적으로 관리업무를 수행함으로써 비효율이 초래되고 있다. 특히, 사업진행 과정에서 한국산업단지공단, 파주시, 문화관광체육부의 승인절차를 별도로 받아야 함으로써 사업이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근본적인 문제점은 문화산업단지를 기존 제조업 중심의 산업단지와 동일한 기준으로 관리하고 있어 문화산업이 갖는 변화성, 다양성, 유연성 등을 반영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한국산업단지공단은 제조업 중심의 국가산업단지에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관리체계를 유지하고 있어 파주출판산업단지의 특수성을 감안한 관리업무를 수행하기에는 부적절한 측면이 있다. 하지만 입주기업협의회는 공식적인 관리기관이 아니어서 공신력과 대표성을 갖기가 어려운 실정에 있다. 특히, 입주기업협의회는 법적인 권한의 부족으로 산업단지 운영에 있어 입주기업체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 인용, 정리: 「녹색성장시대 선도를 위한 산업입지정책 방안」, 국토연구원 류승환 외 (2010)

3. 관리체계 개선 방향

파주출판도시가 단일의 산업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제도 개편을 통해 관련지원기관이나 산업진흥기관을 관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가령 환경부에서 개발하는 재활용단지의 경우 개발절차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정한 국가·일반산업단지 개발기준을 따르나 관리권은 산업단지를 조성한 자가 가지며, 환경부 장관이 조성한 단지의 경우 지자체나 한국환경공단 등에 관리를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2조(재활용단지의 관리·운영)〉

- ① 재활용단지의 관리·운영에 관한 권한은 재활용단지를 조성한 자가 가진다.
- ② 환경부장관이 조성한 재활용단지의 경우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자에게 해당 재활용단지의 관리·운영을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9. 12. 24)
 - 시·도지사
 - 한국환경공단
 - 삭제
 -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재활용단지를 관리·운영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그러나 파주출판도시의 경우 출판산업뿐만 아니라 영상산업 등 다수의 산업이 함께 입주하고 있으며, 또한 현재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관리권을 지닌 국가산업단지이기 때문에 관리기관의 변경이나 기업수요에 부합하는 관리기능의 수행을 위해서는 부처간 협의를 통한 제도개편이 필요하다. 따라서 관리기관의 개편이나 기능재편에 대해서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한국산업단지공단의 단지관리계획 추진실적 현황(현 단지관리기본계획에 따른 항목)〉

관리기본방향

- 단지내 산업시설, 연구시설, 주거시설, 지원상가시설, 문화복지시설 등의 복합 기능을 갖춘 21세기 미래형 첨단단지로 육성·발전(구체적 실현 계획 없음)
- 합리적인 산업시설배치를 통하여 산업단지 운영의 효율성 제고(제한적)
- 적정 입주기업 선정유치 및 지원활동 전개(수동적)
- 폐기물처리장, 공원, 완충녹지 조성등으로 환경친화적인 단지조성(조성 계획 없음)
- 생활편의를 위한 종합지원센터 건립·유치로 입주기업체 생산성 향상 및 근로자 후생복지 도모(조합, 입주기업협의회에서 추진)

관리기본계획(사후관리계획)

- 목표 : 산집법, 산업단지관리지침* 및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에 의거 산업단지 관리업무를 효율적이고 능동적으로 처리함으로써 입주기업체의 생산활동 지원 강화

세부관리계획

- 분양용지의 관리 : ① 산업단지내 분양용지는 산집법과 산업단지관리지침 및 관리기본계획에 따라 사후관리, ② 관리기관은 입주기업체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입주계약을 해지하거나 분양용지를 환수할 수 있으며, 입주계약 해지시 분양계약은 자동 해지됨. (①, ②항 획일적 관리)
- 환경관리 : 산업단지에서 배출되는 오·폐수, 폐기물의 적정처리를 위하여 단지내 폐기물처리장을 설치 또는 유치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유도. (조성 계획 없음)
- 안전관리 : 풍수해 등 재해와 치안유지를 위해 산업단지내 파출소, 소방파출소 등을 유치하고, 지방자치단체등 관련기관과 재해복구 협조체제 구축. (유치 계획 없음)
- 관리기관의 입주기업체에 대한 지원사업

생산활동 기반 구축

- 출판·영상관련 연구교육센터를 유치하고 전문인력을 육성하여 산업단지 활성화 도모(관련 계획 없음)

근로자 복지후생 지원

- 단지내 근로자 임대주택, 복지관, 탁아시설 등을 설치 또는 유치하여 근로자의 여가 활용을 지원하고,

- 주부들의 취업지원 도모. (추진 실적, 계획 없음)
- 산업단지 녹지·공원 및 관리기관 청사내에 건전한 체육시설을 확보하여 근로자의 체력향상을 도모하고 입주업체의 각종 행사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확보, 지원 계획 없음)

제2절, 현 관리체계와 관리권한

1. 국가산업단지의 관리체계

국가산업단지의 관리 체계는 다음과 같이 3단계 체계로 운영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산업단지 지정권자와의 법적, 업무적 관계는 제외하기로 한다.

- 지정권자 : 국토해양부장관-단지개발 계획 수립 및 실시권
- 관리권자 :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위탁받은 자-산업단지 관리권
- 관리기관 : 한국산업단지공단, 입주기업체협의회-산업단지 관리업무
(관리권자로부터 위임받은 업무)

1)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업무와 권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단지의 관리에 대한 다음 기본적 사항에 관하여 산업단지의 관리지침을 수립하고 고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 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및 집행에 관한 기준
- 관리기본계획과 산업단지의 개발 및 처분 등에 관한 다른 법령에 따른 계획과의 연계에 관한 사항
- 산업단지 관리업무에 필요한 사항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관리기관에 대하여 업무·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단의 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2)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업무와 권한

- 관리권자는 산업단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관리기관에 관리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 관리권자가 산업단지의 관리업무를 관리기관에 위탁할 때에는 입주계약체결 및 공장의 등록 등에 관한 관리기관의 업무수행능력을 고려하여 업무 위탁의 범위를 결정하여야 한다.
- 관리권자가 산업단지의 관리업무를 위탁한 때에는 위탁받은 관리기관 및 위탁업무의 내용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 관리권자가 관리공단 또는 입주기업체협의회의 설립을 인가한 때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산집법 제31조, 제32조 시행령 37조의2, 제58조의10, 제39조, 제41조)

3) 관리기관의 업무와 권한

산업단지 관리기관으로 지정된 한국산업단지공단이나 입주기업체협의회의 기본 업무와 자체 사업, 입주기업체 지원사업, 기타 유관기관 업무 등은 다음과 같다.

가. 관리기관의 기본 업무

관리기관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관리권자로부터 관리업무를 위임 또는 위탁받은 관리기관은 관리기본계획(변경 포함)에 관하여 관리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관리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수립해야 한다.

- 관리할 산업단지의 면적에 관한 사항
- 입주대상업종 및 입주기업체의 자격에 관한 사항
- 산업단지의 용지(이하 "산업용지"라 한다)의 용도별 구역에 관한 사항
- 업종별 공장의 배치에 관한 사항
- 지원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산업단지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관리기관이 관리기본계획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관리기본계획 승인신청서에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서를 첨부하여 관리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산업단지지정권자(국토해양부장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관리권자가 관리기본계획의 수립·변경 등에 관하여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20일 이내에 회신하여야 한다.

(시행규칙)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관리기본계획 수립, 변경 신청을 받으면 해당 신청이 관계기준에 적합한지를 검토하여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산집법 제33조, 동시행령 42조, 동 시행규칙 제31조)

나. 관리기관의 고유 사업

관리기관은 다음 사업을 한다.(한국산업단지공단 기준)

- 법 제2조제15호에 따른 산업단지의 관리
- 산업단지의 용지 및 시설의 매각·임대 및 사후관리

- 산업단지에서의 기반시설*의 설치·유지·보수 및 개량
- 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의 사업 활동 지원
- 산업단지의 개발, 조성, 분양, 임대 및 매각에 관한 사업
- 공장·지식산업센터 및 지원시설·산업집적기반시설의 설치·운영과 분양·임대 및 매각에 관한 사업
- 입주기업체의 노사협력 증진 및 인력수급에 관한 사업
- 입주기업체 근로자의 후생복지·교육사업 및 주택건설사업
- 입주기업체 근로자의 자녀들을 위한 보육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업
- 입주기업체의 생산성 향상 및 수출 촉진을 위한 사업
- 공장설립 관련 업무의 지원
- 공장의 이전·집단화를 위한 사업
- 공장설립 및 산업단지와 관련한 정보의 수집·보급 및 조사·연구
-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
- 경쟁력강화사업
- 입주기업체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다음의 사업
 - 산업집적촉진 및 지역산업진흥에 관한 사업
 - 산업단지 공동물류기반구축에 관한 사업
 - 해외산업단지와의 교류 및 협력에 관한 사업
 - 산업단지 안의 산업용지 및 공장등과 생산설비 등의 중개 및 그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
 - 취업알선, 산업단지 입주기업체의 원활한 인력수급을 위한 사업
 - 산업단지 및 입주기업의 지원을 위한 자금의 조성·운영 및 투자에 관한 사업
 - 토지의 취득·공급 및 시설의 임대와 관한 사업
 - 입주기업체 및 근로자의 교류증진과 해외구매자 등의 편의도모를 위한 전시장·회의장 등 각종 지원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업
 - 입주기업체의 구조조정 및 경영 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 위탁한 사업
 - 저탄소 녹색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생태산업 단지 구축에 관한 사업
 -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사업에 준하는 사업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업

다. 관리기관의 입주기업체 지원 사업

관리기관은 입주기업체를 위하여 시장정보제공, 에너지이용효율 개선, 에너지공급, 노사관계 증진, 직업 훈련 등 다음 지원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 종업원 아파트공급 등 종업원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업

- 용수공급사업, 산업재해예방사업 및 환경오염방지사업
- 교육·연수사업
- 전시장에 부대되는 사업
- 입주기업체 제품의 공동판매 및 구매사업
- 그 밖에 입주기업체의 수출촉진 및 생산성향상에 관한 사업

관리기관은 안전관리, 공해관리, 환경관리 등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안전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위험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 공해방지에 관한 사항
- 제1호 및 제2호와 관련된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조에 관한 사항

관리기관은 입주기업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지도를 할 수 있다.

- 공장시설물 및 공장작업장의 안전관리와 그 경비에 관한 사항
- 공해방지시설의 설치 및 점검 등 관리에 관한 사항
- 종업원의 복지증진을 위한 시설에 관한 사항
- 녹지의 조성 등 공장의 환경개선에 관한 사항
- 이 외에 산업단지의 안전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

라. 관리기관과 유관기관과의 협력

관리기관은 지방자치단체 및 중소기업진흥공단 또는 상공회의소 등 유관기관과 입주기업에 대한 다음 지원업무에 관하여 상호 협력할 수 있다.

- 공장설립 관련 업무 지원 중 공장설립에 관련된 각종 인가·허가 등의 절차에 대한 지원 및 그 지원업무의 위탁
- 사업의 추진에 따른 용지 및 손실보상업무의 위탁, 기반시설의 설치지원, 각종 인가·허가 등의 절차에 대한 지원
- 관리기관은 입주기업체 지원 등을 수행할 경우 필요하면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관기관에 필요한 서류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다.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진흥공단은 관리기관·입주기업체 또는 지원기관이 요청하면 경영 및 기술지도를 할 수 있다.

(산집법 제39조, 제39조의2, 제42조, 제43조, 제44조, 제45조, 45의13조, 시행령 52조의3, 제54,55,56조,56조의2, 제57조, 제58조, 제58조의2, 제58조의9, 10조)

마. 관리기관의 권한

관리기관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해당 산업단지의 공장 용지 및 공장건축물에 대한 부동산중개업을 할 수 있다.

산업시설구역의 산업용지 또는 공장등을 소유하고 있는 입주기업체가(분 할 포함) 5년 이내에 처분하려는 경우에는 산업용지 또는 공장등을 관리 기관에 양도하여야 한다.

관리권자·관리기관 및 사업시행자가 소유하고 있는 산업용지를 분할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리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입주기업체가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또는 사업개시의 신고 후에 소유하고 있는 산업용지(건축물이 있는 것을 말한다)를 분할하거나 그 공유지분 을 처분하려는 때에는 미리 관리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관리기관은 입주기업체 또는 지원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정 기간 내에 그 시정을 명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 는 경우 그 입주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입주계약을 체결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 내에 그 공장등의 건설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 공장등의 준공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
- 공장등의 준공 후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1년 이상 그 사업을 휴업한 경우
- 변경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거나, 입주계약을 위반한 경우, 산업용지 및 공장등을 임의로 임대하거나 처분한 경우(분할, 공유지분 포함)

입주계약해지, 취소 후 소정 기간 내에 처분, 양도되지 아니한 산업용지 및 공장등은 관리기관이 매수할 수 있다.

2. 관리권한의 위탁, 위임

또한 관리권한 위탁과 함께, 산업단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한국산업단지공단을 관리기관으로 지정하여 관리업무를 위탁하려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의견에 동의하는 절차에 따라 관리기관은 한국산업단지공단으로 위탁되었다.

이와 같은 관리권한 위탁에 관한 산업집적법의 근거 조항은 다음과 같다.

〈산업집적법 제51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이 법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관리기관 또는 공단에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시행령은 제4장 3절 참조

② 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관리권자

－관리권자로부터 관리업무를 위임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리권자로부터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공단 또는 제31조제2항의 산업단지관리공단

－관리권자로부터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제31조제2항의 입주기업체협의회

〈산업집적법 제31조(산업단지관리공단 등)〉

① 관리권자는 산업단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0조제2항에 따른 관리기관에 관리업무를 전부 또는 일부를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② 산업단지관리공단(이하 “관리공단”이라 한다) 또는 산업단지관리업무를 위탁받기 위하여 입주기업체로 구성된 협의회(이하 “입주기업체협의회”라 한다)를 설립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립요건을 갖추어 관리권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3. 관리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할 내용

관리기본계획은 국가산업단지의 관리에 기본 골격이며 관리기관이 수행하는 업무의 절대적 지침이 되는 규정인 바, 산업집적법 제33조에 의한 관리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할 내용은 다음과 같다.

－관리할 산업단지의 면적에 관한 사항

－입주대상업종 및 입주기업체의 자격에 관한 사항

－산업단지의 용지의 용도별 구역에 관한 사항

－업종별 공장의 배치에 관한 사항

－지원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산업단지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따라서 파주출판도시의 조성 목적과 이념의 구체적 실현과 사회와 산업 구조의 변화에 대응하여 요청되는 관리기본계획의 발전적 변경과 새로운 문화산업 정책의 도입과 합목적적인 운영의 재량권을 관리권자가 독자적으로 실행하기에는 일정 한계를 갖고 있는 상황이다.

제3절, 입주기업체 전환 절차

1. 파주출판도시의 관리체계

파주출판도시의 관리권은 지난 1998년 7월15일에 산업통상부장관이 문화관광체육부장관에게 그 관리 권한을 위탁함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관리권자가 되었다. 그러나 단서 조항으로 산업단지 관리에 기본 골격이 되는 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시에는 산업통상자원부와 사전 협의하여야 하고, 이와 관련된 고시 권한은 위탁의 범위에서 제외하였다.

- 관리에 관한 고시권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관리권자 : 문화체육관광부 단, 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시 산업통상자원부와 사전 협의하여야 함
- 관리기관 : 한국산업단지공단 (서울지역본부 파주지사)

2. 입주기업체협의회(관리공단 포함) 설립절차

1) 산업단지관리업무를 위탁받기 위하여 입주기업체로 구성된 협의회(이하 “입주기업체협의회”라 한다)를 설립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립 요건을 갖추어 관리권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2) (시행령)입주기업체협의회를 설립하려는 자는 설립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리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 창립총회의 회의록
- 정관
-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 산업단지 관리계획서
- 임원의 명단 및 이력서

3) 관리권자가 입주기업체협의회 설립을 인가한 때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4) 입주기업체협의회(이하 “관리공단등”이라 한다)는 법인으로 하고, 그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 5) 관리기관의 재산은 관리권자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는 양도하거나 담보 로 제공할 수 없다.
- 6) 관리권자는 관리공단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설립인가를 받은 경우
 - 설립요건을 위반한 경우
 -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내에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사업실적이 없는 경우
 - 설립목적 외의 사업을 한 경우
 - 설립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7) 관리권자는 입주기업체협의회의 설립인가를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산업단지의 관리업무를 위탁하거나 관리기관을 입주기업체협의회로 변경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8) 입주기업체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령)
- 입주기업체협의회는 일반회원과 특별회원으로 구성한다.
 - 일반회원은 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의 대표자로 하고, 특별회원은 일반 회원 외의 자 중에서 관리권자의 동의를 받아 입주기업체협의회의장이 임명하는 자로 한다.
 - 입주기업체협의회는 매 연도 개시일부터 2개월 이내에 정기총회를 개최하여야 하며, 필요하면 임시총회를 개최할 수 있다.
 - 입주기업체협의회의 회의는 회원의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주무관청”은 “관리권자”로 본다.

(법 제31조, 제39조, 시행령 제39조, 제40조)

제4장, 결론—창조적 산업단지를 위한 관리체계

제1절, 파주출판도시의 비전과 발전방향

1. 산업단지 조성 개념의 변화
2. 산업단지 관리 정책의 변화
3. 파주출판도시의 비전과 발전방향

제2절, 관리체계 전환 요건과 당위성

1. 파주출판도시 관리기관 지정 배경
2. 관리기관 전환의 전제와 요건
3. 현 관리기관의 한계와 관리업무의 변화
4. 입주기업체협의회 전환의 당위성

제3절, 관리기관 전환 방안과 운영 계획

1. 법적근거와 추진 방안
2. 입주기업체협의회 관리기관 전환에 필요한 조치사항
3. 입주기업체협의회 관리기관 전환과 대안
4. 전환 시기 검토
5. 관리기관 전환시 운영(설립) 계획

제4절, 입주기업체협의회 가입 성향 분석

1. 입주기업체협의회 가입 대상 기업 현황
2. 입주기업체 가입 동의 업체수 분석
3. 임대 입주기업 현황
4. 임대입주자 분류 기준 문제 검토

*참고 자료: 전체 입주기업의 가입 90% 이상 획득 여부 예비 검토

제1절, 파주출판도시의 비전과 발전방향

1. 산업단지 조성 개념의 변화

“도시는 인류의 가장 위대한 발명품이며, 지금까지 도시는 승리했다.”

미국 경제학자 에드워드 글레이저는『도시의 승리(Triumph of the City)』에서 도시를 이렇게 평가한다. 이에 따르면, 교통기술 및 정보기술의 발전에 따른 변화에 성공적으로 적응하고 시대적인 요구에 부합하는 상품과 지식을 끊임없이 창출한 도시는 승리하고 그렇지 못한 도시는 쇠락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산업단지도 집중적이며 광역적인 생산 중심지로서 국가 경제성장을 견인해 왔지만 사회와 산업이 구조 변화를 겪으면서 도약과 쇠락의 기로에 있다. 이제 대부분의 산업단지는 도시적, 문화적 기능의 도입과 통합이 절실해 지고 있는 추세이다. 출판산업단지를 출판도시로 개념화하여 단지 기능의 복합화와 융합과 입주자/생산자 중심의 지원시설을 확대, 유치하고자 하는 연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다.

-단지내 평면/면적 중심의 구조적, 행정적 단지관리 개념을 입체적/연계적 부가가치 창출 개념으로 관리보다는 운영 차원에서 관리되어야 한다.

-지식서비스업 중심의 창조적 문화산업 단지 기능을 살리기 위해 기능적 클러스터 구성을 목표로 유관 기업, 지원기관, 교육 연구기관을 유치하여야 한다.

-국가산업단지로서 산업용지의 배분과 대상 업체의 입주가 완성되는 시점에서는 용지와 용도 차원의 관리가 아닌, 산업의 생산성과 입주자의 편익과 단지의 지속성장을 위한 정책 지원과 운영 차원에서 관리되어야 한다.

2. 산업단지 관리 정책의 변화

산업단지에서 문화산업도시, 지역 컨텍스트에서 글로벌 문화도시, 물리적 시설보다 창조적 인적 자원이 풍부한 도시, 창조인력을 양성하고 교류시키는 도시, 새로운 문화 키워드를 창출하는 도시로 비전이 전환되어야 함.

파주출판도시의 클러스터 완성도는 매우 낮은 수준이며, 클러스터에 편입되어 있지 않은 외부기업들에 비해 절대적 우위를 점하고 있다고 단언하기 어려움. 성공한 산업 클러스터들의 경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주도하에 장기간에 걸친 지속적 개발을 통해 이루어졌다는 공통점을 지니며, 교육 및 연구 분야가 활성화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편의시설과 쾌적한 환경 및 주거시설이 확보되어 있음.

산업부문 중심의 접근에서 기능중심 접근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그간 우리나라에서 산업입지정책의 대상이 되는 산업을 한국표준산업분류체계에 따른 업종 중심으로 규정해 왔다. 그러나 지역산업정책의 대상이 산업부문(업종)보다는 기능(군) 중심으로 변화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경계가 모호해지는 산업환경의 변화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출판도시는 비도시지역의 산업과 비교하여, 중소기업이 다수를 차지하고 지식 창출기술기업이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는 특징을 지닌다. 산업집적지간에 나타나는 연계성과 다양성을 수용할 수 있어야 하며, 입주기업의 실제 수요나 요구사항을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

기본방향	산업부문 중심에서 기능중심으로 전환
제도개선 방향 - 관련법률·시행령·규칙·지침	① 산업입지 개념 확대(수평적→수직적) 및 유형 구분체계 개선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정의) - 산업입지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기능별계획기준) - 산업단지 지원에 관한 운영지침(기능별 지원기준) ② 서비스업 입주기준의 완화와 복합화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정의)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규정 신설) ③ 새로운 산업단지 지원기준 도입 - 산업단지 지원에 관한 운영지침

3. 파주출판도시의 비전과 발전방향

가. 출판도시의 목적과 기능의 재해석

파주출판도시는 국가산업단지로 규정되어 있으나 출판을 중심으로 한 지식 생산 및 서비스를 창출하는 문화산업 복합단지로서 여타의 국가산업단지와는 다른 차원의 미래 발전방향과 전략이 필요하다. 미래 지식 서비스 산업의 중심축이자 앞으로 등장하게 될 다른 문화산업단지의 발전 모델로서 파주출판도시가 나아가야 할 기본 방향에 대한 검토와 중장기발전계획 수립이 요구된다.

파주출판도시는 산업단지 법률에 따르는 산업도시이나 지식 콘텐츠 산업의 중심기지로서 문화산업도시로 나아가야 한다. 파주출판도시 계획이 입안되던 초기의 건설 이념과 계획안에 이러한 미래 발전방향이 내포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산업단지 법률의 여러 제약 요건들로 인해 문화도시로서의 정체성 확보와 활발한 문화콘텐츠 생산에 적지 않은 어려움이 있어 왔다. 하드웨어 측면의 성과 위에 새로이 문화도시로서의 정체성이 획득되기 위해서는 중장기적 관점에서의 비전과 발전방향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할 것은 도시의 성격을 출판 ‘산업’ 도시에서 출판 ‘문화’ 도시로 명백히 재규정하는 일이다. 또한 경기 북부, 서울의 외곽에 위치한 파주라는 지역적 한계에서 벗어나 보다 넓은 시야에서 파주를 글로벌 문화도시의 중심으로 놓고 도시 발전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한국 근현대사 속의 특수한 도시 만들기 실험에 대한 다층적 객관적 분석과 평가를 토대로 세계적 관점에서 도시의 정체성을 재평가할 때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파주출판도시의 독특한 실험이 보다 의미 있게 다가올 것이다.

문화 클러스터는 산업 클러스터와는 달리 문화적 활동의 다양성과 창조산업의 집적으로서, 교육의 기획 등 콘텐츠의 질이 핵심을 이루고, 공간 문화 같은 네트워크 활동을 만들어내는 구조가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며, 도시공간의 조밀도 및 공공 공간의 양과 질 등 경관이 중요한 요소이다.

나. 창조산업단지로의 변화

파주출판도시는 문화적 진보성과 철학, 공간에 대한 열린 해석과 상상력, 지식 생태계의 우수성이 강점이나, 수용성이 떨어지고 공공 공간 및 건축 전면의 활성화가 부족함. 도시 활동 측면의 수치가 낮고 일반 관람객을 유인할 수 있는 강력한 문화 프로그램 역시 부족하다.

공장 중심의 산업단지 모델로는 창조문화도시 및 창조경제로 나아갈 수 없는바, 공공의 문화가치를 생산하고 확장해 나가며 시민들의 문화적 요구에 부응하는 도시로 거듭나야 한다.

파주출판도시가 ‘출판문화 클러스터’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먼저 발전목표를 다양한 문화콘텐츠가 집적된 글로벌 문화도시, 창조도시로 설정하여 가능성을 확대하여야 하며, 출판인쇄 등의 제조업 기능과 문화콘텐츠 서비스 부문을 통합한 융복합 클러스터가 되어야 한다.

파주출판도시는 도시 건설 및 건축적 실험, 그리고 출판문화산업 집적화라는 성과에서 더 나아가 미래의 발전 동력이자 도시의 자산인 창조적 인력이 끊임없이 찾아오고 배출되는 곳으로 발전해나가야 한다. 젊고 창의적인 인재가 모여 생산적인 성과물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그들이 찾아와서 일하고 싶은 도시적 문화가 형성되어야 한다. 외부에서 업종별 전문 인력을 흡수하는 모델에는 한계가 있다.

도시 내에서 창조적 인력을 양성하고 교류시키는 장이 되어야 하고, 창의적 인재들에게 열려 있는 개방적인 도시가 되어야 한다. 출판은 지식과 담론 생성의 최전선에 있기 때문에 통섭형 인재 생산과 문화 교류의 좋은 터전이다.

동시에 지식 생산과 유통, 교육의 플랫폼이 되어야 한다. 어린이 관람객 중심으로 편중된 출판도시의 공간과 프로그램은 성숙한 시민을 위한 지성적 공간과 프로그램으로 확장되어야 한다. 문화 매니아층이 형성되어 반복적으로 방문하고 긴 시간 체류하며 사색하는 힐링 도시로 나아갈 때라야 문화적 수요를 따라

가는 도시에서 새로운 문화적 키워드를 창출하는 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다. 자기만의 색깔로 새로운 문화적 키워드와 담론을 만들어내는 도시, 거기에 파주출판도시의 미래가 있다.

파주출판도시 입주사들이 희망하고 그들이 꿈꾸는 도시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국가 지원체제가 강화되어야 하며, 파주출판도시내 입주사간 네트워킹 및 협력체제가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다. 창조산업단지의 특성

국토연구원에서 발간한 ‘창조산업 집적 현황과 지역연계전략’에서는 창조산업단지의 개념과 정책 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 창조성, 창조산업과 관련된 정책 및 지원은 각 지역에서 잠재력을 보유한 창조산업을 활용하는 방향으로 공간발전전략을 수립·강화
- 창조산업 활성화를 위한 관련 법규 검토 및 생산, 교류, 지원이 가능한 창조적 신공간을 조성
- 문화적 어메니티, 장소의 다양성, 첨단서비스 체계, 거주여건, 될 수 있는 문화·환경 등 우수한 질의 창조적 생활공간 조성
- 정부, 관 주도 지역개발에서 탈피하여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협력적·융복합적 지역개발체계 파트너십 구축

현 정부는 ‘일자리 중심의 창조경제’를 5대 국정목표 중 하나로 제시하였다. 5대 국정목표와 21개 국정전략, 140대 국정과제를 제시하면서, 그 가운데 일자리 중심의 창조경제는 ① 창조경제 생태계를 조성하여, ②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성장동력을 강화하며, ③ 중소기업의 창조경제 주역화와, ④ 창의와 혁신을 통해 과학기술을 발전시키는 것을 중심으로 제시하였다.

한편 창조산업이라는 용어는 호주의 창조국가(Creative Nation, 1994) 보고서에서 제시된 후, 영국과 유엔을 중심으로 발전되었다. 2001년 영국정부의 보고서에서는 창조산업의 개념을 창조성, 기술과 재능, 부의 창출, 지적재산권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는 산업으로 정의하면서 문화산업을 포괄하는 용어로 영역을 확대시키게 된다. 2004년 유엔무역개발협의회(UNCTAD)에서는 창조산업의 개념을 기존 문화산업 범위를 확대하여 현물이나 무형의 지적 혹은 예술적 서비스를 생산하기 위해 창조성과 지적자산이 주로 투입되어 재화나 서비스의 창조, 제작, 배급의 순환되는 과정으로 정의하였다.

유엔무역개발협의회(UNCTAD, 2010)는 2008년과 2010년에 창조경제 보고서를 발간하여 창조성, 창조경제, 창조산업 등의 관계를 설명하였다. UNCTAD에 따르면 창조성에 대한 단일한 정의는 어렵지만, 인간 활동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분야를 통해 창조성을 설명하고 있다. 상상력과 독창적 아이디어를 생성하는 예술적 창조성, 문제해결을 위한 과학적 창조성, 비교우위를 선점하려는 경제적 창조성 등이 있는데, 이들 창조성이 기술적 창조적 창조성과 서로 연계되어 있으며, 이들 창조성이야말로 창조경제의 필수요

소임을 지적하고 있다. 창조경제는 창조적 자산에 기반을 두어 진화하는 개념으로 잠재적인 경제적신 성장과 발전을 만들어내게 된다.

UNCTAD의 보고서에서는 창조경제라는 용어가 지난 10년여 동안 논의되어 온 주관적 개념이라는 점을 지적하면서도, 경제와 문화가 서로 분리되어 있지 않다는 점, 경제와 문화가 상호작용하면서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끌 수 있다는 점 등을 제시하면서 경제성장의 원천, 일자리 창출 등 실현가능한 발전전략의 하나로 창조경제를 제시하고 있다. *인용 및 재정리: '창조산업 집적 현황과 지역연계전략(국토연구원, 2012 박경현, 류승한, 박정호)

제2절 관리체계 전환 요건과 당위성

1. 파주출판도시 관리기관 지정 배경

파주출판도시의 관리기관이 누가 되어야 하는 문제는 조성 단계에서부터 논의되어 왔고, 1997년 단지 지정 이후 1998년 산업통상자원부가 관리권한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위탁하는 시점에서 상당한 토론과 정책 검토를 통해, 잠정적으로 한국산업단지공단으로 지정하게 되었다. 이 당시 이같은 정책 결정의 배경에는 산업단지 조성 발의자인 '파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사업협동조합'의 강력한 요청에도 불구하고, 산업용지 분양과 입주기업 모집의 전문성을 이유로, 그리고 관리권 이원화 문제가 지적되었음에도 당시 관리권자의 여러 정책적 판단에 의한 것이었다.

이후 2007년 1단계 단지 완성을 선언하는 시점에서 조합 총회의 결의에 따라 1단계 입주기업을 회원으로 하는 '출판도시입주기업체협의회'를 설립하여 관리기관이 되고자 했으나, 국회 관련 위원회의 동의와 지원에도 불구하고 산업통상자원부의 산업집적법에 의한 관리 방침과 민간기구에 의해 공적 업무를 위탁하기에는 관리업무 수탁 역량 검증이 필요하고 당시 2단계 단지 분양이 진행되는 시점이라는 관리권자의 판단으로 무산되었다. 법적으로 자동 승계되는 입주기업체협의회 설립 대신에 '체'라는 단어를 빼고 입주기업체협회를 설립하게 된 것이다.

관리기관은 입주기업 모집, 계약 업무외에 입주기업 편의 및 경영 지원과 단지의 기반시설, 지원시설 등 단지 조성 목적 실현을 위한 제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하나, 현 한국산업단지공단은 입주계약과 관리기본 계획에 따른 용지 관리라는 행정 사무적 업무 외에는 뚜렷한 발전 계획이나 단지 관리를 위한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입주기업을 위한 편의지원 사업과 단지 활성화를 위한 문화 프로그램은 입주기업 협의회에서 맡고 있어 한 단지에 두 개의 조직이 존재하는 기현상을 보이고 있다.

2. 관리기관 전환의 전제와 요건

앞에 제3장에서 부터 제기된 현 관리기관의 전환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여건 검증과 관리 방안은 다음과 같다.

파주출판도시의 조성 목적과 사업, 산업단지의 합법적 관리를 수행해 나갈 수 있는 조직은 다음과 같은 역량과, 도덕성, 통제력, 문화 이해와 비전을 보유해야 하며 특히 단지 입주자들의 구심적 리더십과 공동체 의식을 공유할 수 있어야 한다.

- 입주기업협의회 및 관련 조직(조합)의 관리업무역량 보유 여부 확인
- 법적 공적 수탁업무를 담당할 투명성과 도덕성 확보 여부 검증
- 단지 조성 목적과 기능을 저해, 훼손할 경우 사전사후 통제 장치 구축
- 창조산업단지로서 국가문화정책을 수용하고, 중장기 마스터플랜과 미션 을 수행할 역동성과 비전 보유
- 지속성장 가능한 단지로 관리, 운영할 입주기업체의 공동체 의식 보유

과주출판도시 최초 발의부터 오늘에 이르기 까지 20여년간 헌신적으로 기획, 정책 개발, 상위 환경의 해결, 조합원 결성과 공동체 형성 등 출판도시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온 사업협동조합 이기웅이사장은 이 문제에 대해 이렇게 말하고 있다.

“한국산업단지공단이 관리해왔던 그동안의 산업단지 관리지침들은 엄격했으며, 실은 그래야만 한다. 원칙에 따라 엄격해야 하지만, 그러나 한편 현실에 맞도록 유연해야 한다. 국가의 여러 혜택 속에서 올바른 산업활동을 약속한 입주자들이 입주한 후 약속을 제대로 지키는가를 감독하는 일뿐만 아니라, 국가의 입장에서 당초의 취지대로 중소기업체들이 입주한 다음 제대로 산업활동을 하는가, 도와줄 일은 없는가를 수시로 살펴보고 지원하는 일을 해야 하는 것이 관리기관일 터이다.

한국산업공단이 아니라 입주기업(체)협의회가 관리기관이 돼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왜 그래야만 하는가? 출판단지는 ‘문화단지’ 이므로 일반 산업단지와 크게 구분되어야 한다.

이 도시의 기획단계에서부터 지켜온 “산업단지의 무미건조한 조성형태에서 벗어나, 따뜻하고 풍성한 문화산업도시로서의 출판도시를 지향한다”는 취지를 살리고, 최근 출판업이 제조업에서 서비스업으로 바뀌면서 출판산업의 존재양식이 새로운 시대에 맞도록 변화가 요구되고 있는 것이다. 당연히 문화도시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관리지침이 옛 형식으로부터 변해야 한다. 변하지 않는 한 서로가 충돌해 (관리지침과 입주자 사이에) 견딜 수 없는 지경에 이를 것은 뻔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 도시의 “관리권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관리기관은 입주기업체협의회”로 하루빨리 정착되고, 관리권자와 관리기관이 머리를 맞대고 관리지침을 정비할 뿐 아니라, 국가산업단지로 지정하고도 방치해 놓고 있는 실태를 조리 있게 정리정돈하여 정부를 향해 시정을 요구하는 일을 준비해 왔으며, 또 그렇게 해야 한다. 편의를 위한 관리뿐 아니라 출판단지 조성 초기에 수립했던 건축설계지침, 도시의 사인지침, 조경지침 등을 지키게 하고, 입주자들의 부당한 활동이나 편법과 투기의 대상으로서의 재산권행사 등을 제어할 길이 없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이 도시에서 성공적인 생산활동이 이루어지도록 돕는 여러 가지 긍정적인 프로그램을 만들어낼 수 없기 때문이다.

과주출판도시의 관리와 운영은 한순간 한순간 입주기업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한순간을 소

홀히 하면 순식간에 가치 소멸을 가져온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3. 현 관리기관의 한계와 관리업무의 변화

한국산업단지공단은 산업단지를 관리하는 전문기관으로서 ‘경제사회 및 산업구조의 변화에 맞추어 끊임없는 도전과 혁신으로 창조융합산업의 집적화와 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지원하겠다’는 미션과, 제조경제와 지식경제를 이어 창조경제를 선도하는 기관으로 ‘산업, 기술, 문화가 융합하는 혁신산업단지 창조기관’이란 비전을 내세우고 있다.

이와 같은 미션과 비전 설정은 산업집적법에 의한 관리기관의 당연한 소임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의 지휘, 감독을 받으며 관리권한을 위임받은 기관임을 밝히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국가산업단지 조성의 궁극적 목적 수행과 국가산업 발전의 기반 자산이라는 측면에서, 산업단지는 사회와 산업구조의 변화 추세에 대응하여 지속 성장이라는 보다 큰 과제를 수행하고 성취해 나가야 하는 책무가 주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산업단지 조성에 이어 그 관리업무 뿐 아니라 효율적인 운영과 입주기업에 대한 지원 사업이 보다 중요하다.

단지 관리업무는 법에서 정한 규제와 제도라는 틀 안에서 충실히 수행하는 관료적 업무이고, 단순 사실적 행위인 행정작용이며, 업무는 사전 사후 지휘, 감독이란 통제를 받게 되는 업무인 바, 창의적이거나 역동적이기 보다는 획일적이며 관례적이며 보수적인 업무이다.

협동화사업으로 단지 개발과 조성을 발의한 조직이, 조성, 분양 등 법적 통제와 지원이 필요했고 법적 조직체의 관리가 불가피했던 단계에서 진척되어 이제 완성 시점에서는 위에서 말한 관리업무체제에서 변화하여 운영 체제로 전환되어야 하는 단계에 이르렀으므로 사업 발의자가 최초 개발 목적을 더 성숙시키고 발전시킬 당연한 권리와 의무를 가져야 하는 것이다.

〈현 관리기관 산단과 입주기업협의회/조합의 역할과 실적〉

개발 : 조합(업무 내용 : 협동화사업계획서 및 단지관리계획에 따름)

관리 : 역할 분담 형태

조성계획 수행, 분양, 입주 업무

업무 내용 : 단지관리계획에 따른 분양, 입주 관리

업무 수행 : (역할 분담)

—산단 : 관리지침 및 관리계획에 따른 사무 및 행정 지원

-조합 : 입주자 모집 및 추천, 공공시설 유치, 건축심의 등 자율적 도시/단지조성 관리, 마스터플랜 수립, 분양 수탁대행 등

입주기업 지원사업

- 업무 내용 : 복지후생 지원(임대주택, 복지관, 탁아시설, 체육시설 등)
- 업무 수행 : 입주기업협의회(산단은 추진 실적이나 계획이 없음)
- 수행 실적 : 단지 청소등 도시관리, 시설공동관리, 방문객투어, 책방거리 조성, 공동직장보육시설 운영, 문화사업(과주북소리축제) 등

단지 특성화 사업

- 업무 내용 : 출판문화진흥사업, 아시아출판문화정보센터 운영 등
- 업무 수행 : 출판도시문화재단, 출판도시입주기업협의회

관련기관 개요(2014년 12월 현재)

- 출판도시입주기업협의회 : 인력 13명, 예산 23.7억원
- 과주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사업협동조합 : 인력 15명, 예산 16억원
- 과주출판도시문화재단 : 인력 19명, 예산 36억원
- 한국산업단지공단 과주지사 : 인력(순환) 지사장 외 1인, 사업예산 없음

<입주기업협의회 조직도>



책방운영(과주출판도시책방)-과주출판도시휴게소 책방 운영 | 홍보 리플렛 배포 및 안내
홍보, 기획, 경리-각종 회의 진행 | 경리, 인사, 총무 | 회원 관리 | 홈페이지 관리 | 언론 홍보 | 축제 및행사 기획
단지관리-주차계도 및 단속 | 쓰레기 처리 및 청소 관리 | 효율적 도로 관리 | 갈대샛강 보전 관리 | 옥외광고물 관리 | 전화 번호 관리 | 건설 관리 | 기타 단지 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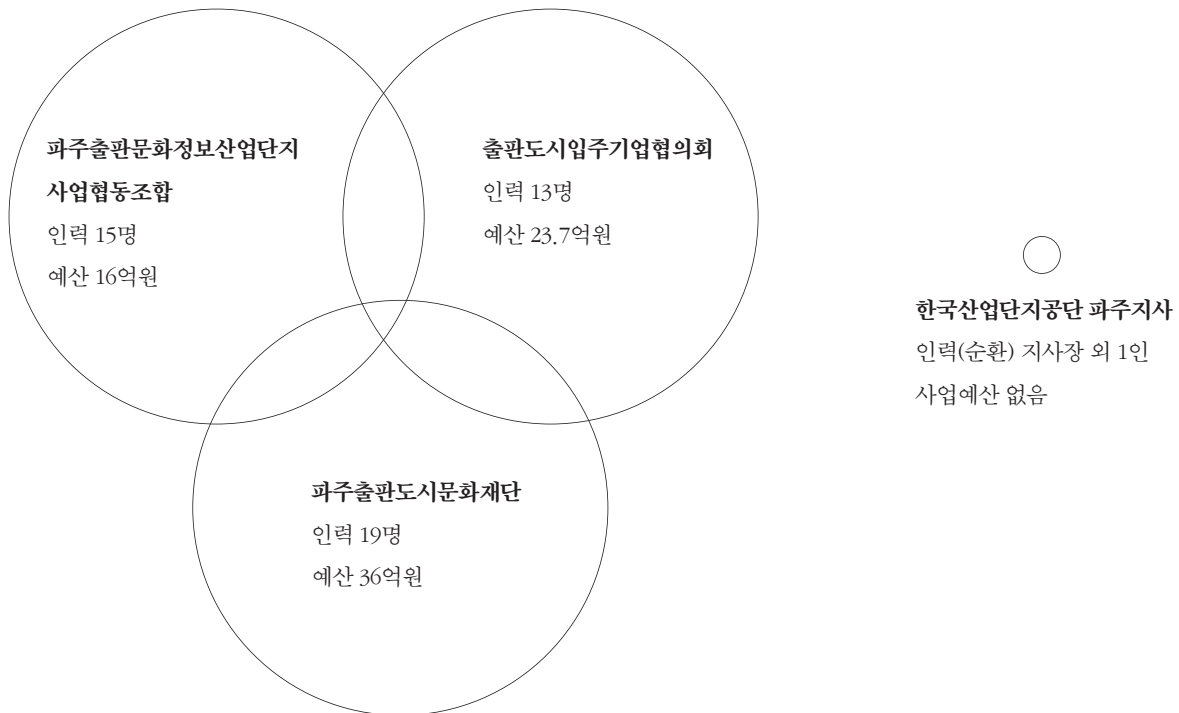
버스운행—서틀버스 운행 | 차량 유지 및 보수 | 이벤트 행사 지원 | 회원사 버스 지원
출판도시 투어—투어, 견학 상담 | 해설사 관리 | 해설사 교육 | 투어프로그램 운영 | 견학 홈페이지 운영
공동직장보육시설—보육시설 신축 | 수요조사 | 위탁업체 선정 | 보육시설 운영 | 원아 모집

<입주기업협의회 사무국 인력>

사무국장 1명 | 차장 1명 | 과장 1명 | 주임 1명 | 점장 1명 | 기획위원 1명 | 도시관리 3명 | 총인원 9명

위와 같이 단지 조성과 관리에 있어 실제 현 관리기관의 역할과 수행 실적을 보면 분양, 입주 업무의 단순 행정과 절차상 사무처리 기능 외에 출판도시의 조성 목적과 그 발전을 위해 기여하거나 향후 추진할 기능과 계획은 전무한 실정임. 입주자 모집과 공공시설의 유지, 입주기업을 위한 각종 지원 사업과 문화 산업단지로서의 특성화 사업과 도시운영 프로그램은 거의 조합과 입주기업협의회에 의해 수행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이제 1단계 완성에 이어 2007년부터 시작된 2단계 사업도 분양 입주 계약이 115산업필지 중 110개 업체가 계약을 마쳐 95%이상 체결되고, 2014년 11월 현재 입주 9개 업체, 시공중 23업체, 설계 심의 및 협의 중 46업체등 70% 이상이 입주계약을 수행 중이며, 2015년도말까지는 90% 이상 준공될 것으로 예상하는 바, 관리기관으로서 산단이 실제 수행해야할 업무는 입주 사후관리(산업집적법과 관리계획에 의한 사후관리와 지원사업)이나, 사후관리는 법적 규정과 관리 매뉴얼에 의한 단순 사무에 그치며 지원사업이나 도시/단지 특성화 사업에 대해서는 추진 계획이나 지원 예산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앞으로도 산자부나 산단에서 이를 수행할 정책이나 예산을 확보할 계획이 없는 상황이다.



4. 입주기업체협의회 전환의 당위성

관리기관의 형태는 현 한국산업단지공단 외에 특정 법에 의한 산업단지관리공단과 입주기업이 모여 결성하는 입주기업체협의회가 있으나, 문화산업진흥법 개정에 의한 관리공단 설립은 입주기업체협의회 설립이 불가능할 경우의 제2차 대안으로 가정하고(법 개정 전제, 장점은 입주기업 90%이상 가입 조건이 없음), 여기에서는 입주기업체협의회 설립 중심으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가. 단지 특성화 관리 방향

현행 법규와 산업진흥 정책의 테두리 안에서 필요한 통제와 규제를 하되, 행정의 재량권을 획일적으로 남용하지 않고, 창조적 문화산업단지 완성을 위한 합목적적 발전적 통제, 요령있는 운영과 선도(先導)적인 규제를 할 수 있는 관리 방안을 갖추어야 한다.

나. 관리기관 입주기업체 전환의 요건 형성과 당위성

과주출판도시 조성 당초 목적 구현을 통해, 단지의 지속 성장과, 역동적이고도 전문적인 산업단지 관리의 창조적 전형(典型)을 실현할 수 있도록, 최초 발의 및 개발자인 협동화사업자에게 관리기관의 역할을 맡겨야 함.

사업 완성 단계의 시기성(時機性)

1단계 완성, 2단계 입주기업 계약/분양 완료, 2단계 70% 진척(준공입주 및 시공중, 설계 기준)으로 완성 단계에 이르고 있음.

현 관리체계의 한계성(限界性)

산업단지공단의 문화산업에 개한 이해 부족과 경직된 일률적 체제로, 입주 후에도 지속적으로 오랜 기간 가꾸어져야 하고 다듬어져야 하는 창조적 문화산업단지 완성에 저해(阻害)요인이 되고 있음.

자율적 관리 능력 성숙성(成熟性)

1991년 설립한 1,2단계 사업협동조합의 단지 조성 실적 및 2003년에 설립한 출판도시문화재단의 활동, 2007년에 설립한 입주기업협의회의 공동체적 활동 등 관련 법규 및 국가정책 이해 수용과 운영, 사후관리 등에 노하우 축적 및 전문인력 보유 등 문화단지 공동체로서 자율성이 형성되어 있음.

지속성장 미래 지향성(志向性)

이제 출판도시는 변화하는 사회 및 산업구조에 대응하고 예비해 나갈 수 있도록 창조적 문화산업단지를

지향하는 비전과 철학을 담을 수 있는 민간 주도형의 융통성 있는 관리가 요청되고 있음.

이상과 같은 단지 관리기관 전환 여건 성숙과, 특히 단지 조성 단계에서 실현한 위대한 계약, 선한 계약 등에서 보듯, 이미 입주업체들은 문화공동체로서 자율적으로 단지 조성과 세계적 건축물 성과와 공간 문화를 이루어 낸 바 있으므로, 비전문 분야이면서 일률화된 현 산업단지공단의 관리 정책, 경직된 인력, 타성적 업무의 관료적 지배와 통제를 벗어나 자율성과 독창성에 의한 세계적 문화산업단지의 모델을 실현해 나갈 수 있도록 관리기관 전환은 필연적으로 요청됨

〈참고 1) 관리기관 업무 민간위탁의 정당성〉

관리업무는 관련 법과 정책의 구체화에 따른 사무의 집행이며,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사무로서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 사무 중 국가와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단순 사실 행위인 행정작용 사무 → 산업집적법, 령, 규칙, 지침, 관리기본계획 등
공익성보다 능률성, 전문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 입주기업의 현장성, 즉시성, 이해도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 출판문화, 정보산업 등 문화산업의 특성 이해
입주기업 경영과 직결된 행정사무 → 입주기업체의 경영과 산업활동에 직결

행정기관은 위와같은 업무에 해당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 등을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할 때에는 민간위탁을 하여야 한다.(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1조)

행정기관이 사무를 민간 위탁하였을 때에는 필요한 사무처리지침을 시달하고, 그 처리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는 바, 이는 산업입지법 및 산업집적법의 관련 규정과 단지관리기본계획과 관리지침에 의해 업무의 방향과 내용, 의사결정의 한계, 사전 사후 협의 및 통제와 감사 등 적절한 규제 조치와 안전장치가 이미 명시되어 있는 상태이다.

위임 및 위탁기관은 수입 및 수탁기관의 수입 및 수탁사무 처리에 대하여 지휘·감독하고, 그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참고 2) 관리기관 지정 배경과 여건 변화〉

과주출판도시의 관리권은 지난 1998년 7월15일에 산업통상부장관이 문화관광체육부장관에게 그 관리 권한을 위탁함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관리권자가 되었다. 그러나 단서 조항으로 산업단지 관리에 기본 골격이 되는 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시에는 산업통상자원부와 사전 협의하여야 하고, 이와 관련된 고시 권한은 위탁의 범위에서 제외하였다.

또한 관리권한 위탁과 함께, 산업단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한국산업단지공단을 관리기관으로 지정하여 관리업무를 위탁하려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의견에 동의하는 절차에 따라 관리기관은 한국산업단지공단으로 위탁되었다.

따라서 파주출판도시의 조성 목적과 이념의 구체적 실현과 사회와 산업 구조의 변화에 대응하여 요청되는 관리기본계획의 발전적 변경과 새로운 문화산업 정책의 도입과 합목적적인 운영의 재량권을 관리권자가 독자적으로 실행하기에는 일정 한계를 갖고 있는 상황이다.

-1998년 정책 결정 당시 산업단지공단을 관리기관으로 지정함으로써 갖는 장점은(입주 업무 용이) 곧 입주기업체협의회가 지닌 단점을(입주기업체 동의 90%) 해결할 수 있는 것이었으나, 현 시점에서 입주 업무는 완료되었고, 입주계약이 완료되었음은 산업집적법에 의한 90%이상 가입은 이미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음.

-또한 산업단지관리공단이 갖는 단점은(조성 목적 구현 한계성과 감독의 이원화) 곧 입주기업체협의회가 갖는 장점(관료적 관리 배제, 일원화 가능, 조성 목적 구현 주체, 산업계와 정부관서와의 소통)으로 해소되는 것인바, 위 입주기업체의 단점이 해소되는 현 시점에서 산업관리공단의 단점을 해소하고 입주기업체의 장점을 살려야 하는 것은 필연적 과제임. 또한 관리비용 부담 등 재정자립계획 문제는 관리권자인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국가산업단지 관리와 운영 목적으로 예산을 지원하는 것으로 해결될 수 있을 것임.

-2007년 입주기업체협의회의 설립으로 관리기관이 되고자 했으나, 당시 추진여건과 환경이 여의치 않아(업무 역량 및 관리능력 미검증, 공적 지위 부여 여부 추후 검토) 입주기업체협의회의로 변경되었지만, 이제 위 1, 2 사안이 해소되는 단계에서 법적 관리기관으로 전환하여 관리권자 문화체육관광부-관리기관 입주기업체협의회의라는 일원화 체계를 갖추어야함.

제3절 관리기관 전환 방안과 운영 계획

1. 법적근거와 추진 방안

관리권한 위탁에 관한 산업집적법의 근거 조항은 다음과 같다.

〈산업집적법 제51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이 법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관리기관 또는 공단에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동법 시행령 제59조(권한의 위임·위탁)〉

③ 법 제31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4항 또는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산업단지에 대한 법 제2조제15호에 따른 관리업무를 공단에 위탁한다.

④ 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에 따라 지정된 국가산업단지 대하여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로서 그가 직접 관리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국가산업단지에 대한 관리권한을 그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2. 입주기업협의회 관리기관 전환에 필요한 조치사항

- 관리권자 문화체육관광부의 정책 결정 후 산업통상자원부와 정책 협의
- 과주출판도시입주기업협의회 명칭(입주기업체협의회) 및 정관 변경 인가 신청, 문화체육관광부의 승인에 따라 변경 등기
- 관리기본계획 변경 및 관리기관 지정 고시
- 한국산업단지관리공단으로부터 관리기관 권한 승계 및 업무 인수.

3. 입주기업체협의회 관리기관 전환과 대안

(제안) ‘과주출판도시 입주기업체협의회’ 설립 인가

산업집적법 제51조 및 동법 시행령 제59조 3항과 4항에 의거하여 관리권자가 관리기관을 현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법 제30조2항 및 법 제31조 2항에 따라 인가할 과주출판도시 입주기업체협의회(현 입주기업협의회 정관 변경 인가)에 관리권한을 위임하여 관리기관으로 지정하고자 함을 요청.

단, 입주기업체협의회 설립 동의/가입 90% 이상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대안)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문화산업단지관리공단' 설립

문화산업진흥법에 파주출판도시를 문화산업단지로 규정하고, 문화관광체육부장관이 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권한을 산업집적법 제51조 및 동법 시행령 제59조 3항과 4항에 의거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위임받는 것으로 규정하여 문화산업단지관리공단 설립. 단, 협의회와의 차이점은 입주기업 90%이상 가입 조건이 없으나 관련 법률에 설치 근거 규정이 필요함.

4. 전환 시기 검토

입주기업체들의 공동체 의식을 확고히 하고 효율적인 도시관리와 공공시설 및 지원시설 유치 등 단지관리계획을 목표대로 수행하려면 빠를수록 바람직하며(늦어질 경우 조합 협동화 의식 해이 및 자사 이해관계 위주로 참여하려는 경향이 우려됨), 특히 2단계 완성 이전에 법적 관리기관으로 전환되어야 결속력 이탈 등을 방지할 수 있으므로 2015년말 이내에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함

5. 관리기관 전환시 운영(설립) 계획

가. 예산 확보 계획/재정자립계획

- 관리권자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관리권자로서 국가산업단지 관리와 발전 운영을 위한 정부 예산 지원 및 문화창조산업 정책 지원 예산 확보
- 입주기업체협의회와 합병할 예정인 조합 자산 운용(임대 사업등)등 수익사업과 입주기업협의회 예산 통합
- 단지시설관리공사 설립하여 수익자부담 원칙하에 시설 관리 전담.

나. 관리기관 전환시 조직, 인력 계획

〈조직 구성〉

회장-관리권자의 승인 사항(공적 업무 지휘에 적합한 인사/특별회원 영입)

이사회-관련 전문가 다수를 사외이사로 보강

감사—1인은 외부 관련 전문가 영입

출판도시성장위원회—정책 자문과 도시 마스터플랜 수립 등(국토개발, 산업집적화, 문화전략, 도시계획, 건축, 문화사업 등 관련 전문가 10인 내외 구성)

업무 부서(3개 본부 및 실무 팀제 구성)

도시경영본부—관리기본계획 등 도시 운영정책 수립과 관리권자 위임 업무, 협의회 운영업무, 대외업무 및 도시 문화특화 사업 등

기업지원본부—입주업체 관리 및 민원처리, 지원시설 설립 및 운영과 지원 사업, 책방거리 등 입주기업 산업활동 지원

단지관리본부—단지 기반시설 및 공동시설 유지관리, 입주기업 시설물 관리 지원, 환경과 생태 보존 사업

〈전문 인력 구성〉

현 입주기업협의회와 협동조합의 조직과 업무를 통합하여 입주기업체 업무 별로 재 구성함을 원칙으로, 추후 별도의 조직별 직무 분석과 경영성과 평가를 통해 적합한 조직 계획을 수립함.

현 양 조직의 인력을 모두 승계 채용함을 원칙으로, 직무 분석과 인사 평가를 통해 재배치하되 초기 정원은 30명 내외로 하고 추후 도시 완성과 발전 추세에 따라 조정함.

—입주기업협의회 : 회장, 사무국장, 행정 및 관리 정규직과 계약, 용역직

—협동조합 : 이사장, 상무이사, 2실 체제, 정규직과 계약직

〈관리기관 전환 사전, 사후 정책 검토〉

파주출판도시는 창조문화, 창조산업 분야의 전문적이고 특화된 단지이면서 국내에서도 가장 성공적인 산업단지로 평가받고 세계적으로도 출판문화 및 집단 건축의 모델로 인정받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단지 관리권자이면서 국가 문화정책의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와는 법적 제도적 연계성, 즉 연결고리가 구체화되어 있지 않은 바, 이 기회에 국부적이고 제한적인 사업과 정책 지원 구도를 탈피하여, 관련 법에 의한 관리권과 정책 집행권을 획득할 정책 사슬과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 강구가 요구됨

—문화산업진흥법 제24조(문화산업단지의 조성)에 의거, 기 조성된 파주출판도시를 문화산업단지로 지정(산자부는 단지 조성권과 관리권만 갖고 정책과 예산 지원 권한은 갖고 있지 않으므로 중복 논란의 소지 없음)하여, 관리기관 지정 등의 명분과 권한을 가질수 있도록 법(시행령)조항 일부 보완 검토.

—문화산업진흥법 제28조(문화산업진흥지구의 지정 등)에 의거, 경기도지사에게 파주출판도시 일원(향후 팜시티 구상 지역 포함)을 문화산업진흥지구로 지정하도록 유도.

제4절, 입주기업체협의회 가입 성향 분석

관련 법률 규정

〈제31조(산업단지관리공단 등)〉

② 산업단지관리공단(이하 “관리공단”이라 한다) 또는 산업단지관리업무를 위탁받기 위하여 입주기업체로 구성된 협의회(이하 “입주기업체협의회”라 한다)를 설립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립요건*을 갖추어 관리권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시행령 제38조(관리공단 등의 설립요건)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산업단지관리공단(이하 “관리공단”이라 한다) 및 입주기업체협의회의 설립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 3. 23)

- 관리할 산업단지의 면적 또는 입주기업체의 수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일 것-> 입주기업체의 수 충족.
- 산업단지관리능력 및 관리에 소요되는 재정자립계획이 있을 것
- 입주기업체협의회의 경우에는 해당 산업단지 입주기업체의 90퍼센트 이상이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을 것.

③ 관리공단 및 입주기업체협의회(이하 “관리공단등”이라 한다)는 법인으로 하고, 그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⑥ 관리권자는 제2항에 따라 입주기업체협의회의 설립인가를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산업단지의 관리업무를 위탁하거나 관리기관을 입주기업체협의회로 변경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입주기업체협의회 가입 대상 기업 현황

가. 1단계 현황

- 입주기업 총계 : 138개사(자가입주기업 131개사, 임대입주기업 7개사)
- 입주기업협의회 가입 현황 : 122개사(88.4%)가입, 미가입 : 16개사(임대입주기업 10개사 모두 미가입)

나. 2단계 현황

- 입주기업 총계 : 107개사 입주계약 (2014.11월말 현재) *분양대상 산업용지112개
- 입주기업협의회 가입 계획 : 현재 협동 조합원 자격이며 적정 시점에 총회 의결로 입주기업협의회에

전사 가입 예정

* 가입 근거 : 2단계 협동화사업 추진 이행 계약서 : 제17조(기타사항) 2항 “을”(협동화 사업자 조합원)은 파주출판도시의 성공적인 건설을 위해 조합 총회 및 이사회에 결정 사항을 준수한다.

2. 입주기업체 가입 동의 업체수 분석

가. 자가입주기업 (전체 임대입주기업 포함) 기준

- 동의/가입 대상기준 입주기업 총수 : 245개사(1단계 138개사+2단계 107개사)
- 입주기업체 설립 요건 동의 최소 업체수 : 221개사 이상(245개사×90%)
- 가입 동의 입주기업 산출(예상) : 229개사(93.5%) 가능(1단계 122개사 + 2단계 107개사)

협의회 미가입 입주업체 16개사는 현 시점에서는 전부 제외함(단, 입주기업체협의회가 관리기관이 되었을 경우 단지 관리와 운영상 여러 유리한 장점을 이해시켜 동의하도록 설득)

현 상태에서 2단계 입주기업의 경우 조합 총회나 이사회 결의에 의해 전 입주기업의 동의를 구할 수 있으며, 1단계는 이미 입주기업체협의회 설립을 전제로 가입하였던 입주업체이므로 입주기업 총 245개사 중 229개사의 동의를 얻어 전체 대상 기업의 90% 이상(93.5%)의 법적 요건을 갖추 수 있으므로, 2단계 입주기업 조합 총회 결의를 거치면, 별도의 동의 절차를 구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절차상 입주기업의 별도 개별 동의가 필요할 경우, 관리기관의 공적 지위를 갖는 입주기업체협의회 설립을 열망하여온 조합과 입주기업협의회 지도부의 리더십에 의한 설득과 문화산업진흥법 등에 의한 출판도시 조성 목적을 달성하려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정책 의지(관리권과 관리기관 일원화, 단지관리 예산지원)에 의해 협동화사업을 실현한 최초의 문화적 공동체로서 국가정책 지지와 참여의식을 되살려 90% 이상의 동의가 무난히 가능할 것으로 전망됨.

3. 임대 입주기업 현황

가. 1단계 현황

- 전체 임대입주자 : 7개사
- 부분 임대입주자 : 194개사(산단 통계 2013년말 기준, 협의회 파악 2014년 9월말 현재 기준 257개사)

나. 2단계 현황

현재 임대 입주기업 없음(일부 임대 계약 진행 중)

4. 임대입주자 분류 기준 문제 검토

가. 임대입주기업 현황과 문제점

임대자를 입주기업체협의회 가입 대상으로 볼 경우 다음과 같은 임대 계약(무계약 입주 포함) 내용과 입주기업과 임대자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임대자 분류 기준을 정해야 하며, 필요하다면 이를 위해 입주기업 임대 현황에 대한 전수 세밀 조사가 선행되어야 함. 단, 임차입주기업이 임대자의 건축물 전부를 임대하였을 경우 그 임차자는 입주기업과 동등한 자격을 인정하여 입주기업협의회, 혹은 입주기업체협의회 가입 대상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함.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례를 검토하여야 함.

- 입주기업이 자신의 잉여 일부 공간을 계열사나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임대(계약, 무계약)하였을 경우 임대입주자로 볼 것인지,
- 제3자에게 임대하였을 경우 임대입주자로 인정하는 규모(임대공간이 차지하는 비율과 면적 총량)를 어떤 기준으로 할 것인지,
- 임대자의 업종, 계약 내용 등이 관리기본계획에 따른 적절한 것인지 등의 임대 조건과 내용을 파악하여 산업단지 조성관리 목적에 부합하는 현실성있는 분류 기준 설정이 요청됨.

임대 입주기업체의 대부분은 협의회에 가입한 자가입주기업체의 계열사 혹은 특수 관계에 있는 업체들로서 이 경우 협의회에서는 자가입주기업체와 동일한 하나의 입주기업으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별개로 가입 자격을 부여하지 않고 있으며, 자가입주기업체와 특수관계에 있지 않은 제3자 임대 입주기업은 현 관리기관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협의회에서는 임대 업체의 현황이나 조건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기에, 이 경우 이 임대업체들을 협의회 정관에서 정하고 있는 회원(준회원 자격)으로 유치하거나 권유한 적이 없었음.

나. 임대입주기업의 형태와 현황

임대 입주사는 자가 입주기업의 계열사가 대부분임. 벤처타운을 경영하는 세종출판사의 경우 임대 입주업체가 45개사이며 계열사가 입주하고 있는 경우는 문학동네가 8개사, 교문사와 교보문고, 민음사 각 3개사, 국민서관, 김영사, 동녘, 북이십일, 살림, 서강, 시공사, 은하출판사, 지식산업사, 창비, 태학사 등 11개사가 2개사, 10여개 이상의 입주기업이 1개사에게 임대하고 있음.

따라서 산단공 기준 임대입주사(임대계약 승인기준)를 대상으로 할 경우 임대입주사는 194 업체임. 임대 입주기업은(계열사 및 임대기업) 협의회 정관에 따라 준회원 자격으로 입회비없이 연회비만 납부하도록 되어 있는바, 향후 준회원에 대해서는 임대해준 자가입주기업의 관리하에 일괄 통합 회비를 내도록 하거나, 납부하지 않는 준회원에 대해서는 의결권, 선거권, 피선거권을 제한하는(현 정관 제7조 8호) 규정을 두도록 함.

협의회 미가입 16개사는 대부분 200-300평 소규모 필지, 소규모 건축물로서 임대 업체수는 소수임. (현황 추후 조사)

현재 입주기업협의회는 자체 관리권한이 없기 때문에 관리기본계획에 의한 임대차 통제 및 현황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

다. 자가입주기업과 임대입주기업의 지위 검토

산업입지법과 산업집적법에 의한 산업단지의 입주기업 자격을 존중하고 특히 출판도시와 같이 최초 발의자가 국가가 아닌 공동체 의식과 동일한 목적으로 구성된 협동조합에 의해 추진되고 조성된 단지 임을 고려하여, 단지 공간 이용만을 목적으로 임대하여 입주하는 임대자와 최초 발의 조합원 입주기업과는 차별성을 두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일정 기간 임시로 입주하는 임대자에게 출판단지 조성 목적에 따르게 하고, 지속 성장을 위한 공동체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요구하는 것은 무리이며, 임대자 또한 그런 소명과 구속을 받아 드리기 어려운 실정일 것이다.

<참고 자료 : 전체 입주기업의 가입 90% 이상 획득 여부 예비 검토>

총 대상 : 442개(자가입주기업 245개사+임대입주기업 197개사)

동의 요건 충족 기업 : 398개사(442×90%)

자가입주기업 동의업체 : 229개사

따라서 임대입주업체 197개사 중 169개사(86%이상)의 동의가 필요함. 임대입주기업 중 동의를 거부하는 업체가 수치상으로 28개 업체 미만이면 가능함.

부록

산업단지 관리지침

과주출판문화정보국가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2014. 11월 현재)

출판도시입주기업체협의회 결성 및 관리기관화를 위한 방안

관리체계 결정을 위한 문체부 '98년도 검토 의견(당시)

“위대한 계약서”

“선홍한 계약서”

출판도시 2단계 건축 심의 자료

산업단지 관리지침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라 산업단지의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같은 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지침은 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산업단지 및 법률 제4216호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부칙 제3조에 따른 산업단지에 적용한다. 다만, 「농공단지의 관리지침(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에 관하여는 따로 정하여 고시한다.

제2장, 산업단지의 관리

제3조(산업단지관리공단 등의 설립 및 관리) 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산업단지의 관리권자(이하 “관리권자”라 한다)가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입주기업체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설립을 인가하는 때에는 해당 협의회가 「민법」 제32조에 따른 법인이어야 한다.

②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산업단지관리공단(이하 “관리공단”이라 한다) 및 협의회 설립, 관리에 관하여는 법·영·규칙 및 이 지침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그 소속청장의 주관에 속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4. 9. 24>

③ 관리권자는 동일한 산업단지에 관리공단과 협의회가 중복하여 설립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산업단지관리의 전문화 등) ① 관리업무는 법·영·규칙 및 이 지침이 정하는 범위에서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관리기관(이하 “관리기관”이라 한다)이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관리권자는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관리공단 또는 협의회 설립을 인가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104조 또는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업무를 해당 관리기관에 위탁하여야 한다.

③ 관리권자가 제2항에 따라 관리업무를 관리기관에 위탁하는 때에는 영 제37조의2에 따라 업무위탁의 범위를 정하여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④ 관리권자는 산업단지 관리의 전문화와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산업단지 관리에 관한 능력과 경험이 풍부한 관리공단 또는 법 제45조의9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업단지공단을 지정하여 신규 지정 산업단지 등에 대한 관리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⑤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16532호)」 시행 이전에 국가산업단지의 관리업무를 수행하던 관리공단에 한하여, 한국산업단지공단은 해당 국가산업단지의 영 제5조제1항에 따른

관리업무(같은 항 제1호의 업무와 제7호 중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과 관련한 업무는 제외한다)를 5년 단위의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여 재위탁할 수 있다. 단,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위수탁계약을 갱신 시에도 이와 같다. (신설 2014. 9. 24)

1. 관리공단의 재위탁 요청이 있을 것
2. 관리공단에 대해 해당 국가산업단지의 관리능력 및 관리에 소요되는 재정자립계획이 있을 것
3.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이 있을 것

제5조(산업시설구역에서 제조업의 업종에 대한 기준건축면적률 등)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사업부지면적은 건축물이 설치된 부지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②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사업건축물등의 면적은 다음 각 호의 면적을 합산한 면적으로 한다.

1. 사업부지 안의 건축물 각 층의 바닥면적
2. 사업부지 안에 설치된 기계·장치, 그 밖에 공작물로서 건축물의 외부에 설치된 것의 수평투영면적

③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기준공장면적률 중 최고비율의 2배로 하는 기준건축면적률은 다음과 같다.

· 기준건축면적률 : 40퍼센트

④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기준사업건축면적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다.

· 기준사업건축면적=사업부지면적×기준건축면적률

(본조신설 2011. 8. 26)

제6조(산업용지의 용도별 구역) ① 법 제33조제5항제3호 및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관리기본계획의 용도별 구역(이하 “용도별 구역”이라 한다) 중 지원시설구역의 면적은 법 제33조제4항에 따라 관리기본계획을 고시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확대하여 고시할 수 없다. 다만, 관리대상이 되는 산업용지 면적의 증가,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조 및 제7조의2에 의한 개발계획(이하 “개발계획”이라 한다) 변경에 따른 지원시설구역의 면적확대는 제외한다. (개정 2011. 8. 26)

② 관리권자는 용도별 구역 및 영 제43조에 따른 산업시설구역의 세부용도 또는 복합용도를 정할 경우에는 이를 관리기본계획에 반영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1. 8. 26)

③ 관리기관은 산업단지의 용지 중 용도별 구역에 따른 공공시설구역을 제외한 녹지구역을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제14조제1호에 적합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9. 6. 30)

④ 삭제 (2008. 7. 31)

⑤ 영 제43조제5항제3호에 따라 부수적으로 추가되는 업종은 관리기관이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건축면적이 총건축 연면적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4. 9. 24)

⑥ 영 제43조제4항에 따른 업종배치계획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통합배치 대상에서 제외한다. (신설 2013. 2. 22., 2014. 9. 24)

1.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별표 2에 의거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사업장의 경우
2. 「수질및수생태계 보전에 관한법률 시행규칙」별표 3에 의거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사업장의 경우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에 의거 도시·군계획시설로 분류되는 경우

·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별표 2에 의거 사고대비물질을 제조·취급하는 사업장의 경우

제7조(입주업종 및 입주자격) ① 법 제33조제5항에 따른 관리기본계획 중 입주업종 및 입주자격에는 법 제3조에 따른 산업집적활성화 기본계획을 반영하여야 한다.

② 관리권자는 영 제6조제7항에 따라 입주자격을 승인할 때에는 승인하려는 면적이 산업단지의 관리기본계획 총면적의 3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 (개정 2011. 8. 26)

③ 규칙 제34조의2제5호에서 “원자재 공급사업 및 폐기물처리업으로서 관리지침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준공인가 전(前)까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에 따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지방공기업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지방공기업이 운영하는 사업을 말한다. (신설 2011. 8. 26)

④ 삭제 (1998. 2. 24)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지역에 소재하는 공장의 합리적 배치, 공장의 지방이전촉진 및 지역간의 공장의 균형있는 배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산업단지의 일부지역에 입주할 업종을 정하여 해당 관리기관의 장에게 그 업종의 입주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 9. 24)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입주업종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한국표준산업분류 중 중분류(2단위)로 한다. (개정 2005. 12. 19)

⑦ 산업단지 안전관리상의 이유로 소방서, 응급 구조시설 등 안전시설이 공공시설구역의 구역에 입주하려는 경우에도 영 제6조제7항을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계획,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신설 2014. 11. 3)

제7조의2(뿌리산업의 입주지원) ① 관리권자 및 관리기관은 산업단지에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뿌리산업(이하 “뿌리산업”이라 한다)을 집적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관리기관은 뿌리기업(뿌리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대기환경보전법」,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등 환경 관련 법령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인근 기업체의 조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그 입주를 원칙적으로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별 산업생태계 및 주력 업종과의 전·후방관계를 고려한 결과 뿌리기업의 입주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관리권자가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뿌리산업이 관리기본계획의 입주가능업종에 포함된 경우 관리권자는 해당 산업단지에 뿌리산업 집적을 위한 별도의 공간을 지정하고 운영할 수 있다. 이 때 관리권자는 이러한 사항을 관리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지역별 산업생태계의 발전과 주력업종과의 연계를 위하여 뿌리산업의 집적화가 필요한 산업단지의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7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입주가 필요한 뿌리산업 업종을 정하여 관리기관의 장에게 해당 산업단지 일부지역에 그 업종의 입주를 권고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 9. 24)

제8조(산업용지의 용도별 구역 변경에 따른 지가상승 분의 기부) ① 영 제43조의2제1항 후단에 따른 감정평가업자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출자된 주식회사 한국감정원 또는 「부동산 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감정평가협회에서 추천한 감정평가법인(같은 법 제28조에 따라 설립된 감정평가법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에서 관리기관이 관리권자의 승인을 받아 선정한 기관으로 한다. 다만, 총 감정평가업자 선정기관 중 2분의1(소수점 이하 버림)은 산업용지의 소유자가 관리권자의 승인을 받아 선정한 감정평가법인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4. 9. 24)

② 산업용지의 소유자는 지가상승 분에 대한 감정평가가 완료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기부서 및 관련서류를 작성하여 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기부자의 회사명·대표자 성명 및 주소
2. 기부의 목적·시기 및 이행방법
3. 기부할 산업용지 또는 시설의 표시·평가가격·명세서·소유권증명서·지적공부 및 도면
4. 이행각서 등 이행확약에 필요한 서류 (개정 2013. 1. 9)

③ 관리기관은 제2항에 따른 기부서를 검토한 결과 그 내용이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산업용지 소유자에게 기부서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④ 관리기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기부서 및 보완의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그 기부서와 관리기관의 의견을 적은 의견서 등을 관리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영 제43조의2제2항에 따른 지가상승 분의 기부범위는 100분의 50으로 한다. (신설 2013. 1. 9)

⑥ 관리권자는 제5항에 따른 기부범위에서 영 제43조의2제3항에 따른 공공시설 설치비용(지가가 상승한 산업용지의 소유자가 최종적으로 부담하는 공공시설 설치비용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공공시설 설치비용”이라 한다)을 지가상승 분의 100분의 25를 한도로 공제하고 남은 범위에서 기부받을 수 있다. 다만,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승인권자(이하 이 조에서 “실시계획승인권자”라 한다)가 관리권자와 협의한 경우에는 지가상승 분의 100분의 50까지 공제할 수 있다. (신설 2014. 9. 24)

⑦ 제6항에 따라 기부범위에서 공공시설 설치비용을 공제할 경우 관리권자는 실시계획승인권자와 공공시설 설치비용 및 지가상승 분을 공동으로 산정하기 위한 협의를 진행하여야 하며, 그 협의 결과에 따라 공공시설 설치비용의 부담 규모 및 지가상승 분의 기부 범위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정 절차는 제1항 및 영 제43조의2의 규정에 따르며, 제1항에 따라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할 때 관리권자 및 관리기관은 실시계획승인권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14. 9. 24)

⑧ 제6항에 따라 기부범위에서 공공시설 설치비용을 공제할 경우 관리기관은 해당 공공시설 설치의 원인이 되는 개발계획 변경이 있는 후 3개월 이내에 관리기본계획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신설 2014. 9. 24)

⑨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감정평가에 소요되는 비용은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한 자가 부담하되, 추후 정산하여 지가상승분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감정평가에 따른 수수료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감정평가업자의 보수에 관한 기준」 제3조에 따른 상한액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13. 1. 9., 2014. 9. 24)

(본조신설 2012. 1. 11)

제9조(입주계약 시기 등) ① 관리기관이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토지를 분양·임대할 때에는 법 제38조에 따라 그 토지를 분양·임대를 받으려는 자와 입주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라 용지를 분양받거나 시설물을 이용하려는 자 또는 같은 법 제38조에 따라 산업용지 등을 분양·임대·양도 받으려는 자도 또한 같으며 이 경우 규칙 제34조제1항에 따라 분양·임대·양도·이용 전(前)에 미리 입주계약신청서에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 8. 26)

② 관리기관이 제1항에 따른 입주계약을 산업용지의 조성이 완료되기 전에 체결한 경우에는 그 산업용지에 공장 기타시설의 착수가 가능한 날을 정하여 입주계약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관리기관이 제2항에 따라 공장의 착수가 가능한 날을 입주계약자에게 통보한 경우에는 규칙 제42조에 따른 기간의 기산일은 공장 기타시설의 착수가 가능한 날로 한다.

④ 법 제38조 제1항·제3항에 따른 입주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산업용지 및 공장 기타시설의 분양 또는 임대가 수반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분양 또는 임대와 관련되는 사항은 제외한다.

1. 규칙 제35조제1항의 각호에 관한 사항
2. 산업시설구역 내 공장 기타시설의 착수시기 및 완공계획에 관한 사항 (개정 2011. 8. 26)
3. 산업용지의 처분제한 등 입주기업체 또는 지원기관이 지켜야 할 사항
4. 입주계약 해지, 분양용지환수, 환수절차 등에 관한 사항
5. 분양(임대)가격, 대금납부방법, 공동시설의 이용 및 부담금 징수에 관한 사항
6. 법, 영, 규칙, 이 지침의 시행 및 기타 산업단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⑤ 관리기관은 산업시설구역에서 입주기업체가 도로, 구거 등으로 연결하여 분리된 양쪽 산업용지에 제조시설을 물리적 또는 기능적으로 설치·증설하여 연계하려는 경우 산업단지 관리 등에 지장이 초래되지 않는 범위에서 입주계약을 하나로 체결할 수 있다. (신설 2010. 7. 30)

⑥ 관리기관은 산업시설구역에서 입주기업체가 제조업을 하면서 도로, 구거 등으로 연결하여 분리된 반대쪽 산업용지에 부대시설(관계 법령에 따라 설치가 의무화된 시설이 수반·포함되는 경우에 해당한다)을 물리적 또는 기능적으로 설치·증설하여 해당 제조시설과 연계하려는 경우 산업단지 관리 등에 지장이 초래되지 않고 그 필요성이 인정되는 범위에서 입주계약을 하나로 체결할 수 있다. (신설 2010. 7. 30)

⑦ 제5항 또는 제6항에 따라 시설 등의 설치·증설로 입주계약을 하나로 체결하는 경우에는 관리기관은 그 시설들이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의 범위에서 운영되도록 입주기업체를 관리하여야 하며, 입주기업체는 입주계약서와 공장의 범위를 벗어나 그 시설들을 이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0. 7. 30)

⑧ 관리기관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8조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로부터 토지·시설에 관한 처분계획을 협의 요청받은 경우에는 입주계약의 체결에 관한 방법·시기 등 입주하려는 자가 알아야 할 안내사항을 포함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1. 8. 26)

⑨ 관리기관은 입주기업체가 산업단지 입주 후에 적용받을 수 있는 환경기준, 조세, 시설관리비 등 각종 규제 및 부담에 대해 정기적으로 매뉴얼을 제작·배포하거나 입주기업체 대상 설명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신설 2014. 9. 24)

⑩ 관리기관은 입주기업체의 요청이 있을 경우 법, 영, 규칙 및 이 지침에 따라 발급하는 각종 서식의 공장소재지란에 입주기업체가 입주한 산업단지명을 병기할 수 있다. (신설 2014. 9. 24)

⑪ 관리기관이 영 제6조제5항제12호에 따른 신탁업을 운영하려는 자(지식산업센터의 설립과 관련된 사업계획을 제출하는 자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신탁업자”라 한다)와 입주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입주계약 체결 전에 신탁업자가 위탁자와 체결하는 신탁계약(이하 이 조에서 “신탁계약”이라 한다)에 입회자로 참여하여야 한다. 이 때 관리기관은 신탁계약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신탁업자와 입주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4. 9. 24)

1. 신탁업자가 지식산업센터의 건립을 목적으로 산업용지를 개발하기 위한 신탁계약일 것 (지식산업센터의 건립과 무관하게 산업용지를 관리 또는 처분하거나 담보재산으로서 관리하기 위한 신탁계약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이 때의 판단은 신탁계약의 명칭이 아닌 신탁계약의 세부 내용을 근거로 한다.)
2. 법 제38조의2, 제39조 및 제39조의2에 따른 사항을 준수할 의무가 신탁계약의 내용에 포함되어 있을 것
3. 위탁자와 신탁업자가 계약내용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관리기관의 사전 동의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신탁계약에 포함되어 있을 것

제10조 삭제 (2010. 7. 30)

제11조(산업용지 등의 처분제한 등) ①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처분에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포함한다.

1. 산업용지 및 공장 기타시설(건설 중인 것을 포함한다)의 소유권이 등기에 관계없이 양도, 교환, 증여 등으로 인하여 사실상 이전되는 경우
2. 법인인 입주기업체가 해당 법인의 출자총액 또는 그 발행주식의 50퍼센트(누적의 합을 포함한다) 이상을 소유한 자가 변경되는 경우 (개정 2011. 8. 26)

② 영 제51조제1항제3호에서 “관리지침으로 정하는 중개수수료”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제4항에서 정하는 최대 수수료의 2분의 1 이내로 한다. (신설 2010. 7. 30, 2014. 9. 24)

③ 영 제52조제1호에서의 생산자물가총지수란 취득시의 생산자물가지수(한국은행이 발표하는 기본경제통계 중 생산자물가지수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양도 시까지 증가한 생산자물가지수의 비율로서 월단위로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 생산자물가총지수 = (양도월의 생산자 물가지수 - 취득월의 생산자물가지수) / 취득월의 생산자물가지수 (신설 2011. 8. 26)

④ 법 제40조의2제1항에서 제39조제2항·제3항 및 제40조제1항(이하 이 항에서 “제39조등”이라 한다)에 따라 양도받은 자란 법 제39조제6항 본문 및 제40조제3항 본문에 따라 입주계약을 미리 체결하지 아니한 자(제39조등의 절차를 충족하지 아니한 산업용지 등을 취득한 자로서 입주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신설 2011. 8. 26)

⑤ 법 제40조의2제1항에 따라 유관기관이 산업용지 또는 공장등을 매수한 경우 관리기관에의 신고 및 입주자격이 있는 자에게 양도하여야 하는 기간에 관하여는 영 제52조의2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신설 2011. 8. 26)

⑥ 삭제 <2008. 7. 31>

제12조(산업단지 지원시설의 목적외 이용) 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제5조에 따라 산업단지에 설치한 시설의 일부를 입주기업체, 지원기관 및 그 종업원이외의 자에게 이용(이하 “목적외 이용”이라 한다)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 7. 30)

1. 목적외 이용(면적, 이용자수 또는 이용금액 기준)이 전체의 3분의 1 미만인 경우
2. 일시적 유휴시설로서 해당 시설의 이용제고 등 효율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인근지역의 주민 또는 인근지역 기업체에 대한 편의제공 등 지역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3조(산업시설구역의 임대사업 관리) ① 법 제38조의2에 따른 산업시설구역에서 산업용지의 임대사업자가 임대한 건축물 등에 다수가 동시에 입주한 경우에는 그 입주자 공동으로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고 관리규약을 정할 수 있다. 이를 정한 경우에는 그에 관한 내용을 관리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입주자 및 대표자, 관리규약 등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1. 8. 26)

② 영 제48조의4제4항에 따른 표준임대차 계약서는 별지 제1호의 서식으로 한다.
(종전 제11조의3에서 이동 2010. 7. 30)

제14조(지원시설구역의 임대사업 등) ① 법 제38조제3항에 따라 지원시설구역에서 부동산임대 및 공급업으로 입주계약을 체결한 자는 해당 산업단지의 관리기본계획 및 입주계약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적합한 분양·임대계획서를 관리기관에 제출한 후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로 입주자를 모집하여야 한다. 이 때의 분양·임대계획서에는 영 제48조의3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1. 8. 26)

- ② 제1항에 따라 분양 또는 임대받은 자는 관리기관과 법 제38조에 따른 입주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③ 지원시설구역에서 임대사업의 표준임대차 계약서 서식에 관하여는 제13조제2항을 준용한다.
(종전 제11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14조는 제16조로 이동 2010. 7. 30)

제15조(산업단지 운영위원회) 한국산업단지공단은 관리기본계획 변경 등 산업단지 관리업무를 수행할 때 의견수렴, 자문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리권자의 승인을 받아 입주기업체, 유관기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산업단지 운영위원회”를 비상설로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0. 7. 30)

제16조(안전관리 등의 지도) ① 관리기관은 영 제58조제2항의 각 호에 관한 지도는 그 지도의 내용이 입주기업체 또는 지원기관의 의무사항으로 법령 또는 입주계약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만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9. 24)

- ② 관리기관은 입주기업체가 법 제15조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를 할 때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입주기업 사업장 안전관리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4. 9. 24)
- ③ 관리기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안전관리 계획서를 검토한 후 관계 행정기관의 협조를 받아 안전

관련 법령·기준 정보 제공, 사업장 안전 개선방안 지도 등의 지원을 입주기업체에게 할 수 있다. (신설 2014. 9. 24)

④ 관리기관은 안전사고 정보 등의 신속한 전파를 위한 비상연락망을 작성하기 위하여 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에게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개인정보 사용 동의서를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은 요청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4. 9. 24)

⑤ 관리기관은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관리기본계획을 수립(변경을 포함한다)할 때 산업단지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 수립(변경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신설 2014. 9. 24)

(중전 제14조에서 이동, 중전 제16조는 제18조로 이동 2010. 7. 30)

제17조(산업단지 관리에 관한 보고) ① 관리기관은 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산업단지관리에 관한 보고를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입주기업체 또는 지원기관에게 산업단지관리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 9. 24)

(중전 제15조에서 이동 2010. 7. 30)

② 관리기관은 지식산업센터의 입주 등의 현황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규칙 제26조의3제5항에 따른 지식산업센터 관리자로부터 같은 항 제5호에 따른 입주 및 가동 현황 등을 월별 또는 분기별로 제출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관리기관은 지식산업센터 관리자와 미리 협의를 거쳐야 한다. (신설 2011. 8. 26, 2014. 9. 24)

제18조(입주기업체의 관리) ① 법 제42조제1항제1호에서 공장등의 건설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공장등이 「건축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대상이 아닌 경우

가. 규칙 제42조 제2항에 따른 착수기한 이내에 입주계약 및 입주계약체결시에 제출한 사업계획에 따른 공장등에 대하여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

나. 규칙 제42조제2항에 따른 착수기한이 지난날부터 6개월 이내에 「건축법」 제25조제5항에 따른 감리 중간보고서가 건축주에게 제출되지 않은 경우. 다만, 연약지반에 따른 기초보강공사, 동절기 공사중지,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관리기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6개월 범위 내에서 해당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2. 공장등이 「건축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대상인 경우

가. 규칙 제42조제2항에 따른 착수기한 이내에 입주계약 및 입주계약체결시에 제출한 사업계획에 따른 공장등에 대하여 「건축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나. 규칙 제42조제2항에 따른 착수기한이 지난날부터 6개월 이내에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 다만, 연약지반에 따른 기초보강공사, 동절기 공사중지,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관리기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6개월 범위 내에서 해당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② 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입주계약 해지자와 변경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기관은 입주계약해지를 철회하여야 한다.

1. 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해당 산업단지의 관리기본계획이 변경되어 중전과 달리 법 제42조제1항제4호

에 따른 해지사유가 해소·치유되는 경우

2. 경영하려는 사업이 산업시설구역으로서 현행 관리기본계획에 부합하는 경우
3. 근로자의 고용창출 및 복지증진에 기여하는 경우
4. 산업단지 관리 및 인근 입주기업체의 조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경우

③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설립된 관리공단 및 입주기업체협의회 또는 법 제30조제2항제5호에 해당하는 관리기관이 법 제52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을 입주기업체에 적용할 경우에는 관리권자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14. 9. 24)

(본조신설 2011. 8. 26)

제19조(산업단지의 구조고도화사업 등) ① 관리기관은 지원·보육·문화·복지·교육·편익·휴게 시설 확충 등 산업단지의 경영 및 근로 환경의 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과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② 법 제45조의3제2항제2호에 따른 법인(특수목적법인을 말한다)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토지소유자로부터 토지사용승낙을 받을 것
2. 자본금이 5억원 이상일 것
3. 참여하는 각 민간기업은 자본금의 100분의 10 이상 출자할 것

③ 사업시행자는 법 제45조의2제3항에 따른 구조고도화계획의 승인 범위에서 영 제58조의4제4항에 따른 구조고도화사업의 대행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그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관리권자에게 계약 내용을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2. 1. 11, 2014. 9. 24)

④ 법 제45조의6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 및 대행사업자는 영 제58조의5제4항에 따른 개발이익의 재투자 범위 내에서 같은 조 제5항제2호에 따른 공공시설의 확충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1. 8. 26)

제3장, 보칙

제20조(산업단지 브랜드 명칭) ① 관리기관은 산업단지의 고유한 특색과 미래상이 반영되고 국제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산업단지 브랜드 명칭(이하 이 조에서 “브랜드 명칭”이라 한다)을 선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기관은 브랜드 명칭에 관한 사항을 미리 지방자치단체 및 사업시행자와 협의하여야 하고 입주기업체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관리기관은 브랜드 명칭을 선정하는 경우 해당 산업단지의 관리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권자는 관리기본계획을 법 제33조제3항에 따라 산업단지지정권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 관리기관은 브랜드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개발계획에 따른 산업단지 명칭과 상호 조화되게 사용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1. 8. 26)

제21조(교육실시) 한국산업단지공단은 시·도 및 시·군·구의 산업단지 담당공무원, 관리기관 등에 대하여 산업단지 관리 등과 관련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1. 8. 26)

제22조(재검토키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일부개정 2013. 1. 9)

(중전 제16조에서 제18조로 이동 2010. 7. 30)

(중전 제18조에서 이동 2011. 8. 26)

부칙 (제2014-210호, 2014.11.7)

이 「산업단지관리지침」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파주출판문화정보국가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

(2014. 11월 현재)

1. 산업단지 개요

가. 관리기관 및 산업단지 위치

- 관리기관 : 한국산업단지공단(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39(신서동 916-1))
- 위치 : 경기도 파주시 교하읍 문발리, 산남리, 서패리, 신촌리 일원

나. 조성목적

- 21세기 고도 정보화사회에 대비하여 출판·영상등 지식·정보산업을 중심으로 한 출판문화산업을 집적화하여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
- 국제적 문화정보 교류 및 한국 전통문화의 공연과 전시가 이루어지는 “통일 한국시대의 문화중심지”로 육성

다. 추진경위

- 97. 3. 31 파주출판문화정보국가산업단지 지정(건설교통부 고시 제1997-95호)
- 97. 3. 31 산업단지 개발기본계획 고시(건설교통부 고시 제1997-95호)
- 98. 1. 18 산업단지 개발실시계획 승인(서울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1997-283호)
- 98. 8. 26 산업단지 관리업무 고시(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1998-39호)
- 99. 2. 1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산업자원부 고시 제1999-15호)
- 99. 4. 17 산업단지 개발계획 변경(건설교통부 고시 제1999-107호)
- 00. 6. 26 산업단지 개발실시계획 변경(서울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00-150호)
- 02.12. 30 산업단지 개발계획 변경(건설교통부 고시 제2002-312호)
- 03. 6. 3 산업단지 개발계획 변경(건설교통부 고시 제2003-128호)
- 03. 9. 26 산업단지 개발실시계획 변경(서울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03-166호)
- 05. 3. 30 산업단지 개발계획 변경(건설교통부 고시 제2005-74호)
- 07. 3. 6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산업자원부고시 제2007-36호)
- 08. 2. 11 산업단지 개발계획 변경(건설교통부 고시 제2008-50호)
- 09. 4. 29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지식경제부고시 제2009-64호)
- 09.11. 9 산업단지 개발계획 변경(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1058호)
- 10. 4. 12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지식경제부 고시 제2010-78호)
- 10. 4. 15 산업단지 개발계획 변경(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224호)
- 10. 9. 24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지식경제부 고시 제2010-172호)
- 11. 8. 19 산업단지계획 변경(국토해양부고시 제2011-469호)

- 13. 1. 17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지식경제부고시 제2013-7호)
- 13. 2. 26 산업단지계획 변경(국토해양부 고시 제2013-120호)
- 13.11. 26 산업단지계획 변경(국토해양부 고시 제2013-727호)
- 14. 4. 9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4-63호)

라. 분양현황

구분	총면적	분양	미분양			계	조성기간	조성기관
			조성	미조성	소계			
합계	1,515	690	58	-	58	748	1997-2013	한국토지주택공사
산업시설구역	586	586	-	-	-	586		
지원시설구역	135	95	40	-	40	135		
공공시설구역	667	9	18	-	18	27		
녹지구역	126	-	-	-	-	-		

(단위 : 천㎡)

마. 입주현황

구분	입주업체수			면적		
	제조업	기타	계	제조업	기타	계
합계	127	443	570	512	74	586
2013.12 현재	107	343	450	512	74	586
향후계획	20	100	120	-	-	-

(단위 : 개사, 천㎡)

바. 입지여건(기반시설)

시설명	'12. 10. 현재	확충 계획		
		일정	규모	시행기관
도로	자유로 통과도로(행주대교 40Km) 1번국도인접(파주12Km) 일산신도시 인접(6Km) 진입도로(2개소, 폭원 6m-18.5m, 연장 1,771m)	-	-	-
철도	경의선 금촌역(8Km) 이용	-	-	-
항공	김포공항(30Km) 이용	-	-	-
항만	인천항(48Km)이용	-	-	-
용수	파주시 지방상수도	1999-2012	-	-

(공업용수 2,954m ³ /일, 생활용수 3,862m ³ /일)				
전력	일반용 전력 사용	-	-	-
통신	전화회선 수 58,650회선	1999-2012	-	-
환경	배수시설(배수펌프장:5,201m ²) 하수종말처리장(공업폐수 : 90m ³ /일, 생활오수 : 3,360m ³ /일, 침출수 : 43m ³ /일)	1999-2012	폐기물처리시설 13,779m ²	민간사업자

2. 관리기본방향

- 단지내 산업시설, 연구시설, 주거시설, 지원상가시설, 문화복지시설 등의 복합 기능을 갖춘 21세기 미래형 첨단단지로 육성·발전
- 합리적인 산업시설배치를 통하여 산업단지 운영의 효율성 제고
- 적정 입주기업 선정유치 및 지원활동 전개
- 폐기물처리장, 공원, 완충녹지 조성등으로 환경친화적인 단지조성
- 생활편의를 위한 종합지원센터 건립·유치로 입주기업체 생산성 향상 및 근로자 후생복지 도모

3. 관리기본계획

가. 산업단지 용도별 구역

(1) 용도별 구획면적

총면적	산업시설구역	지원시설구역	공공시설구역	녹지구역
1,515,537.4(100.0)	585,888.6(38.7)	135,516.7(8.9)	667,419.5(44.0)	126,712.6(8.4)

(단위 : m², %)

산업시설구역 특정용도	물류시설 용도	74,725
(단위 : m ²)		

(2) 구역별 건축할 건축물의 범위

(가) 산업시설 구역

- 1)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이하 “산집법”이라 한다) 제2조 규정에 의한 공장 및 당해공장의 부대시설
- 2) 출판, 영화, 공연·전시, 방송, 인쇄, 소프트웨어 개발, 기록매체 복제, 출판·인쇄 관련 종이제품 제조 건축물·공작물과 그 관련시설(이하 “건축물”이라 한다)

- 3) 출판, 인쇄, 영화, 방송을 위한 협동화사업 관련 건축물
- 4) 폐기물 처리시설용도
 - 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업을 영위하기 위한 폐기물처리 관련 건축물
- 5) 물류시설 용도
 - 보관 및 창고업, 하역 및 운송업 등을 영위하기 위한 물류시설 관련 건축물

(나) 지원시설구역

- 1) 산집법 제2조 제19호의 규정에 의한 지원기관이 그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건축물
- 2) 산집법 제4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관리기관이 입주기업체의 사업지원을 위하여 설치하는 건축물
- 3) 건축법 시행령 별표1(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의한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판매 및 영업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교육·연구시설, 운수시설, 자동차관련시설, 근린공공시설 등의 시설물로서 관리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
- 4) 관리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로서 관리권자의 승인을 얻어 설치하는 건축물

(다) 공공시설구역

- 1) 공공기관이 설치하는 공공시설물
- 2) 「산집법 시행령」제43조 제4항의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운영하기 위한 건축물

(라) 녹지구역 : 녹지구역 유지관리에 필요한 건축물

(3) 용도별 구획 평면도 : [붙임1]

나. 입주관리계획

(1) 입주대상 업종

(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펄프·종이 및 판지 제조업(171), 출판업(581, 592), 상업인쇄 및 인쇄관련 서비스업(181), 기록매체 복제업(182), 소프트웨어 자문·개발 및 공급업(582), 영화·방송 및 기타 공연·전시 관련 산업(591, 592, 601, 602, 901, 902), 다만, 펄프·종이 및 판지 제조업(171)의 경우 출판·인쇄 관련 종이제품 제조업에 한 함. 또한, 전시 관련 산업(902)의 경우 도서관, 미술관, 박물관에 한하며, 건물 전체면적의 2/3를 초과하여 운영 할 수 없음.

(나) 폐기물관리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업. 다만 산업단지의 환경오염 방지를 위하여 산업단지내의 생산 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는 건설폐기물, 감염성폐기물, 생활폐기물, 분뇨처리업, 축산폐기물 등의 입주를 제한함.

- (다) 출판관련 물류시설 및 일반창고업(다만, 일반창고업의 경우는 물류시설 전체면적의 1/2을 초과하여 운영할 수 없음)
- (라) 입주기업체 사업 지원을 위하여 금융·보험·의료·교육 및 산집법 시행령 제6조 제6항에서 정하는 사업
- (마) 「산집법시행령」제43조 제4항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발전업
- (바) 「산집법시행령」제21조 제2항 제2호 가목 2)의 태양에너지 발전업
- (사) 「산집법시행규칙」제2조 8의2에 따른 부대시설은 북카페(자사책 전시 판매 + 비알콜음료점업(56220))를 말한다. 이는 다음 각 조항을 충족하여야 한다

- 1) 산업시설구역 내 자기 소유 건축물로서, 1건의 입주계약 당 입주기업체가 직접 운영하는 1개 시설
- 2) '자사책 전시판매'란 출판사, 인쇄사가 발간한 자사책(해당 사업장의 생산제품에 한한다)만을 전시·판매하는 것을 말함
- 3) 면적은 총 건축연면적의 1/3을 초과하여 운영할 수 없음. 다만, 전시관련 산업(902)과 함께 설치되는 경우 두 시설의 합이 2/3를 초과할 수 없음

(2) 입주자격

(가) 산업시설 구역

- 1) 산집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산업단지 입주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동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공장
- 2)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 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중소기업협동화사업 실천계획 승인을 받거나,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거 조합 설립인가를 받아 협동화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업체
- 3) 영화, 방송, 공연·전시 관련 산업 및 소프트웨어 자문·개발 등의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
- 4) 출판, 인쇄, 기록매체 복제업 및 출판관련 종이제품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
- 5) 출판 관련 물류시설 및 일반 창고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지정용도에 한함)
- 6) 폐기물 처리를 위한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지정용도에 한함)
- 7) 산집법시행령 제21조 제2항 제2호 가목 2)의 태양에너지발전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

(나) 지원시설구역

- 1) 산집법 제2조 제19호 규정의 지원기관으로서 동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입주자격을 갖춘 자
- 2) 관리기관이 입주기업체의 지원을 위하여 건축한 건축물에 입주하는 자
- 3)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

(다) 공공시설구역

1) 「산집법시행령」제43조 제4항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발전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

(3) 입주 우선순위

(가) 산업시설구역

1) 수도권지역에서 이전하는 기업체(과밀억제·자연보전·성장관리지역)
위 조건을 충족하고 동일순위일 경우 우선순위는 아래와 같다.

가) 아래 나)항의 조건을 충족하고 이업종간 우수한 협동화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관리권자가 평가하여
선정 추천한 업체(단 해당 우선입주는 산업시설구역의 90% 이내로 함)

나) 출판, 인쇄, 영상, 소프트웨어관련 실적이 다음 각 호의 조건을 충족한 업체

-출판업 : 관련법에 따라 신고후 2년 이상된 업체로 2년간 연간 5종이상 납본실적이 있는 업체

-인쇄 및 인쇄관련업 : 관련법에 따라 신고후 2년 이상된 업체와 인쇄사의 경우 5종이상의 기계설비를
갖춘 업체

-영화 및 영상관련업 : 관련법에 따라 신고후 2년 이상된 업체와 영화사의 경우 최근 2년간 1편 이상의
영화제작 실적이 있는 업체

-소프트웨어 및 관련업 : 관련법에 따라 신고후 2년 이상된 업체

다) 이업종간 협동화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참여하는 업체

2) 산업단지 입지여건에 적합한 미래 유망업종

3) 지역내 전후방산업관련 효과가 큰 업종

4) 고용창출 효과가 크고 공해가 적은 업종

5) 관리기관은 관리권자와 협의하여 위 순위 외에 기타 순위를 정하여 공고할 수 있다.

6) 상기된 입주우선 순위는 산업용지 분양 및 환수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나) 지원시설구역

1) 출판단지 활성화를 위한 지원시설 설치계획에 부합하는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

2) 산업단지내 입주기업 및 종업원 후생복지에 대한 기여도가 높은 업체

3) 공공지원시설 및 복지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 중 재무건전성(자기자본비율)이 우수한 업체

4) 문화시설의 경우 산업시설구역의 협동화사업계획에 합당한 공동문화시설을건립하고자 하는 자

다. 업종별 배치계획

(1) 배치계획

구분		면적	필지수	한국표준산업분류(중(소)분류)
계		585,889	391	-
공장시설용도	소계	511,164	384	-
	출판업, 영화,방송및기타공연전시 관련 산업	208,263	210	581, 591, 592, 601, 602, 901, 902
	상업인쇄및인쇄관련서비스업 영화,방송및기타공연전시 관련 산업	103,666	62	181, 591, 592, 601, 602, 901, 902
	출판업, 상업인쇄및인쇄관련 서비스업	36,126	29	581, 592, 181
	영화,방송및기타공연전시관련산업 출판업,상업인쇄및인쇄관련서비스업	99,472	61	591, 592, 601, 602, 901, 902, 581, 592, 181
	소프트웨어지문,개발및공급업,출판업, 상업인쇄및인쇄관련서비스업	63,637	22	582, 581, 592, 181
	특정용도	소계	74,725	7
	물류시설(출판관련 및 일반창고업)	74,725	7	521

(단위: m²)

(2) 배치기준

(가) 업종별, 기업규모별 블록화 배치

(나) 주변 주거단지 인근지역에 공해성이 약한 업종을 배치

(다) 환경오염의 최소화를 고려하여 공동처리 가능토록 배치하고, 폐기물 처리시설은 단지 외곽지역에 구분배치

(3) 업종별 배치 계획도: [붙임2]

라. 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

(1) 설치계획

구분	시설명	면적	필지수
일반용도	계	134.5	57
	관리공단청사	2	1
	파출소	1	1
	소방서	2	1
	동사무소	1	1

기타 공공지원시설	1	2
기타 지원시설	128.5	52

(단위 : 천㎡, 개)

(2) 지원시설 관리운영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만 세부용도로 특정하고, 세부용도로 특정되지 않은 용지는 최초 입주계약 용도로 사용 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및 건축법 규정에 따라 관리 기관의 동의를 얻어 3.가.(2).(나)의 건축 가능한 건축물의 범위 내에서 사업내용을 변경할 수 있음.

마. 사후관리계획

(1) 목표

산집법, 산업단지관리지침 및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에 의거 산업단지 관리업무를 효율적이고 능동적으로 처리함으로써 입주기업체의 생산활동 지원 강화

(2) 세부관리계획

(가) 분양용지의 관리

- 1) 산업단지내 분양용지는 산집법과 산업단지관리지침 및 관리기본계획에 따라 사후관리
- 2) 관리기관은 입주기업체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입주계약을 해지하거나 분양용지를 환수할 수 있으며, 입주계약 해지시 분양계약은 자동 해지됨
 - 가) 입주계약을 체결하고 토지사용이 가능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공장건설을 착수하지 아니한 때
 - 나) 분양받은 용지를 불법 양도하거나 법인인 입주기업체가 건물의 준공(공장은 공장등록)을 필하기 전에 그 출자총액 또는 발행주식의 50%이상 소유자를 변경한 때
 - 다) 산집법 제42조의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때
- 3) 입주기업체 또는 지원기관이 산업용지 또는 공장을 임대코자 하는 경우에는 관리기관과 입주계약 또는 변경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4) 경매 기타 법률에 의하여 공장등을 취득한 자는 관리기관에 취득신고 및 입주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법정기간내 미계약시는 입주자격이 있는 제3자에게 양도하여야 함.

(나) 환경관리

- 1) 입주업체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은 환경관련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폐수, 대기오염, 소음·진동 등의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하여야 함.

- 2) 환경오염의 사전예방을 위해 지방환경관리청 및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한 협조체제 구축
- 3) 산업단지에서 배출되는 오·폐수, 폐기물의 적정처리를 위하여 단지내 폐기물처리장을 설치 또는 유치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유도

(다) 안전관리

- 1) 풍수해 등 재해와 치안유지를 위해 산업단지내 파출소, 소방파출소 등을 유치하고, 지방자치단체등 관련기관과 재해복구 협조체제 구축
- 2) 입주업체가 위험물을 저장하거나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법령 및 기준을 준수하도록 계도
- 3) 예비군 편성과 단지방호는 지자체 및 군부대와 협의하여 산업단지 특성을 감안한 방호계획이 수립되도록 협조체제 구축

(라) 기반시설지원

- 1) 산업단지내 설치된 공공시설물(도시계획법 시행령 제2조의3)은 도시계획법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하여 운영
- 2) 산업단지내 도로, 전력, 용수등 기반시설의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조체제 구축

바. 관리기관의 입주기업체에 대한 지원사업

(1) 공장설립지원

- (가) 입주기업체가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하고 공장건축을 하는 경우 관계 법률상의 인·허가 업무 대행 또는 지원활동을 함
- (나) 입주기업체가 공장건설 등을 완료하고 관리기관에 공장설립 등의 완료신고 등(사업개시신고)를 하는 경우, 입주계약 내용과의 일치여부를 현장에서 확인하고 완료신고서(사업개시신고서)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공장등록 등이 완료되었음을 입주기업체에 통보

(2) 생산활동 기반 구축

- (가) 생산활동 기반구축을 위해 산업단지내 물류부지를 조성하여 입주기업체의 원자재 및 생산제품의 운송·보관이 편리하도록 출판물 종합유통센터 유치
- (나) 인력수급의 원활화를 위해 무료취업 알선과 외국인근로자의 관리, 병역특례업체 지정관리등을 통한 입주기업체 지원도모
- (다) 출판업체의 집단화에 따라 출판문화정보센터를 유치하여 출판업체에 대한 생산활동 지원
- (라) 출판·영상관련 연구교육센터를 유치하고 전문인력을 육성하여 산업단지 활성화 도모

(3) 근로자 복지후생 지원

(가) 단지내 근로자 임대주택, 복지관, 탁아시설 등을 설치 또는 유치하여 근로자의 여가 활용을 지원하고, 주부들의 취업지원 도모

(나) 산업단지 녹지·공원 및 관리기관 청사내에 건전한 체육시설을 확보하여 근로자의 체력향상을 도모하고 입주업체의 각종 행사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

사. 기타 산업단지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1) 분양방법

(가) 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하여 단계별로 분양

1) 1단계 : 845,915㎡('97. 12 - '03. 12)

2) 2단계 : 668,392㎡('09. 1 - '12. 12)

(나) 분양가격은 산업법 시행령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결정한 가격으로 함.

(2) 분양 및 입주절차

(가) 산업단지내 입주하고자 하는 자는 산집법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산업단지 입주계약 신청서를 제출하고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

(나) 제(가)항의 결과에 따라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이 체결된 업체는 입주계약이 체결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시행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입주계약 체결시 조합, 협회, 단체가 회원사의 위임을 받아 입주계약 등을 신청할 수 있음

(다) 분양 공고후 제출한 협동화사업계획 및 개별업체에 대하여 '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하여 선정 추천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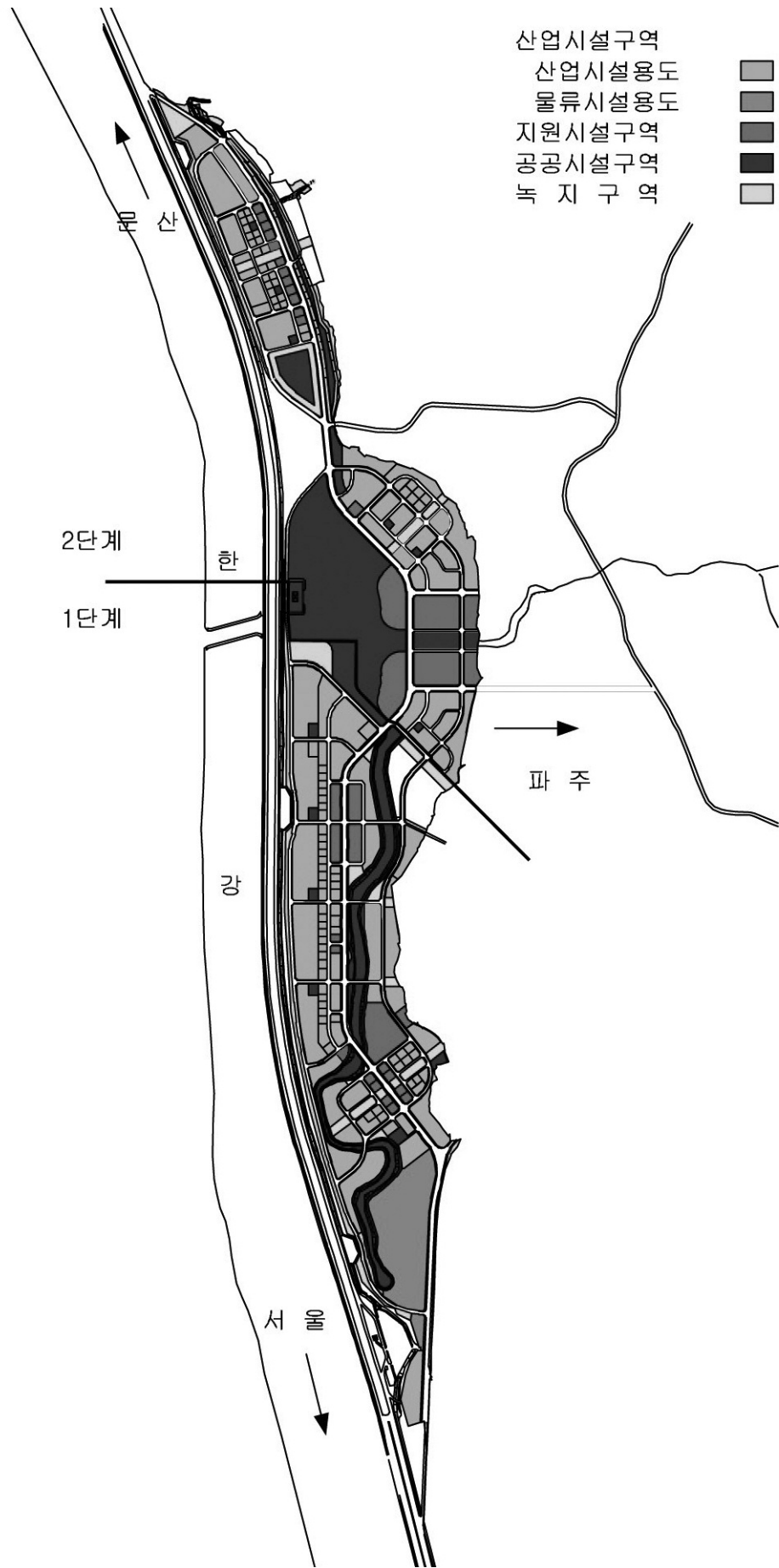
(라)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평가기준 등에 대해서는 관리권자가 별도 고시

(3) 최소 필지분할 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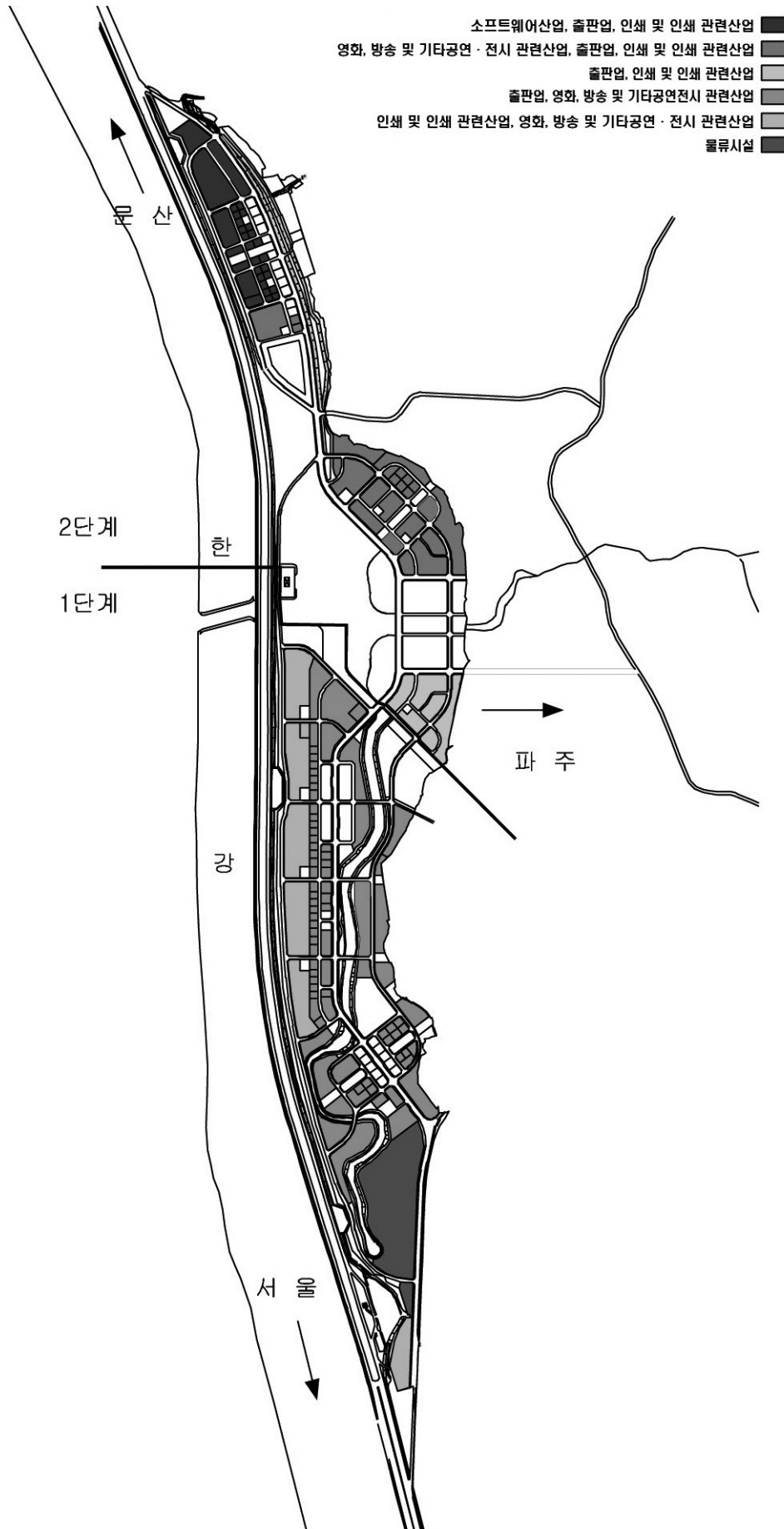
「산집법 시행규칙」제39조의3제2항에서 정하는 산업단지 최소 필지분할 면적은 1,650㎡이상으로 함.

(4) 본 관리기본계획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산집법 및 산업단지관리지침에 따라 관리함

〈파주출판문화정보국가산업단지 용도구획별 평면도〉



〈파주출판문화정보국가산업단지 업종별 배치계획도〉



출판도시입주기업체협의회 결성 및 관리기관화를 위한 방안

(2014. 4. 28)

논의사항

- 우리 조합은 1단계 사업을 추진하며 1996년부터 관리기관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으며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2013. 7. 7) 및 정만기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반실장(2013. 6. 24)은 출판도시를 방문하여 간담회를 통해 출판도시입주기업체협의회의 관리기관화에 대해 구두로 승인하였음.
- 이에 출판단지 조합과 출판도시입주기업체협의회의 통합을 통한 출판도시 입주기업체협의회 결성 및 관리기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고자 함.

관리기관의 요건(산집법 시행령 제38조)

- 입주기업체협의회가 관리기관이 되기 위해서는 산업단지의 면적이 15만㎡이상 입주기업체의 수가 10개 이상일 경우 가능함.
- 입주기업체협의회가 관리기관이 되기 위해서는 ① 산업단지관리능력 및 ② 관리에 소요되는 재정자립계획이 필요하며, ③ 해당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90%이상인 회원으로 구성되어야함.

*입주기업은 산업시설용지의 임대기업을 포함하여 한국산업단지공단의 입주계약을 한 기업을 말하며, 상업시설 입주자는 지원 시설로 분류하여 포함되지 않음.

관리기관의 설립절차(산집법 시행령 제39조)

창립총회의 회의록, 정관, 사업계획서 및 수지에산서, 산업단지 관리계획서, 임원의 명단 및 이력서를 관리권자에게 제출하여 공고함.

입주기업체협의회 구성(산집법 시행령 제40조)

- 입주기업체협의회는 일반회원과 특별회원으로 구성함.
- 일반회원은 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의 대표자로 하고, 특별회원은 일반회원 외의 자 중에서 관리권자의 동의를 받아 입주기업체협의회 의장이 임명함.
- 입주기업체협의회는 매 연도 개시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정기총회를 개최해야하며 필요하면 임시총회를 개최할 수 있음.
- 입주기업체협의회 회의는 회원의 과반수 이상 출석과 출석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함.

관리권한의 위임·위탁(산집법 시행령 제59조)

- 관리 업무 위탁 사항(산집법 2조 15항)
- 가. 산업단지의 용지 및 시설의 매각·임대 및 사후관리
- 나. 산업단지에서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반시설의 설치·유지·보수 및 개량
- 다. 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의 사업활동 지원

(단, 관리공단 등의 재산은 관리권자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는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음)

- 산업단지 내 국유지 매각 및 임대(산집법 제59조)

-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업무(산집법 제59조)

출판도시입주기업체협의회의 관리기관 전환 계획(안)

〈배경 및 목적〉

- 출판도시는 41개 국가산업단지 중 유일하게 민간에서 발의하여 추진하였음.

- 1단계를 추진했던 1996년부터 현재까지 출판도시 입주자들로 구성된 협의회를 통해 출판도시를 관리하고자 많은 노력을 하였으나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중앙부처와 한국산업단지공단 등 공공기관과의 업무추진관계로 인해 전환되지 못하였음.

- 출판도시 2단계 사업은 2015년 12월까지 조성될 예정임에 따라 출판도시입주기업협의회를 관리기관으로 전환함으로써 출판도시에 입주한 기업을 위한 효율적 관리체계를 정립하고자 함.

〈출판도시입주기업협의회 관리기관 전환에 대한 과제〉

- 입주기업의 인식 부족 : 임대를 통해 건물을 관리하는 회원사로 인해 출판도시를 위한 효과적 관리체계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

- 내부 역량 강화 필요 : 관리기관으로 전환할 경우 각종 법률 및 행정 관련 전문가 충원 필요

- 재원마련 : 현재 출자금 및 회비로는 사업운영이 불가능하여 별도의 재원마련을 위한 사업 및 분담금 징수 필요

〈실행계획(안)〉

- 2단계 조합의 관리기관 전환 의결 : 2014년 5월 임시총회

- 출판단지 조합과 출판도시입주기업협의회 회원사 간담회 개최 : 2014년 하반기

- 사업계획서 작성 및 의견 수렴 : 2015년 상반기

- 관리권자와 업무협의 및 신청 : 2015년 하반기

〈관련 법 조문〉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0조(관리권자 등)

①관리권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산업단지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2. 일반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는 시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정한 산업단지인 경우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을 말한다)

3. 농공단지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② 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리권자

2. 관리권자로부터 관리업무를 위임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3. 관리권자로부터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제31조제2항의 입주기업체협의회

4. 관리권자로부터 관리업무(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및 농공단지의 관리업무만 해당한다)를 위탁받은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③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외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에 따라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의 자가 산업시설에 입주하기 위하여 조성한 단지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른 관리권자가 해당 산업단지에 준하여 이를 관리할 수 있다.

④ 관리기관이 산업단지를 관리할 때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제7조 및 제7조의2에 따른 산업단지개발계획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관리권자로부터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관리기관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9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산업단지의 공장용지 및 공장건축물에 대한 부동산중개업을 할 수 있다.

제31조(산업단지관리공단 등)

① 관리권자는 산업단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0조제2항에 따른 관리기관에 관리업무를 전부 또는 일부를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② 산업단지관리공단(이하 "관리공단"이라 한다) 또는 산업단지관리업무를 위탁받기 위하여 입주기업체로 구성된 협의회(이하 "입주기업체협의회"라 한다)를 설립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립요건을 갖추어 관리권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 관리공단 및 입주기업체협의회(이하 "관리공단등"이라 한다)는 법인으로 하고, 그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관리공단등의 재산은 관리권자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는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⑤ 관리권자는 관리공단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설립인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설립인가를 받은 경우

2. 제31조제2항에 따른 설립요건을 위반한 경우

3.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내에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사업 실적이 없는 경우

4. 설립목적 외의 사업을 한 경우

5. 설립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⑥ 관리권자는 제2항에 따라 입주기업체협의회 설립인가를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산업단지의 관리업무를 위탁하거나 관리기관을 입주기업체협의회로 변경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⑦ 입주기업체협의회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⑧ 관리공단등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주무관청"은 "관리권자"로 본다.

제37조(공동부담금)

② 관리기관은 산업단지의 도로, 폐수처리장, 폐기물처리장, 가로등,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공동시설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유지·관리하여야 하는 시설이 아닌 공동시설의 설치·유지 및 보수를 위하여 필요하면 관리권자의 승인을 받아 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으로부터 공동부담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농공단지의 공동부담금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공동부담금에 관한 기준 및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1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이 법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관리기관 또는 공단에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의 설치·운영을 공단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관리공단 등의 설립요건)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산업단지관리공단(이하 "관리공단"이라 한다) 및 입주기업체협의회의 설립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리할 산업단지의 면적 또는 입주기업체의 수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일 것
2. 산업단지관리능력 및 관리에 소요되는 재정자립계획이 있을 것
3. 입주기업체협의회의 경우에는 해당 산업단지 입주기업체의 90퍼센트 이상이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을 것. 다만, 농공단지의 경우에는 입주기업체의 70퍼센트 이상이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거나 가동 중인 입주기업체의 90퍼센트 이상이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을 것

제39조(관리공단 등의 설립절차)

①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관리공단 또는 입주기업체협의회를 설립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관리공단 설립허가신청서 또는 입주기업체협의회 설립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리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창립총회의 회의록
2. 정관
3.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4. 산업단지 관리계획서
5. 임원의 명단 및 이력서

②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관리권자가 관리공단 또는 입주기업체협의회의 설립을 인가한 때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40조(입주기업체협의회의 구성과 운영)

- ① 법 제31조제6항에 따른 입주기업체협의회는 일반회원과 특별회원으로 구성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일반회원은 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의 대표자로 하고, 특별회원은 일반회원외의 자 중에서 관리권자의 동의를 받아 입주기업체협의회의 장이 임명하는 자로 한다.
- ③ 입주기업체협의회는 매 연도 개시일부터 2개월 이내에 정기총회를 개최하여야 하며, 필요하면 임시총회를 개최할 수 있다.
- ④ 입주기업체협의회의 회의는 회원의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8조(관리공단 등의 설립규모)

영 제38조제1호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이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 1. 관리공단의 경우에는 관리하려는 산업단지의 면적이 150만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입주기업체의 수가 30개 이상인 경우
- 2. 입주기업체협의회의 경우에는 관리하려는 산업단지의 면적이 15만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입주기업체의 수가 10개 이상인 경우

관리체계 결정을 위한 문체부 '98년도 검토 의견(당시)

1. 관리권자

국가산업단지의 관리권자는 산업자원부 장관이 되어야하나 다음과 같은 문제점과 한계를 지니고 있어 산집법 제 59조에 의해 고시권한을 제외한 관리권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위탁함.

산업자원부장관

- 단지 조성 목적에 대한 기본적 이해 미흡
- 관리를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와의 협의 필수적, 행정 절차의 다단계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 법률에 의해 국가산업단지 지정을 요청, 목적 달성
- 중장기적인 출판문화산업 진흥정책의 주무부서로서 능동적인 관리지침 실현
- 단지 관련 일관된 정책 수행과 일원화를 통한 행정 효율성

2. 관리기관

국가산업단지 관리기관은 관리권자, 한국산업단지관리공단(산자부 산하), 입주기업체협의회, 지자체장 중에서 지정할 수 있음.(관리권자, 지자체는 검토 제외함) 두 기관의 장단점은 다음과 같음

산업단지공단

- 장점 -산업단지 관리의 전문성과 관리기본계획 수립 등 입주 업무 용이
- 단점 -기존 국가산업단지와는 성격이 전혀 다르며,
-문화산업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조성목적의 구현에 한계성을 지니고 있으며,
-관리권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 위임되어 있어, 산자부 산하 법인으로서 지도, 감독의 이원화라는 비효율성

입주기업체협의회

- 장점 -입주업체간 자율적 관리로 타성적인 관료적 관리 배제, 일원화 가능
-자치 관리시 운영의 용이 및 조성 목적을 스스로 구현해 나가는 주체
-관련 산업계와 정부 행정 관서와의 소통 원활 및 가교 역할
- 단점(문제점) -입주기업체 90%이상 동의가 필요함
-입주업체로부터 관리비용 징수 어려움

3. 검토 의견

이 같은 장, 단점을 가지고 있으나 입주기업체협의회로서의 구비 요건 미비(입주기업체 90%이상, 2단계 미착수 등)와 관리기관 법적 업무 능력 미성숙 등의 사유로 산업단지관리공단을 관리기관으로 지정함.

위대한 계약서

우리 출판인과 건축가는 열두 해 전, 매우 미래지향적인 뜻으로 발의된 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던 과주 출판도시의 도시적 목표를 존중하며, 이의 성공적인 완성을 향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기 위하여 여기 모였다.

우리는 우리시대에 미만해 있는 건축에의 혐오나 출판에의 불신을 씻어내고 이땅에 건강한 출판문화와 건축문화를 세우는 데 최선을 다하려 한다. 다시 말해, 이땅의 민족과 국가 앞에 숭고한 책의 가치를 드높이며 자랑스런 우리 건축문화의 전통을 되살려, 우리의 도시가 추진-건설되는 과정이나 완공된 이후의 현장과 시설이 출판문화의 중흥과 국민교육의 마당으로 쓰이기를 희망하는 것이다.

이러한 희망을 구체화하기 위해 우리는 다양한 건축가의 건축방식이나 여러 입주자의 다양한 산업형태-시설양식이 존중되면서, 이들이 조화롭게 완성되도록 기법과 지혜를 성실히 짜낼 것이다. 즉, 건축에 있어서나 입주기업의 사업에 있어서 공동성과 협동성의 가치를 추구하되, 개체의 특장과 가치와 이윤을 최대한 발휘케 하는 데 그 큰 뜻을 두자는 것이다.

또한 이 도시는 생태도시로 설계되고 운영될 터이므로, 생태이념에 대한 설계자-시공자-입주자들의 연대를 필요로 하는 사업임을 다시금 상기할 필요가 있다.

이런 일들을 수행함에 있어 우리는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 항목을 정중히 서약하면서 설계에 임하고자 한다.

첫째, 건축가와 출판인은 신뢰를 바탕으로 서로 존중하며, 각기 가지고 있는 좋은 생각을 허심탄회하게 교환하여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최선을 다한다.

둘째, 출판도시의 바탕은 하나의 건축이다. 공동성과 개체성이 조화를 이루지 않는 한 이 도시는 성공될 수 없다는 인식을 새로이 다짐한다.

셋째, 출판인은 이 기회를 스스로 좋은 건축주로서의 위상을 세우는 계기로 삼는다. 참다운 건축가의 이상을 받들어야 위대한 책의 생산공간은 마련될 수 있다는 신념으로 임한다.

넷째, 건축가는 참다운 건축가로서의 소명을 생각한다. 그리하여 우리시대의 새로운 건축이 이곳에서 역사 되어야 한다.

다섯째, 설계에 따르는 비용은 합리적이고도 공정하게 산출되어, 건축가와 건축주 모두의 명예와 이익에 도움이 되도록 한다. 다만 그 실제의 문제를 잘 풀어 가기 위해 출판인 대표와 건축가 대표는 쌍방간의 현실을 잘 파악하여 일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약속한다.

우리 모두는 역사적 소명과 시대정신의 이름 아래 이 계약서를 “위대한 계약서”라 칭한다. 이 “위대한 계약서”는 출판도시의 모든 건축 행위의 기본적 계약이며 개별적 계약은 이와 더불어서만 유효하다. 이를 위하여, 출판인 대표 이기웅과 건축가 대표 승효상이 앞장서 서명하고, 모든 입주자와 건축가가 연기명으로 서약한다.

2000년 12월 2일, 파주출판도시 인포룸에서
파주출판도시 이사장 이기웅 · 건축코디네이터 승효상

선(善)한 계약서

출판도시 계획이 발의(發意)된 지 열두 해 만인 2000년 4월, 1차 계획에 참여했던 출판인들과 건축가들이 ‘과주출판도시 시범지구건축설계 계약’을 맺는 행사를 성대하게 거행하였다. 이름하여 ‘위대한 계약(The Great Contract)’을 약속하고 공표한 행사였다. 그 계약은 1차 계획의 건설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갖가지 위험과 온갖 서을 가다듬고 잠재우며, 오늘의 성취를 이끌어낸 대들보 역할을 해 주었다. 그 당시 상황을 기록한 <비와 바람의 도시일지>는 그 과정을 웅변적으로 증언하고 있다.

1차 계획을 향해 ‘위대한 계약’을 맺은 지 꼭 열두 해 만인 오늘, 2단계 출판도시에 입주하게 될 우리 출판인, 영화인, 인쇄인, 소프트웨어인 들은 앞으로 2단계 출판도시 설계와 건설에 참여할 대표 건축가들과 설계에 따르는 계약을 준수하자는 약속을 공표하기 위해 이곳에 모였다. ‘위대한 계약’에서 뜻했던 바 ‘공동성의 실천’은 오늘의 계약에서도 변함없이 준용될 것이다. 우리가 뜻을 함께 하여 모인 오늘은 ‘위대한 계약’의 시기와 다르다. 오늘의 계약은 1단계의 성과를 일목요연하게 바라보는 시간과 공간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오늘 계약에 임하는 우리는 이 계약을 ‘선(善)한 계약(The Good Contract)’으로 명명한다. 모든 것이 불투명했던 황무지 위의 1단계 건설계획은 ‘위대한(great)’이라는 말을 설정하게 했다. 오늘 우리는 차분한 심정으로, 그간의 경험을 크게 보완하며, 도시의 성취를 지혜롭게 도모한다는 뜻에서 ‘선함(good)’을 높이 세우고자 한다. 우리는 1단계가 일궈낸 성공 못지않게, 시행착오와 모자람 그리고 은근히 감지되는 많은 오류들을 알고 있다. 우리는 2단계에서는 그러한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각오를 다지며, 그를 위해 지혜를 모을 것이다. ‘선함(good)’은 그러한 함의(含意)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급변하는 멀티미디어 환경 속에서 일과 삶을 꾸려가고 있으며, 새로운 출판, 영상 문화의 창출이라는 과제를 안고 있다. 건축 또한 자연과 인간이 조화롭게 삶을 꾸려갈 수 있도록 하는 데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 우리가 꿈꿔 왔고, 조성하려는 출판도시는 이러한 변화와 새로운 가치를 적극 수용하며, 더 교육적이고 더 예술적이고, 더 가치지향적(價値指向的)으로 조성될 것이며, 한국사회의 지적 문화적 공공자원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다.

우리는 출판도시 2단계의 성공을 위하여, 우리의 ‘선한 의지’를 모아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 항목을 서약함으로써 도시 설계에 임하고자 한다.

첫째, 건축주와 건축가는 신뢰를 바탕으로 서로 존중하며, 좋은 생각들을 허심탄회하게 교환하여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최선을 다한다.

둘째, 출판도시는 개별 건축물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숨쉬는 생명체이다. 우리는 도시 전체의 공공성과 각 건축물의 개체성이 조화를 이루어야 출판도시가 성공할 수 있다고 믿으며, 이를 위해 서로 양보하고 절충하며 협력하기로 다짐한다.

셋째, 건축주는 건축가의 열정과 예술성, 전문성을 존중하며, 우리들이 세운 도시 조성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건축가를 최대한 지원하며 협력한다. 건축주와 건축가가 뜻을 함께하는 ‘동지적 만남’이 우리 출판도시 성공의 전제 조건임을 인식한다.

넷째, 건축가는 건축주의 기업적·생산적 현실을 심도 있게 궁구하여, 그들이 이 도시에서 경제적·문화적 삶의 터전을 잡도록 하는 데 정성을 다한다. 그리하여 우리 시대의 새로운 건축문화가 출판도시에서 창출되도록 한다.

다섯째, 설계에 따르는 비용은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산출하여, 건축가와 건축주 모두의 명예와 이익에 도움이 되도록 한다. 이를 위해 양자는 서로의 현실을 잘 파악하여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약속한다.

우리 건축주와 건축가는 출판도시에 주어진 역사적 소명과 시대정신의 이름 아래 ‘선한 계약’을 맺는다. 상호간의 신뢰와 이타적 배려에 기초한 이 ‘선한 계약’은 출판도시의 모든 건축행위의 기본적 계약이며 개별적 계약은 이와 더불어서만 유효하다. 이를 위해 건축주 대표 이기웅과 건축가 대표 김영준이 앞장서 서명하고, 모든 참여기업 대표와 건축가가 연기명으로 서약한다.

2011년 4월 28일 청명한 봄날 파주출판도시 아시아출판문화정보센터 이벤트홀에서
파주출판도시 이사장 이기웅, 파주출판도시 2단계 건축코디네이터 김영준

파주출판도시 건축심의위원회 운영 자료

파주출판도시 건축심의위원회 규약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약은 건축법, 도시계획법과 관련된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파주시로부터 위임받아 파주출판도시의 개별 건축물의 설계(조경 포함)에 대한 건축설계지침의 준수여부 심의 및 건축설계지침의 미비사항에 대한 검토와 환경디자인 등(간판, 거리 사인, 시설물)에 관한 규제 심의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이 규약은 파주출판도시에 입주하는 입주사의 건축물 및 그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2장 구성 및 운영

제3조(기능)

① 위원회는 규약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심의 사항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심의한다.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다음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위원회는 위원장 및 위원을 포함한 5인 이상 12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출판단지조합 이사장 및 건축코디네이터는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3. 당연직 외 위원은 파주시 건설국장 또는 파주시가 추천하는 건축 관계자와 건축코디네이터가 추천하는 건축가 및 외부 건축 관련 인사 중 이사장과 건축코디네이터가 협의하여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한다.

제5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제6조(위원장의 직무)

-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 ② 출판단지조합 이사장과 건축코디네이터가 공동위원장이 되며 회의 주관은 건축전문성을 고려하여

건축코디네이터가 맡도록 한다.

제7조(회의 소집)

① 매월 2회, 첫째 주와 셋째 주 목요일 개최를 원칙으로 하고 위원장이 필요가 있다고 판단할 때 수시로 회의를 소집하거나 서면 심의를 진행할 수 있다.

제8조(회의 의결)

- ① 주요 의결사항은 심의위원 2/3 이상의 동의절차를 거쳐 시행한다.
- ② 사안에 따라 필요시 3인 이하 소위원회를 구성해 심도 있는 심의를 거친 후 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한다.

제9조(회의록의 작성 및 비치)

- ①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 ② 회의록은 건축코디네이터가 지명하는 위원회 간사가 작성 후 확인 절차를 거치도록 한다.

제10조(회의의 기준)

회의의 기준은 「파주출판도시 건축설계지침」과 별도 마련된 「파주출판도시 건축심의위원회 심의 기준」 및 각종 지침으로 한다.

제11조(회의의 권한)

- ① 파주출판도시 건축설계지침에 어긋나는 사항의 변경을 건축가 및 건축주에게 권고 및 규제를 할 수 있다.
- ② 파주출판도시 건축설계지침을 수정 보완할 수 있다.
- ③ 건물 간판, 거리 사인 및 시설물에 대한 심의를 하고 필요시 관련 지침을 수정 보완한다.
- ④ 기타「공동성정신」에 의해 건설되는 출판단지의 도시적 목적 달성과 관련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해 심의·의결한다.

제12조(비밀 준수)

위원회의 위원, 기타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자는 그 업무 수행 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또는 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서면으로 심의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1/2을 지급한다.

파주출판도시 건축심의위원회 심의기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심의기준은 건축법, 도시계획법과 관련된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준수하고 파주시와 협의하여 파주출판도시의 개별 건축물의 설계(조경 포함)에 대한 건축설계지침의 준수여부 심의 및 건축설계지침의 미비사항에 대한 검토와 환경디자인 등(간판, 거리 사인, 시설물)에 관한 규제 심의기준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 ① 이 심의기준은 건축·조경·옥외광고물 설계지침에 따른 파주출판도시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심의사항 중 건축·조경·옥외광고물 계획의 심의에 관하여 건축법령 및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심의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② 적용범위는 파주출판도시에 입주사의 건축물(조경, 옥외광고물 포함)의 신축, 증축, 각 종 시설물 및 그 대지에 대하여 적용을 원칙으로 하며 심의위원회 의결에 따라 적용범위를 정한다.

제3조(기본원칙)

- ① 위원회는 건축·조경·옥외광고물 계획이 이 기준에 적합하도록 유도하며, 토론을 거쳐 합리적인 설계방향을 제시하여야 한다.
- ② 위원회는 디자인이 우수할 뿐만 아니라 공공적 가치를 증대하고 파주출판도시 협동화사업 이념에 기여할 수 있는 건축물이 건축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③ 예외사항의 인정범위는 심의위원회에서 사안의 경중을 고려 충분한 토론을 거친 후 통과여부를 결정한다.

제2장 심의기준

제4조(배치 및 평면계획)

- ① 건축설계지침 준수를 원칙으로 한다.
- ② 지침에 명시된 건폐율 50%이하, 용적률 200%이하를 원칙으로 하며 건축물의 최소 지상층 연면적 기준은 출판도시의 조화로운 발전을 고려 용적률 100%이상이어야 하며 기준 연면적 이하로 건축시 증축계획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③ 파주출판도시 내 주차문제 해결을 위한 지하주차장 설치를 원칙으로 한다.
- ④ 건축연면적 100㎡당 1대의 주차대수 확보

제5조(입면계획)

- ① 건축설계지침의 준수를 원칙으로 한다.
- ② 건축물 최고높이는 건축설계지침과 군협약기준 중 최소 높이기준을 원칙으로 한다.
- ③ 건축물 재료, 형태 및 외관은 자연경관 및 주변지역과 조화를 이루도록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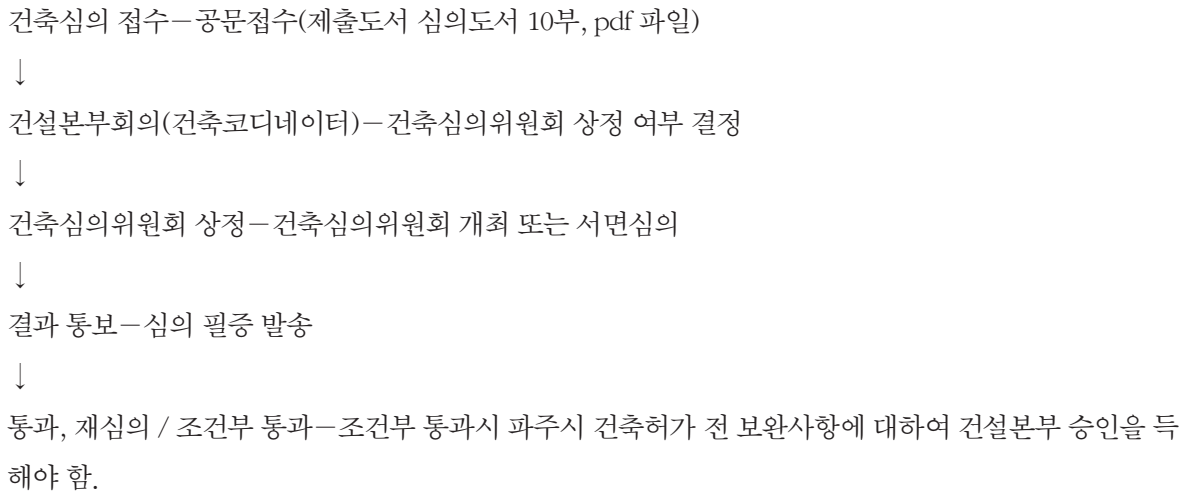
제6조(가로계획 등 외부공간 계획)

- ① 필지별 가로계획은 건축설계지침 준수를 원칙으로 한다.
- ② 가로변에 조성되는 전면공지 등은 보행이 편하고 쾌적하게 조성하여야 한다.
 - 1) 보행자로 하여금 시각적 개방감을 주고 질서있는 가로의 경관을 형성하도록 한다.
 - 2) 각각의 부지 사이에 조성되는 공공보행통로와 건축물간에는 레벨차이가 없어야 한다.
 - 3) 인접한 전면공지, 공개공지 간 단절을 없애고 하나의 공간으로 통합 디자인한다.
 - 4) 주변가로, 건축물 형태 및 재질, 가로 시설물, 바닥 재질 등 각 요소들의 유기적인 연계를 고려하여 설계한다.
- ③ 출판도시 내 보행동선 확보를 최우선으로 차량으로 인한 보행이 단절되지 않도록 한다.
- ④ 조경 식재 및 시설물은 건축설계지침 준수를 원칙으로 한다.
- ⑤ 옥외광고물 설치기준 준수를 원칙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심의기준은 파주출판도시 2단계 건축설계지침 작성일로부터 시행한다.

파주출판도시 건축심의위원회 운영절차



파주출판도시 건축심의위원회

총괄

이기웅(공동위원장), 파주출판단지 조합 이사장
김영준(공동위원장), 이단계 건축코디테이터, 김영준도시건축 대표
이은 파주출판단지 조합 부이사장

출판도시

송영만, 입주기업협의회 회장, 효형출판 대표
이환구, 파주출판단지 조합 상무이사

건축

최문규, 연세대학교 교수, 가아건축 대표
김승희, 서울대학교 교수, 경영위치건축사사무소 대표
배형민, 서울시립대학교 교수

조경

정영선, 조경설계 서안 대표

과주출판단지 관리방안 연구 보고서

발행일

2014년 12월 31일

발행처

문화체육관광부

사단법인 출판도시입주기업협의회

연구기관

사단법인 국제문화도시교류협회

